

세법연구 15 - 02

#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2015. 8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진

### 연구책임자

홍성훈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정훈 공인회계사

홍민옥 공인회계사

# 목 차

I. 서론	9
II. 조세조약의 남용 및 대응방안	11
1. 조세조약 남용의 정의와 유형	11
가. 조세조약 남용의 정의	11
나. Treaty Shopping	12
다. 조세조약 남용의 유형	13
라. 조세조약 남용의 특징	15
2.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및 대응방안 사례	16
가. 조세조약 남용 관련 대법원 판례	17
나.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및 대응방안의 특징	23
3.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안	25
가. 조세조약의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	26
나. 내국법의 사법상 원칙에 의존	27
다. 내국법상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 의존	27
라. 조세조약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 근거	28
4. 특정 조약의 “LOB규정”	29
5. 우리나라의 현황	32
가. LOB규정	32
나. LOB규정 이외의 조약남용 방지 규정	36

III. 국외의 LOB규정 사례	39
1. 미국	39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39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45
2. 국제연합(United Nations)	59
3. OECD	64
가. OECD의 BEPS 프로젝트	64
나. BEPS Action 6: 2014 Deliverable	65
다. BEPS Action 6: 2015 Revised Discussion Draft	90
4. 일본	96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96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97
5. 인도	98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98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0
6. 영국	102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02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2
7. 독일	103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03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4
8. 호주	105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05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5
9. 룩셈부르크	106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06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7

10. 네덜란드	108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08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8
11. 벨기에	110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10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10
12. 홍콩	112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12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12
13. 싱가포르	113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13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13
IV. 국제비교	114
1. 기본 모델의 비교	114
가. 적용범위	115
나. 적격인(qualified person)	115
다.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항목 등	120
라. 파생혜택	121
마. 재량적구제	121
2. 주요 조세조약 비교	121
3. 각국의 최근 추세	128
V. 시사점	134
1. 조세조약상 혜택제한조항 도입의 실익	134
가. BEPS Action 6의 LOB규정의 불확실성 및 과제	134
나. LOB규정에 대한 대안-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135
다. 조세조약상 LOB규정 도입의 실익 분석	136

2.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LOB규정 도입의 적절성.....	142
가. 미국과 일본의 LOB규정 도입.....	142
나. 우리나라의 경우.....	146
참고문헌.....	148

## 표목차

〈표 II-1〉 우리나라의 주요 혜택 제한 조항.....	34
〈표 III-1〉 미국 모델조세조약(1981) 제16조 혜택의 제한.....	40
〈표 III-2〉 미국 모델조세조약(1996) 제22조 혜택의 제한.....	42
〈표 III-3〉 미국 모델조세조약(2006) 제22조 혜택의 제한.....	50
〈표 III-4〉 UN 모델조세조약(2011) 제1조의 주식 제20조.....	59
〈표 III-5〉 Action 6보고서의 개요.....	68
〈표 III-6〉 BEPS Action 6 보고서의 LOB/PPT규정 요약.....	78
〈표 III-7〉 BEPS Action 6 보고서의 LOB/PPT규정 전문.....	79
〈표 III-8〉 Action 6 보고서 LOB/PPT규정과 간소화된 LOB규정의 비교.....	95
〈표 III-9〉 일본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98
〈표 III-10〉 인도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101
〈표 III-11〉 룩셈부르크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107
〈표 III-12〉 네덜란드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109
〈표 III-13〉 벨기에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111
〈표 IV-1〉 모델별 LOB규정 개관.....	115
〈표 IV-2〉 상장회사요건.....	117
〈표 IV-3〉 소유/세원잠식 요건.....	119
〈표 IV-4〉 포괄적 LOB규정 체결 현황.....	123
〈표 IV-5〉 각국의 최근 주요 조세조약에서 혜택의 제한 포함 여부.....	129

## 그림목차

[그림 II -1]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	14
[그림 II -2] 디딤돌 구조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	15
[그림 II -3]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사례 1: 론스타 사례.....	19
[그림 II -4]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사례 2: 제일은행 사례.....	21
[그림 II -5]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사례 3: Korea Dairy Holdings 사례.....	23
[그림 II -6] 통상적인 LOB규정 구성.....	30

## I. 서론

- 조세조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조약체결국(체약국)의 거주자들이 겪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임
  - 국제적 이중과세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여러 나라에 걸쳐 경제행위를 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원천국과 거주국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의미
  - 조세조약이 주는 비과세, 과세 면제, 제한세율 적용 등의 혜택은 체약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원래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거주자가 되도록 가장하여 더 좋은 조건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리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행위를 ‘조약 쇼핑’(treaty shopping)이라 부름
  - 조약 쇼핑은 대체로 더 좋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 도관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 투자대상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조약 쇼핑이 가능한 간접투자 구조를 조세조약 네트워크상의 세금 최소화 경로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sup>1)</sup>
  
- 조약 쇼핑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들이 체약국이나 소득 구분(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따라 조약에서 서로 다른 세율을 설정하고, 조약 혜택을 받는 대상을 자국 또는 상대국의 ‘거주자’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기 때문임
  - 조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체약국이나 소득 구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율을 일정 범위에서 통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조약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거주자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1) 홍성훈·안중석,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원천국 과세회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 통상적으로 거주자는 체약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음
  -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해석마저도 실제 조약 쇼핑 사례에서는 명확한 판정 기준이 되지 못함<sup>2)</sup>
  
- 조세조약에서 거주자 조건(조세조약 수혜대상 조건)을 명확히 하는 접근법의 예가 조세조약상 혜택제한(Limitation of Benefits; LOB) 조항을 도입하는 것임
  - 최근 OECD/G20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서는 총 15가지로 나누어 각국의 정부에 국제조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이 중에서 Action 6가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해당하며, OECD 모델 및 실제 조세조약에서 LOB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논의 중인 LOB 조항은 미국의 모델 조세조약상 조항을 기초로 함
  - 최근 일본도 적극적으로 개정 조세조약에 LOB 조항을 추가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최근의 논의 및 주요국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도입의 실익을 분석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제Ⅱ장에서 조세조약 남용의 정의와 사례를 정리하고, 실질과세원칙과 같이 세법에 근거한 대응방안도 정리
  - 제Ⅲ장에서 미국, UN,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 다루는 혜택제한 조항에 대해 검토하고, 주요국의 실제 조세조약에서 혜택제한 조항 도입 현황을 요약
  - 제Ⅳ장에서는 국가간 또는 모델간 비교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제Ⅴ장에서는 시사점을 논의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이른바 ‘동원엔터프라이즈’ 사건의 판례 참고

## II. 조세조약의 남용 및 대응방안

### 1. 조세조약 남용의 정의와 유형

#### 가. 조세조약 남용의 정의

- 조세조약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인력 이동의 촉진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편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탈루(evasion) 방지 또한 목적으로 함<sup>3)</sup>
-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남용이란 특정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가 해당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거주지나 소득의 형태를 바꾸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조세조약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함
-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에서는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조세조약 남용 판단에 주요한 지침(guiding principle)으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함<sup>4)</sup>
  - 특정 거래 또는 계약방식의 주된 목적이 조세 목적상 더 유리한 지위(favourable tax position)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 그러한 상황에서 부여받는 조세의 혜택(favourable treatment)이 해당 조세조약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1조, 문단 7

4)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1조, 문단 9.5. “A guiding principle is that the benefits of a double taxation convention should not be available where a main purpose for entering into certain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was to secure a more favourable tax position and obtaining that more favourable treatmen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 한편 납세자들이 세부담 경감을 위해 수행하는 행위를 크게 탈세(tax evasion), 조세회피(tax avoidance), 그리고 절세전략(tax planning)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 남용은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에 해당함<sup>5)</sup>
  - 절세전략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이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로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입법당국의 정책적 취지와 부합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함
  - 탈세는 세법의 조항을 어기는 위법 행위를 통한 절세행위로서 그 행위가 적발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벌금을 내거나 조세범죄(tax fraud)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분을 받게 됨
  - 조세회피는 절세전략과 탈세 사이에 존재하는데 세법의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으나 관련 법률이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로서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이 이에 해당됨

## 나. Treaty Shopping

- 조세조약 남용 또는 조세조약의 부적절한 사용(improper use of treaties)의 대표적인 형태로 treaty shopping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 OECD는 treaty shopping을 “국제거래 또는 사업운영에 있어 특정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규정을 분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sup>6)</sup> 일반적으로 조약 체결국의 거주자 아닌 자가 조약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당사국에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를 일컫음

5) 안중석·홍범교,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12, pp.18-21.

6) OECD Glossary of Tax Terms(<http://www.oecd.org/ctp/glossaryoftaxterms.htm#T>), “An analysis of tax treaty provisions to structure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or operation so as to take advantage of a particular tax treaty. The term is normally applied to a situation where a person not resident of either the treaty countries establishes an entity in one of the treaty countries in order to obtain treaty benefits.”

- 조세조약 남용과 treaty shopping은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쓰이나, treaty shopping은 조세조약 남용의 대표적 형태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 뜻에 차이가 존재함
- 본 연구의 대상은 treaty shopping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조약상 조세회피방지규정(anti-avoidance provision)<sup>7)</sup> 중 하나인 ‘LOB규정’(Limitation of Benefits, 이하 “LOB 규정”)으로, 본 보고서상의 조세조약 남용은 주로 treaty shopping에 초점을 맞춤

#### 다. 조세조약 남용의 유형<sup>8)</sup>

-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sup>9)</sup>에 따르면 조세조약 남용은 크게 직접 도관회사(direct conduit company)를 이용하는 방법과 디딤돌 구조(stepping-stone)를 이용하는 두 가지 조세회피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1)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

- 직접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은 특정 국가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 규정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조약 체결 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제3국의 거주자가 계약 당사국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함
- 직접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I국의 투자자는 S국에 투자하려고 하나, I국과 S국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가 S국에서 획득한 소득은 S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됨
  - S국은 R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S국에서 R국으로 이전하는 소득은 S국 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감세율이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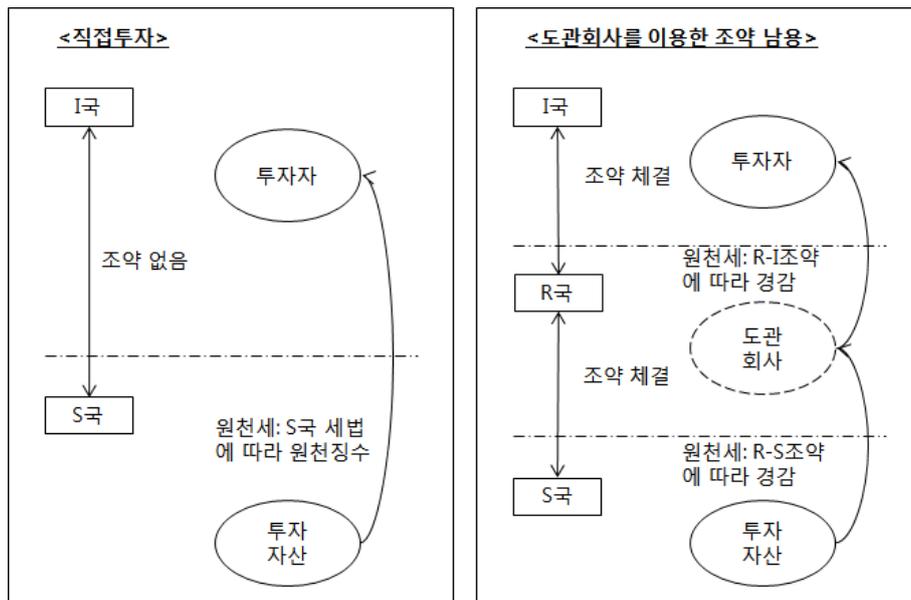
7)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II.3.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안’에서 서술함

8) 이태로, 「Treaty Shopping」, 『조세법연구』 제1집, 1995. 8., pp.7-10, 안종석·홍범교(2006), pp. 24-26에서 재인용

9) OECD CFA “Double Taxation Conventions and the Use of Conduit Companies” in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1987.

- R국과 I국 사이에도 조세조약이 체결됨
- 이에 I국의 투자자는 S국에 대한 투자로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S국에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R국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S국과 R국 간의 조세 조약 혜택을 적용받음
- S국에서 경감된 세금을 부담하고 R국으로 이전된 소득은 I국 투자자의 R국 도관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형태로 I국으로 이전됨. 이때, R국과 I국 간의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음
- 이 경우 R국은 역외소득에 대해 면제를 해주거나 I국으로 이전되는 소득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도관회사 단계에서의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과세국임

[그림 II-1]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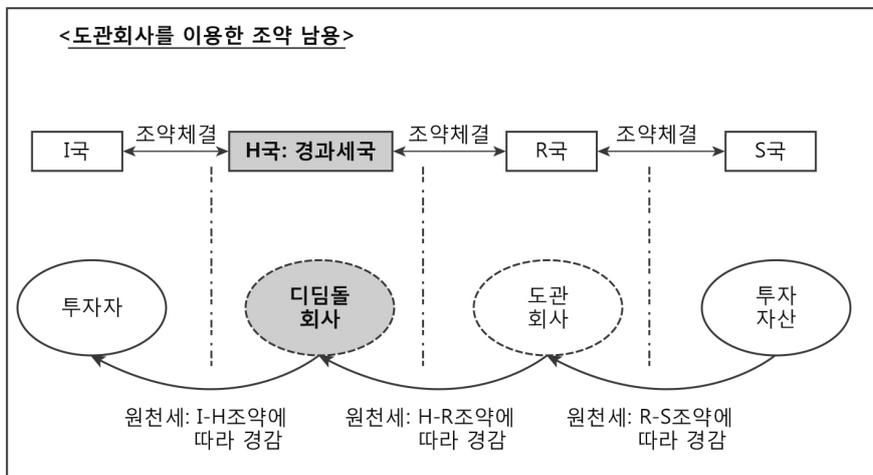


2) 디딤돌(steping-stone) 구조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

- 디딤돌 구조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은 도관회사가 그 설립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디딤돌 회사를 설립하는 구조로서 앞의 도관회사 예시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R국의 도관회사가 S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R국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R-S국 조세조약 적용을 통해 받은 혜택이 사라지게 됨
- 만약 R국이 경과세국이였다면 R국에서의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S국과 I국 모두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그러한 경과세국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경과세국인 H국에 디딤돌이 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구조가 필요함
- 이 경우 I국의 투자자는 H국에 디딤돌이 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H국 자회사는 R국 도관회사를 소유하며 R국 도관회사는 H국 디딤돌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S국에 투자함
- R국의 자회사는 S국 원천소득을 H국 디딤돌회사로부터의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나 관계회사 거래에 따른 비용의 형식으로 H국 디딤돌회사에 이전함으로써 R국에서의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음

[그림 II-2] 디딤돌 구조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



라. 조세조약 남용의 특징

- 앞선 두 가지 조세조약 남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의 거래 당사자(I국 투자자와 S국 투자자산)는 가장 유리한 조세조약 규정을 찾아(shopping around)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세조약의 부재를 회피하게 됨<sup>10)</sup>

- 투자자는 조세조약 남용을 통해 투자소득의 이전에 따른 원천징수세를 최소화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그 이유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음<sup>11)</sup>
- ① 투자자가 위치한 I국은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소득 원천지국에서 부담하는 원천세가 투자소득에 대한 유일한 세부담인 경우
  - ② I국이 조세피난처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역외소득 면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이 있는 국가로 ①의 경우와 같이 소득 원천지국에서 부담하는 원천세가 유일한 세부담인 경우
  - ③ I국에서 면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통해 S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완전히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부담을 경감시켜 현금흐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경우<sup>12)</sup>
- 상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조약 남용의 주된 목적인 투자 소득 이전에 따른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 또는 넓은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가지는 경과 세국을 동시에 활용하는<sup>13)</sup> treaty shopping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 함<sup>14)</sup>
- ① 도관회사는 설립지국에서 과세면제되어야 하며,
  - ② 도관회사에서 투자자로 이전되는 소득은 최소한의 원천세 부담을 하여야 함

## 2.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및 대응방안 사례

- 1997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외국 자본의 국내 주식의 인수·양도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 중 상당수의 경우 treaty shopping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보임

10) Angharad Miller & Lynne Oat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axation," *Bloomsbury Professional*, fourth edition, 2014, p.410.

11) Angharad Miller & Lynne Oats(2014), pp.411-412.

12) 일반적으로 원천지국에서의 원천세는 소득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징수되는 반면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는 동 소득에 대한 과세가 수개월 후에 이루어짐

13) 안종석·홍범교(2006), p.33; Miller and Oats(2015), p.410.

14) Angharad Miller & Lynne Oats(2014), p.412.

- 이에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시 활용되었던 조세조약 남용 전략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관청 및 법원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함

### 가. 조세조약 남용 관련 대법원 판례<sup>15)</sup>

#### 사례 1: 론스타 사례<sup>16)</sup>

- 외국자본의 조세조약 남용을 이용한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는 론스타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였고, 이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지속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

#### 1) 사실관계

- 아래 [그림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론스타Ⅲ(미국) 등은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벨기에에 스타홀딩스를 설립하여 씨제이트레이딩(주)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이후 상호를 (주)스타타워로 바꿈) 국내 소재 스타타워빌딩을 매수함
- 이후 스타홀딩스는 (주)스타타워의 주식을 싱가포르 투자청 산하 법인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획득하였으나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sup>17)</sup>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15) 홍성훈·이은별·홍민옥,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국제비교 연구: 조세조약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pp.1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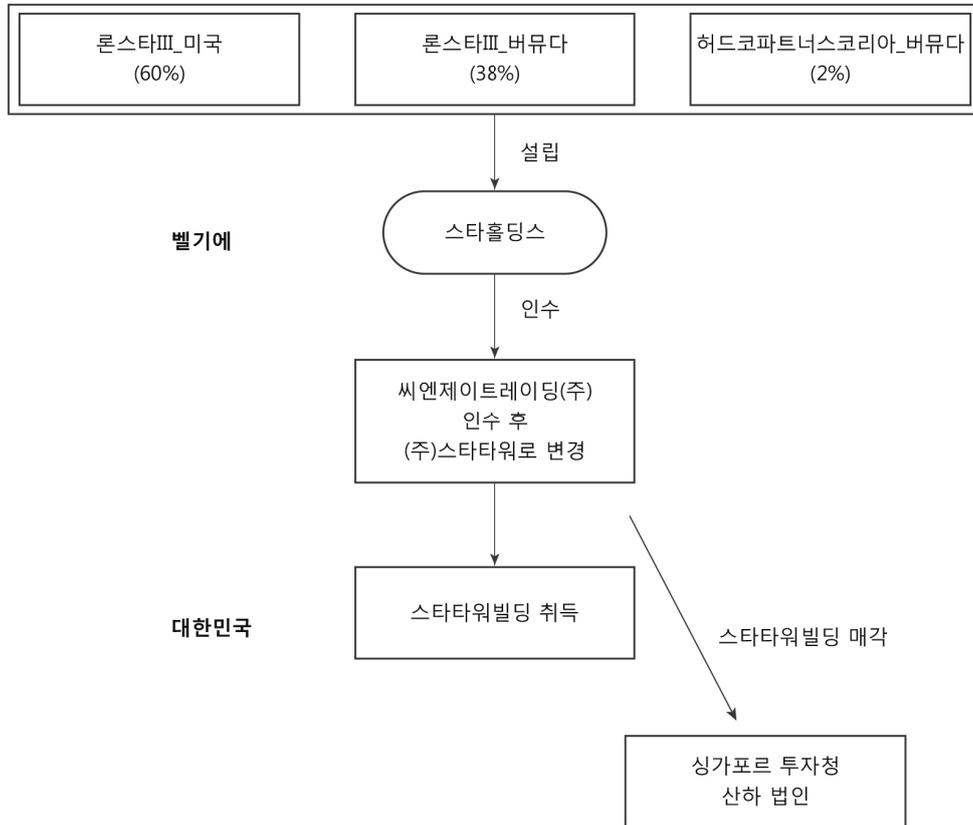
16) 대법 2012. 0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7)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는 유가증권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론스타 사건의 경우 벨기에 법인)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상당수의 조세조약에서는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원천지국(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 쟁점사항 및 대법원 판결

- 론스타III 등은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라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과 대법원 모두 스타홀딩스 등의 투자회사들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 과세관청은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에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는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가 아니라 론스타III(미국), 론스타III(버뮤다),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버뮤다)라고 판단함
  - 스타홀딩스가 자산관리 능력이 없었으며, (주)스타타워 주식의 취득·관리 및 양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스타홀딩스를 도관으로 판정함
  
- 또한, 과세관청은 론스타III(미국)과 론스타III(버뮤다)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버뮤다)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
  
-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스타홀딩스가 아닌 론스타III(미국), 론스타III(버뮤다),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버뮤다)라는 데에 동의하였으나 론스타III(미국)과 론스타III(버뮤다)를 개인이 아닌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함

[그림 II-3]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사례 1: 론스타 사례



자료: 홍성훈 외(2014), p.18.

사례 2: 제일은행 매각 사례<sup>18)</sup>

1) 사실관계

- 아래 [그림 II-4]와 같이 미국의 투자회사는 케이만군도에 유한 파트너십인 A LP를 설립하여 케이만 군도의 B Holdings와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C Limited를 인수하여 최종적으로 C Limited를 통하여 (주)D은행의 주식을 인수함

18) 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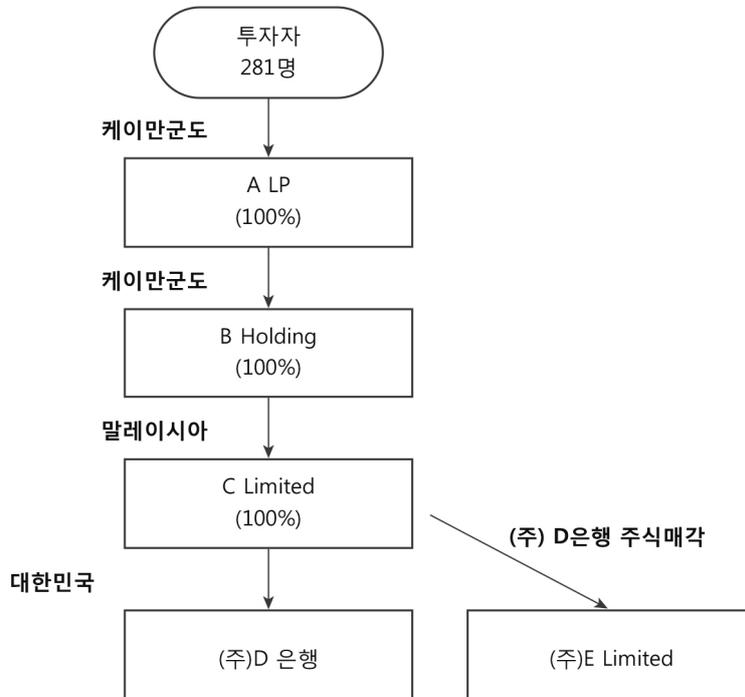
- 이후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C Limited는 한국의 E Limited에 (주)D은행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발생시켰으나, 한국-말레이시아 조세조약<sup>19)</sup>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2) 쟁점사항 및 대법원 판결

- 투자자 측은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말레이시아 법인인 C Limited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과 과세관청 모두 말레이시아의 C Limited와 케이만 군도의 B Holding 등 투자회사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말레이시아 법인인 C Limited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이므로, 이 사건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A LP의 투자자인 281명이라고 주장함
  - C Limited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라부안에 소재한 위탁관리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서류 관리, 기장 및 각종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점
  -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이 사건 주식이 전부이며, 그 취득자금은 모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인 점 등
- 반면, 대법원은 A LP가 (주)D 은행의 경영에 참가하여 그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다음 (주)D 은행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뚜렷한 사업목적은 가진 영리단체라 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성질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심리하여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 즉,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그 단체의 구성원인 281명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19) 한·말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고 하고 있음

[그림 II-4]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사례 2: 제일은행 사례



자료: 홍성훈 외(2014), p.22.

### 사례 3: Korea Dairy Holdings 사례

#### 1)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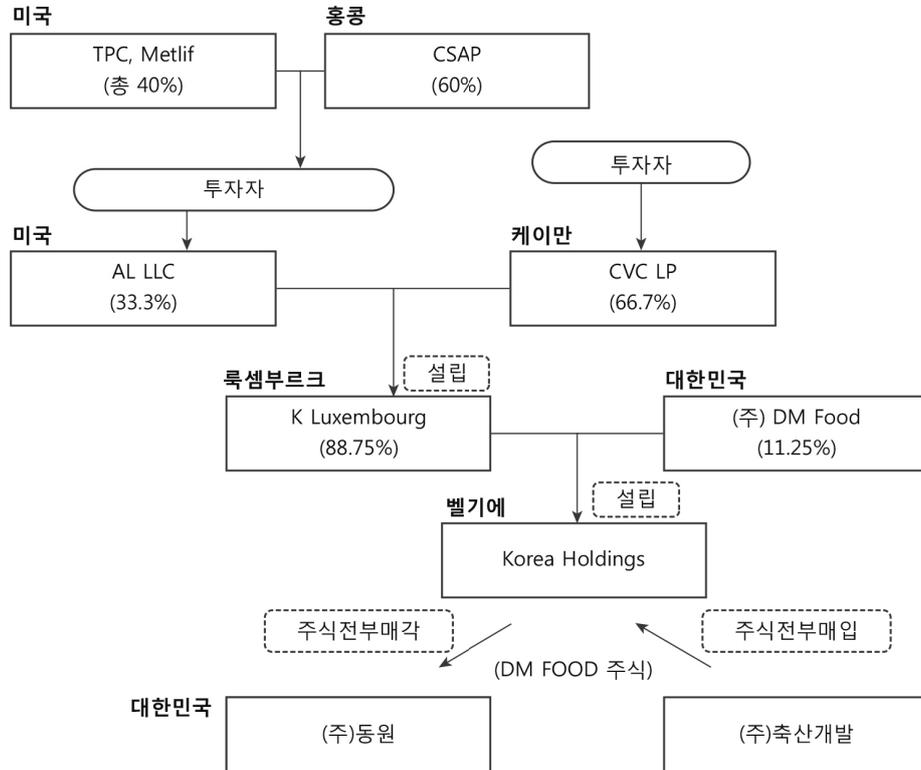
- 아래 [그림 II-5]와 같이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인 CVC LP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AI LLC와 함께 룩셈부르크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법인 (주)DM Food와 함께 벨기에 법인 Korea Holdings를 설립하여 (주)축산개발로부터 (주)DM food 주식을 모두 인수함
- 이후 벨기에 법인 Korea Holdings는 (주)DM food 주식을 (주)동원에 모두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주)동원은 한국-벨기에 조세조약<sup>20)</sup>에 따라 양도대금 지급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20)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

## 2) 쟁점사항 및 대법원 판결

- 투자자 측은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벨기에 법인인 Korea Holdings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과 과세관청 모두 Korea Holdings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 과세관청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는 벨기에 법인인 Korea Holdings가 아니라 CVC LP와 AI LLC의 투자자라고 판단함
- CVC LP의 아래와 같은 사법적 성질에 근거하여 외국법인으로 보았음
  -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포함되는 점
  -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 운용,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에 해당하는 점
  - 구성원의 개인 구성원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인 점
- AI LLC의 경우도 CVC LP와 같이 사법적 성질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그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따라서 AI LLC의 투자자인 홍콩법인 CSAP는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음

[그림 II-5]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사례 3: Korea Dairy Holdings 사례



자료: 홍성훈 외(2014), p.20.

### 나.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및 대응방안의 특징

-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조세조약 남용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은 조세피난처에 혼성사업체(hybrid)<sup>21)</sup>를 설립하고, 넓은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갖춘 경과세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에 투자한다는 것임
  - 케이만군도 등에 위치한 limited partnership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혼성사업체를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지주회사를 관리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양도소득 면제 규정과 같은 유리한 조세조약 혜택

21) '혼성사업체'란 특정 국가에서는 투시과세방식을 적용하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법인과세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체를 뜻함

을 적용받기 위하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라부안<sup>22)</sup> 등 경과세  
국에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에 투자함

- 한편, 외국자본의 조세조약 남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과세관청과 법원은 우리나라 세  
법상의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인 ‘실질과세원칙’<sup>23)</sup>에 근거하여 대응함<sup>24)</sup>
- 해외자본의 조세조약 남용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최근 대법원의 판  
례의 일관된 공통점은 다음과 같음<sup>25)</sup>
  -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에 소재한 투자지주회사들은  
사실관계상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  
닌 도관회사로 보아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함
  - 투자펀드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데 필수적이며 투자지주회사를 관리  
하는 지배주주인 경우, 우리나라 사법상 구성원과 독립된 별도의 주체로 보아 세법  
상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으로 봄
  - 우리나라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투자펀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이 되  
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투자펀드의 투자자가 관련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 국외투자기구의 사법상 성  
질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sup>26)</sup>

22) 이경근, 「조세조약 적용기준에 따라 분석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의 문제점」,  
『세제와 회계연구』, 2014., pp.18-19에 따르면, 투자지주회사가 벨기에에 있는 사건은 ‘2010두  
25466’과 ‘2011두7311’이고, 네덜란드에 있는 사건은 ‘2011두3159’이며, 라부안에 있는 사건은  
‘2010두20966’과 ‘2011두4411’ 등이 있음

23)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등에서는 과세 대  
상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24) 조세조약 남용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II.3.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안에서  
서술함

25) 홍성훈 외(2014), pp.23-24.

26) 홍성훈 외(2014), p.80에 따르면 혼성사업체의 ‘사법적 성질’에 따른 우리나라 대법원의 해석은

- 즉, 국외 투자기구가 사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실체를 존중하여 조세조약 목적상 투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3.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안

-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sup>27)</sup>
  - 조약의 일반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에 의존함
  - 각 국가의 사법체계를 통해 적용되는 내국법의 사법상 원칙에 근거함
    - 사법상 원칙(judicial doctrine) 또는 Ramsay 원칙(Ramsay doctrine)
  - 각 국가의 내국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입법함
  - 조세조약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 근거
  - 조세조약의 LOB규정
-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닌 중첩될 수도 있으며, 현실에서는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적용범위 해석, 조세회피방지규정, 내국법의 원칙, LOB규정 등은 복합적이거나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는 열거된 대응방안 중 조약의 해석, 내국법의 원칙, 조세회피방지규정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적용범위는 넓을 수 있으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저하되기 때문임
    - 그렇다고 해서 조약의 조세회피방지규정 및 LOB규정도 완전히 구체적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방안보다 상대적으로, 특히 LOB규정은 구체적임

---

각 국가의 조직법 체계와 사법 전통이 다른 상황에서 조세조약의 통일적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가진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OECD는 혼성사업체의 '설립지국의 세법상 취급'에 따르자는 제안을 함

27) 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1 Commentary 10. & Angharad Miller & Lynne Oats(2014), p.415의 내용을 재구성

- 어떠한 형태의 GAAR이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조세회피구조가 발견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GAAR이 완전하지 않는 경우 조약에 특정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함<sup>28)</sup>
- 따라서 대응방안의 채택은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될 수 있음

### 가. 조세조약의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

- 일반론적 해석은 조세조약의 문구 해석에 있어 조세조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조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려하는 것임
  - 조세조약의 주된 목적은 이중과세의 방지뿐 아니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함<sup>29)</sup>
  - 이러한 방법은 조약의 선의(in good faith) 해석뿐만 아니라 맥락, 목적 및 의도 등을 고려함<sup>30)31)</sup>
- 1971년 미국 Aiken사건(Aiken Industries Inc v Commissioner)이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조약의 일반론적 해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sup>32)</sup>
  - 이 사건에서는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바하마의 법인이 미국에서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및 바하마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온두라스에 도관법인을 설립하고 back-to-back loan을 실행함
  - 미국 조세법원은 바하마 법인에 이자소득이 지급된다고 보고 30%의 미국 내국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고 결정함
    - 미국 정부는 조약상 “받는(received by)”의 의미를 단순히 물리적 소유가 아닌 완전한 “지배와 통제(dominion and control)”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28)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1 commentary 9.6

29)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1 commentary 7

30) UN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1 Commentary 38

31)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1 commentary 9.3

32) Angharad Miller & Lynne Oats(2014), p.416.

### 나. 내국법의 사법상 원칙에 의존

- 각 국가가 내국법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하던 규정을 조세조약 남용에 적용함<sup>33)</sup>
  - 비엔나협약에 따르더라도 내국 사법상 접근방법을 국제조약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국내 거래에 적용되는 사업목적, 형식보다 실질우선 또는 경제적 실질, 단계 거래, 법률남용(abuse of law 또는 *fraus legis*) 등을 국제 거래에 적용하여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함
    - UN모델에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용은 사법부의 판단이 요구됨

### 다. 내국법상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 의존

- 내국법상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수립하여 조세조약의 남용이 발생할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대응함
  - 이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과 특정 조세회피방지규정(Specific Anti-Avoidance Rule: SAAR)으로 나뉨
  
- GAAR은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조세회피 형태의 변화가 급격한 환경에 처한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며, SAAR은 특정인 또는 특정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보임
  - GAAR은 실질과세, 경제적 실질 등이 포함되는데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실제 적용 및 불복절차에서 결과에 대해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함
  - SAAR은 유보소득과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과소자본세제 등이 포함되는데, 보다 구체적이므로 적용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지만 각 형태별로 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33) UN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1 Commentary 28

- 내국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조세조약과 상충될 우려가 존재하나 현재 OECD모델과 UN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음
  - OECD모델에서는 원칙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which facts give rise to a tax liability)인데 반해,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하지 않으며 요건에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아 상충되지 않는다고 함<sup>34)</sup>
  - UN모델에서는 조세조약에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허용하거나 조세조약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며, 조세조약의 목적론에 근거한 적절한 해석을 통해 이러한 상충이 해결된다고 함<sup>35)</sup>

#### 라. 조세조약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 근거

- 이 접근방법은 조세조약에 조약회피방지규정을 포함하는 것임
  - 내국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규정과 특정 규정으로 나누어짐
- 조세조약의 일반적 조약회피방지규정은 조세조약 목적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에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임
  - 내국세법의 조세회피방지규정 등을 통해 조약남용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조약에 포함하는 국가는 이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조약이 존재할 경우 조약 남용에 대한 다른 일반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조항의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sup>36)</sup>

34)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1 commentary 22.1

35) UN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1 Commentary 17-19.

36) UN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1 Commentary 37. & Philip Baker, *Improper Use of Tax Treaties,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United Nations Papers on Selected Topics in Administration of Tax Trea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May 2013, p.9.

- UN모델에서는 협약을 남용하는 목적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타방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사전통지 후 부인하는 이스라엘-브라질 조약과 협약이나 내국세법의 남용시 권한있는 당국의 협약상 혜택 부인을 제한하지 않는 캐나다-독일 조약을 예로 들고 있음<sup>37)</sup>
- 조세조약의 특정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조약에 특정 조약 남용에 대한 방지 규정을 포함하는 것임
  -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에 적용되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규정임
  - 이외에도 UN모델에서는 이자와 사용료에 적용되는 특수관계, 부동산회사의 주식의 양도 규정, 연예회사(star company)에 대한 규정 등을 들고 있음<sup>38)</sup>

#### 4. 특정 조약의 “LOB규정”

- 조세조약 LOB규정은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조정의 대상으로서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인(person)을 조세조약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임
  - 대표적으로 도관(conduit) 형태의 인격을 부인하고자 하는 규정이어서 개인이나 정부기관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됨
  - LOB규정은 수익적 소유자와는 다르게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LOB규정은 도관 등을 통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인 등을 부인하는 규정이므로 소득구분, 혼성금융상품에 따른 조세회피 등에 대응할 수는 없음
- LOB란 용어는 조세조약상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으며, 미국 모델조세조약이나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기술하는 내용을 한정할 수도 있어 범위의 정의가 불명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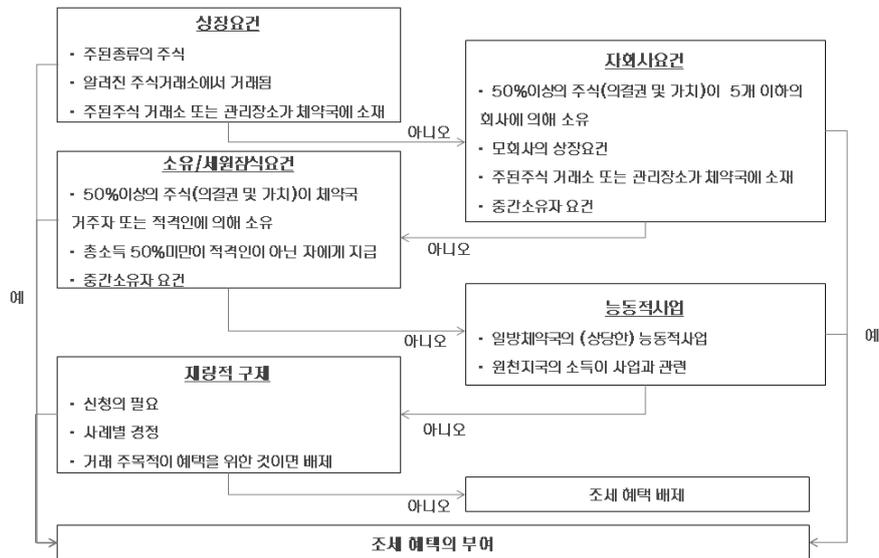
---

37) UN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1 Commentary 34-35

38) UN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1 Commentary 31

- 보다 포괄적으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약에서의 적용 거부를 LOB으로 보는 방법도 있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실제 LOB의 기술은 미국 또는 OECD 등의 조문에 한정하고 있다고 함<sup>39)</sup>
- 본 연구에서는 미국, OECD, UN모델에서 기술된 요건을 대부분 포함하는 경우 포괄적 LOB 규정으로 간주하고 이외의 일부 요건이 포함되는 경우 LOB 유사규정으로 분류함
  - 주된 목적 요건 규정(principal purpose test: PPT) 또는 내국세법상 조세회피방지 규정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LOB규정으로 분류하는 연구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는 별도로 분류함
  - 또한 적용범위로 구분하여 제한없이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경우 포괄적 LOB규정으로, 일부 소득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경우 제한적LOB규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 OECD, UN모델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서 이러한 분류를 따르지 않음
    - 다만 일부 소득에 한해 적용되는 LOB규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술하였음

[그림 II-6] 통상적인 LOB규정 구성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Taxation*, 2015, p.13.

39)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15, p.170.

- 일반적으로 LOB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요건은 개인, 정부, 상장법인(및 자회사), 연금 기금과 비영리단체, 소유/세원잠식, 능동적사업, 파생혜택, 본사 요건과 재량적 구제임
- LOB규정과 수익적 소유자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LOB규정이 수익적 소유자 개념보다 포괄적이며, 거주자 중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임
  - LOB규정과 수익적 소유자 규정은 개념상 차이가 있으나 기능은 유사하다는 견해, LOB규정이 수익적 소유자 규정을 보충한다는 견해 등<sup>40)</sup>이 있음
  - 적용범위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의 적용범위는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제한되지 만<sup>41)</sup>, LOB규정의 적용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득에 적용될 수 있음
  - 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에 해당하면서 보다 체약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거주자를 보충하는 것은 명확함
- LOB규정을 조약에 포함하는 방법은 별도의 조문을 두는 방법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조약에서는 각 소득별로 제한규정을 두는 경우도 존재함
- LOB규정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대부분 국가들의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은 미국모델조약에서 이를 예시하고 있지만 실제 조약에서는 체약국의 상황에 따라 변형되어 실제 조약은 모델조약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sup>42)</sup>
- 현재 OECD에서는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중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세혜택의 부여 방지(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40) K.J. Holmes, Chapter 19: International Tax Avoidance in International Tax Policy and Double Tax Treaties—An Introduction to Principles and Application (Second Revised Edition) (IBFD 2014), Online Books IBFD

41) 자본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조문상 수익적 소유자 규정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 적용은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아닌 실질과세에 따른 적용으로 판단됨

42) K.J. Holmes(2014), online book

-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는 LOB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3년 개정을 통해 주식에서 LOB규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sup>43)</sup>
- UN에서는 별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현행 UN모델주식에 LOB규정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음

## 5. 우리나라의 현황

### 가. LOB규정

-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경우 최근 들어 LOB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 그러나 조문명이 '혜택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US모델 등과는 다른 유사규정에 해당하거나, 조문명이 '혜택의 제한'이 아니면서 조약의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 한-미 조세조약에는 혜택의 제한의 조문은 없으나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규정을 두어 과거 미국모델의 LOB규정과 유사한 조문을 가지고 있음
  - 한미조세조약 제17조<sup>44)</sup>에서는 거주지국에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부담을 적용받으면서, 동 법인의 자본 25% 이상이 소득 원천지국 이외의 국가의 인에 의해 소유되면 배당·이자·사용료 및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을 제한함

43)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 주식 문단 20 이하

44) 한미조세조약 제17조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1979. 10. 20.]

타방채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일방 채약국의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12조(배당), 제13조(이자), 제14조(사용료) 또는 제16조(양도소득)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 (a)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동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기 일방 채약국이 동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가, 동 일방 채약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으며, 또한
- (b) 동 법인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이 상기 일방 채약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또는 한국법인의 경우에는 미국시민)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양 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달리 결정되는 경우

- 이러한 조문은 제3국의 투자자가 일방체약국의 낮은 세부담 적용과 동시에 타방체약국에 투자하여 얻는 이자소득 등에 한·미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 부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sup>45)</sup>
- 이러한 형태의 혜택의 제한은 미국 조세조약모델의 초기 형태로 back-to-back론 또는 earning-stripping 등을 통한 조세회피에는 대응할 수 없음
  
- 한국-페루 등 다수의 조약에서 혜택의 제한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의 미국 모델 및 OECD, UN 모델의 주식서상 혜택의 제한과는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의 조약에서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 통제되고 조약 남용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의 혜택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내용은 앞선 분류에 따르면 일반적 조약남용방지 규정 정도의 수준이거나 특정 조약남용방지 규정의 포괄적인 형태(또는 후술될 주된 목적요건: PPT)로 판단됨
  - 통제와 혜택의 이용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매우 저하됨
    - 반면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재량이 커지므로 다양한 형태의 조약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함
  - 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의 경우 다른 조약에 비해 세부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세가 없고 특정 산업 또는 소득에만 소득세를 과세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조세체계에 따른 것임
    - 세계 대부분 국가가 아랍에미리트와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45)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rticle 17-Investment or Holding Companies

〈표 II-1〉 우리나라의 주요 혜택 제한 조항

<p>한국-페루 조세조약 (2012.5.10. 서명)</p>	<p>제27조 【혜택의 제한】</p> <p>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1조와 관련하여, 지분,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p> <p>2.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고자 설계된 한쪽 계약국 법상 어떠한 규정의 적용을, 그렇게 기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한국-아랍에 미레이트 조세조약 (2003.9.22.)</p>	<p>제23조 【면세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s)</p> <p>1. 이 협약의 다른 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조세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만이 제7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21조 및 제22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p> <p>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p> <p>나.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정부기관</p> <p>다. 자본의 최소한 75퍼센트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정부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본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인 개인이며 동 거주자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법인</p> <p>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만이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p> <p>가. 개인</p> <p>나. 자본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정부기관, 지방정부 및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국한되며 동 거주자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법인</p> <p>3.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감면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인 동 법인은 그 법인의 주요목적 또는 그 사업 수행의 주요목적 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 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재산을 취득 또는 유지하는 주요목적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p> <p>4.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조세로부터의 감면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만 한한다. 대한민국의 당국이 해당 소득이나 자본이 배분될 수 있는 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세금명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를 보유한 경우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동 증거를 제시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고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양 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26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p>

〈표 II-1〉의 계속

<p>한국-콜롬비아 조세조약 (2010.7.27. 서명)</p>	<p>제26조 혜택의 제한</p> <p>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1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는, 다음의 경우 이 협약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p> <p>가. 그 거주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통제되고,</p> <p>나.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를 이용하는 것인 경우.</p> <p>2. 이 협약의 하나 이상의 규정이 그 규정에서 의도 또는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 사안에 관하여 이 협약의 개정 가능성을 포함하여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p>
<p>한국-에콰도르 조세조약 (2012.10.8. 서명)</p>	<p>제25조 혜택의 제한</p> <p>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다음의 경우, 이 협약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한다.</p> <p>가. 그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도 아닌 한 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통제되고,</p> <p>나. 그 거주자의 어떠한 설립, 취득, 존속 또는 활동 수행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이 협약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었던 경우</p> <p>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고자 설계된 한쪽 체약국 법상 어떠한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한국-파나마 조세조약 (2010.10.20. 서명)</p>	<p>제27조 혜택의 제한</p> <p>1.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1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다음의 경우 이 협약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p> <p>가. 그 거주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인들에 의하여 통제되고,</p> <p>나.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들 조문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p> <p>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한쪽 체약당사국 법의 어떤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 〈표 II-1〉의 계속

한국-바레인 조세조약 (2012.5.1.)	<p>제27조 혜택의 제한</p> <p>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1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다음의 경우, 이 협약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한다.</p> <p>가. 그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통제되고,</p> <p>나. 지분,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된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는 것인 경우</p>
-------------------------------	--

## 나. LOB규정 이외의 조약남용 방지 규정

- 우리나라는 현재 내국세법의 조세회피방지규정,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근거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음
  - 사법체계를 통한 내국법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보다 적용 가능한 것으로 대륙법계 국가이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움
  - 다만, 조세회피방지규정이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사건별 해석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은 가능해 보임
  
- GAAR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SAAR로는 원천징수절차의 특례 등을 들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sup>46)</sup>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sup>47)</sup>에서는 소득귀속자, 과세표준의 계산, 단계거래 등에 대한

## 46) 제14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156조의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sup>48)</sup>, 「법인세법」 제98조의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sup>49)</sup>에서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의 거

47)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48)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①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 목, 같은 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제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49)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①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제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주자에 대해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하거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과소자본세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과세(CFC rule) 등도 포함하고 있음

-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한 실제 사건에서는 GAAR을 적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건은 실질과세에 근거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식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남용을 해결하고 있음
    - 실질적 귀속자는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와 유사해보이지만 조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실질과세에 근거한 것으로 적용범위 등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실질과세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조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음

### Ⅲ. 국외의 LOB규정 사례

#### 1. 미국

#####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 1) 조세조약의 기본 정책

- 미국은 조세조약 체결시 자체적인 미국모델조세협약("US모델")과 OECD모델조세협약(OECD모델)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sup>50)</sup>
  - US모델과 OECD모델은 전체적인 구성 및 내용은 유사하지만, 일부 조항에서 유보로 인한 부분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임
  - 기본적으로 미국은 조세조약 체결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sparing provision)는 포함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 1) LOB규정에 대한 정책 방향

- 미국은 조세조약에 LOB규정을 최초로 도입하고 가장 널리 도입한 대표적 국가로, 대부분의 조약에 LOB규정을 두고 있음
- 미국은 US모델과 이에 대한 모델 해석서(Model Technical Explanation)를 가지고 있음
  - 현행 유효모델은 2006년 US모델이며 2015년에 미국 재무성은 이에 대한 변경 제안을 공개함
    - 최초로 LOB규정이 도입된 것은 1981년 US모델이며 이후 1996년과 2006년에 개정이 이루어짐

---

50) John G. Rienstra, United States—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 미국 과세관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모델조세협약은 미국이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해석서는 모델조세협약을 근거로 체결한 조약에 대한 기술적 해설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음<sup>51)</sup>
- 최초로 혜택의 제안 규정이 도입된 US모델(1981)은 소유/세원잠식요건의 형태에 일부 상장법인, 재량적 구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세부적으로 제16조제1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인이 75%의 수익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시민이 아니면서 제3국의 거주자에게 이 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meet liabilities: 약정 등을 통한 지급을 의미) 않는 경우에만 조약의 혜택을 부여함
    - 다만, 일방체약국의 알려진 거래소에서 주식의 거래되는 회사는 일방체약국의 개인거주자에 의해 소유되는 것으로 간주함
  -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조세조약의 혜택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표 Ⅲ-1〉 미국 모델조세조약(1981) 제16조 혜택의 제한

<p>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titled under this Convention to relief from taxation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less</p> <p>(a) more than 75%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such person is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individual residents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nd</p> <p>(b) the income of such person is not used in substantial part, directly or indirectly, to meet liabilities (including liabilities for interest or royalties)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State other than a Contracting State and who are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p>	<p>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개인은 제외)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 조약에 의해 상대체약국에서 조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a) 수익적 소유자의 75% 이상이 일방체약국의 하나 이상의 개인 거주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며 그리고</p> <p>(b) 이러한 인의 소득이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고 미국시민이 아닌 인에게 채무를 상환하기(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채무를 포함) 위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사용되지 않는다.</p>
---	--

51) 미국 과세관청(<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U.S.-Model-Income-Tax-Convention-and-Model-Technical-Explanation>)

〈표 III-1〉의 계속

<p>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a), a company that has substantial trading in its stock on a recognized exchange in a Contracting State is presumed to be owned by individual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p>	<p>(a) 호의 목적으로 체약국의 알려진 거래소에서 회사의 주식이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는 일방체약국의 개인거주자에 의해 소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such person and the conduct of its operations did not have as a principal purpose obtaining benefits under the Convention,</p>	<p>2. 인의 설립, 취득 또는 보유와 사업의 수행이 협약상 혜택을 부여받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고 결정된다면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p>
<p>3. Any relief from tax provided by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the Convention shall be inapplicable to the extent that, under the law in force in that other State, the income to which the relief relates bears significantly lower tax than similar income arising within that other State derived by residents of that other State.</p>	<p>3.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일방체약국에 의해 부여되는 조세혜택은 타방체약국의 법 체계에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유사소득보다 현저하게 낮은 과세가 이루어지게 하는 혜택의 수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p>

- 이후 개정 US모델(1996)에서는 현재의 모델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현재의 US모델(2006)과 비교할 때 동일한 조에 동일한 조문 수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모델보다 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이전 모델과 비교하여 지분비율이 50%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75%가 과도하여 선의의 거래에도 LOB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 이러한 점 때문에 이전 모델 적용 시였던 1984년 이탈리아-미국의 조세조약에 대한 의정서에서는 75% 대신 50%가 적용됨<sup>52)</sup>

52) Reuven S. Avi-Yonah & Oz Halabi, "US Treaty Anti-Avoidance Rules: An Overview and Assessment,"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April/May 2012., p.239.

〈표 Ⅲ-2〉 미국 모델조세조약(1996) 제22조 혜택의 제한

<p>1.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ntitled to benefits otherwise accorded to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by this Convention only to the extent provided in this Article.</p>	<p>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조에서 규정되는 범위내에서 이 협약에 따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부여받는다.</p>
<p>2.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if the resident is:</p> <p>(a) an individual;</p> <p>(b) a qualified governmental entity;</p> <p>(c) a company, if</p> <p style="padding-left: 20px;">(i) all the shares in the class or classes of shares representing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company are regularly traded on a recognized stock exchange, or</p> <p style="padding-left: 20px;">(ii) at least 50 percent of each class of shares in the company is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ompanies entitled to benefits under clause (i),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indirect ownership, each intermediate owner is a person entitled to benefits of the Convention under this paragraph;</p> <p>(d) described in subparagraph 1(b)(i) of Article 4 (Residence);</p> <p>(e) described in subparagraph 1(b)(ii) of Article 4 (Residence), provided that more than 50 percent of the person's beneficiaries, members or participants are individuals resident in either Contracting State; or</p>	<p>2. 체약국의 거주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이 협약의 혜택을 부여받는다.</p> <p>(a) 개인</p> <p>(b) 적격정부기관</p> <p>(c) 다음의 회사</p> <p style="padding-left: 20px;">(i) 회사의 의결권과 가치의 50% 이상을 나타내는 종류주식의 모든 주식이 알려진 주식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거나</p> <p style="padding-left: 20px;">(ii) 회사의 각 종류주식의 50% 이상이 (i)호에서 혜택을 부여받는 회사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각 중간소유자는 이 항에 따른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이어야 함</p> <p>(d) 제4조 (거주자)의 1(b)(i)에 기술된 거주자</p> <p>(e) 제4조 (거주자)의 1(b)(ii)에 기술된 거주자로서 인의 수익자, 구성원 및 참여자의 50%이상이 체약국의 개인 거주자인 경우</p>

〈표 Ⅲ-2〉의 계속

<p>(f)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f:</p> <p>(i) on at least half the days of the taxable year persons described in subparagraphs (a), (b), (c), (d) or (e) own,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 chain of ownership in which each person is entitled to benefits of the Convention under this paragraph), at least 50 percent of each class of shares or other beneficial interests in the person, and</p> <p>(ii) less than 50 percent of the person's gross income for the taxable year is paid or accrued, directly or indirect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payment is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either State), in the form of payments that are deductible for income tax purposes in the person's State of residence.</p>	<p>(f) 개인 이외의 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p>(i) 과세기간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a), (b), (c), (d) 또는 (e)호에서 기술된 인이 직·간접적으로(순차적인 소유인 경우에는 각 인이 이 항의 혜택을 부여받는 자여야 함) 인의 각 종류주식 또는 여타 수익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p> <p>(ii) 인의 과세기간 총수익 중 50% 미만이 인의 직·간접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 인의 거주지국에서 세액의 결정에서 공제되는 지급액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p>
<p>3.(a)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t otherwise entitled to benefits shall b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an item of income derived from the other State, if:</p> <p>(i) the resident is engaged in the activ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first-mentioned State,</p> <p>(ii) the income is connected with or incidental to the trade or business, and</p> <p>(iii) the trade or business is substantial in relation to the activity in the other State generating the income.</p>	<p>3. (a)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다른 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항목에 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i) 거주자가 거주지국의 능동적 상업 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p> <p>(ii) 소득이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거나 부수적이며 그리고</p> <p>(iii) 사업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타방체약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우</p>

## 〈표 Ⅲ-2〉의 계속

<p>3.(b)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business of making or managing investments will not be considered an active trade or business unless the activity is banking, insurance or securities activity conducted by a bank, insurance company or registered securities dealer.</p> <p>(c) Whether a trade or business is substantial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will be determined based on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 In any case, however, a trade or business will be deemed substantial if, for the preceding taxable year, or for the average of the three preceding taxable years, the asset value, the gross income, and the payroll expense that are related to the trade or busines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equal at least 7.5 percent of the resident's (and any related parties') proportionate share of the asset value, gross income and payroll expense, respectively, that are related to the activity that generated the income in the other State, and the average of the three ratios exceeds 10 percent.</p> <p>(d) Income is derived in connection with a trade or business if the activity in the other State generating the income is a line of business that forms a part of or is complementary to the trade or business. Income is incidental to a trade or business if it facilitates the conduct of the trade or business in the other State.</p>	<p>(b) 이 항의 목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상업 또는 사업은 은행, 보험 회사 또는 등록된 증권중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은행, 보험 또는 증권 활동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능동적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p> <p>(c) 상업과 사업 활동이 상당한지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에 기반하여 판단된다. 그러나 상업과 사업이 이전 과세기간 또는 이전 3개년 간 사업기간 평균적으로 거주지국의 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가치, 총소득 및 급여비용이 다른 국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자산가치, 총소득 및 급여비용의 거주자(및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율의 각각 7.5% 이상이고 세 비율의 평균이 10%를 초과하면 상당한 것으로 간주한다.</p> <p>(d) 소득을 창출하는 타국의 활동이 상업 또는 사업의 부분을 구성하거나 보충적이라면 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타국에서 상업 또는 사업의 수행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소득은 상업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것이다.</p>
---	---

〈표 III-2〉의 계속

<p>4.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t otherwise entitled to benefits may be granted benefits of the Convention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from which benefits are claimed so determines.</p>	<p>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부여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p>
<p>5.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recognized stock exchange” means:                  (a) the NASDAQ System owned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Inc. and any stock exchange registered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s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under the U.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nd                  (b) [stock exchang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p>	<p>5. 이 조의 목적으로 알려진 주식거래소란                  (a) NASA가 소유한 NASDAQ 시스템과 1934 증권거래법에 따라 US SEC에 등록된 주식거래소                   (b) [타방체약국의 주식거래소]</p>

- 미국은 조세조약 남용에 대해 LOB규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도 동시에 운용하고 있음
  - 특정 거래가 실질에 따른 재구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사업목적, 실질의 우선, 단계거래 또는 도관 원칙 등을 고려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익적 소유자를 식별하는 데 적용됨<sup>53)</sup>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 미국은 2015년 7월 현재 총 67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sup>54)</sup>, 조세조약에 LOB규정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음
  - 상장, 소유/세월잠식 요건 등은 일반적으로 실제 조약에 적용되고 있음

53) United States model technical explanation accompanying the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 p.64.

54) 미국 과세관청(<http://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United-States-Income-Tax-Treaties---A-to-Z>)

- 과거에는 파생혜택요건은 잘 이용되지 않았으나 EU회원국들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수 적용되고 있음<sup>55)</sup>

#### 1) US모델조세협약(2006)

- 현행 US모델 제22조에서는 혜택의 제한에 대해 조문을 포함하고 있음
- 제22조 제1항에서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적격인(qualified person)이 아닌 경우 조약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음
  - 이는 LOB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기술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해운 및 항공운수, 배당, 이자, 사용료, 자본소득<sup>56)</sup>, 예능인 및 체육인,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및 이중과세, 무차별원칙에도 적용되어<sup>57)</sup> 사실상 제한이 없음
  - 경제적 실질 등 내국세법상의 원칙이 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에게 적용된 후, LOB규정이 수익적 소유자에게 적용됨
- 제22조 제2항에서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은 자기집행적(self-executing)성격의 조항으로 아래 제4항과 달리 권한있는 당국의 사전해석이나 승인을 요하지 않음
- 제22조 제2항 제a)호와 제b)호는 모든 개인과 정부 및 이의 관련 조직을 적격인으로 보는 내용임
  - 이는 개인이나 정부 등은 그 자체로 도관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sup>58)</sup>

55) Michael J. Miller, "Assessing U.S. Income Tax Treaties: Current Trends in the Limitation on Benefits Article," *International Tax Journal*, May-June 2007, p.9.

56) US모델에서는 Capital Gain이 아닌 Gain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내용은 일반적으로 Capital Gain으로 알려진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자본소득으로 번역함

57) United States model technical explanation accompanying the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 p.64.

58) Angharad Miller & Lynne Oats(2014), p.434.

- 다만, 개인이 대리인으로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익적 소유자인지 판정에 따라 적격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sup>59)</sup>
- 제22조 제2항 제c)호는 상장법인과 이의 자법인에 대해 요건에 충족할 경우 적격인으로 보는 규정임(통상적으로 “상장법인요건”)
  - 이는 상장법인의 경우 높은 수준의 규제와 실질적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도관회사가 아닐 것이라는 데 기인함<sup>60)</sup>
  - 주된 주식이 상장되어 있으면서, 거래소가 일방체약국에 소재하거나 중요한 관리 및 통제 장소가 거주지국에 존재하면 적격인에 해당함
    - 종류 주식이 다수일 경우 어느 종류의 주식 합계든지 50%를 초과하는 의결권과 가치를 가지면서 상장되어 있다면 적격인에 해당함<sup>61)</sup>
  - 거래소는 NASDAQ, SEC 등록거래소 및 타방체약국의 거래소가 될 수 있음
  - 중요한 관리 및 통제 장소는 일반적으로 회사(혹은 자회사)의 경영진이 일상적 책무를 실행하는 장소를 의미함<sup>62)</sup>
    - 일반적으로 회사의 본사가 소재하는 곳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자회사가 적격인에 해당하는 5개 이하의 상장법인에 의해서 소유되는 경우 자회사도 적격인에 해당함
    - 다만, 간접지배일 경우 중간지배회사가 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함
- 제22조 제2항 제d)호는 연금기금과 비영리단체에 대해 적격인으로 보는 규정임
  - 비영리단체는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면세되며 종교 등의 목적만을 위해 조직·운영되기 때문이나, 연금기금을 적격인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배경이 나타나 있지 않음

59) United States model technical explanation accompanying the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 p.64.

60) Angharad Miller & Lynne Oats(2014), p.435.

61) United States model technical explanation accompanying the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 p.65.

62) 이는 OECD의 실질적 관리장소(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와 동등한 개념이지만 실무상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이 연구를 벗어나는 논의이므로 생략함

- 연금기금에 대해서는 다수의 수익자가 존재하면서 장기간 투자 및 수익분배이라는 특성을 볼 때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한 도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비영리단체 등은 별도의 조건이 없으나, 연금기금은 그 수익을 받는 자가 해당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제22조 제2항 제e)호는 적격인이 50% 이상의 의결권과 가치를 소유하면서 이의 이익의 50% 미만인 체약국의 적격인 이외에 자에게 과세소득을 공제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개인 이외의 인을 적격인으로 보는 규정임(통상적으로 “소유/세원잠식요건”)
- 이는 적격인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경우 도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기인함
    - 적격인이 회사 등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50% 미만의 소득이 비적격인에게 공제되는 비용으로 지급되므로 대부분의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적격인의 소득으로 귀속됨
  - 실제 조약에서 소유/세원잠식요건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요구되는 지분율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183일 이상의 보유요건 등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제되는 비용에서 금융기관의 이자 등의 제외되기도 함<sup>63)</sup>
  - 신탁이 이 규정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지분율 계산시 수익권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수익자는 100%에서 수익권 지분율을 합한 비율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함<sup>64)</sup>
    -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하면 1종, 2종 수익권의 경우, 1종 수익권에 대한 비율을 먼저 계산후 나머지는 2종 수익권에 배부하는 방법임
    - 만약, 수익권자별 실제 수익지분율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경우 모든 수익권자가 적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탁은 이 조항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sup>65)</sup>

63) Angharad Miller & Lynne Oats(2014), p.436.

64) United States model technical explanation accompanying the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 p.68.

65) Ibid

-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 요건에서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이에 포함하지 않으며, 신탁의 경우 수익배분이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면 이는 포함함<sup>66)</sup>
  
- 제22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소득항목에 대해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임(통상적으로 “능동적 사업요건”)
  - 이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소득항목과 이를 발생시키는 회사 및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규모가 상당한 경우 등은 도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기인함
    - 타방체약국의 원천징수를 회피하는 목적만을 위해 완전한 형태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데 많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sup>67)</sup>
  - 이 규정에서는 제2항의 적격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소득항목이 일방체약국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협약의 혜택을 부여함
    - 이러한 예로 양 체약국에서 동일 또는 연관된 상품을 판매·제조하거나, 일방체약국에서 제조하고 타방체약국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됨<sup>68)</sup>
  
- 제22조 제4항은 거주자가 적격인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소득항목에 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권한있는 당국은 인의 설립, 취득 또는 보유와 사업의 수행 등을 고려하는데 그 재량은 매우 폭넓음
    -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특정 혜택만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혜택의 부여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둘 수도 있음<sup>69)</sup>

66) Ibid

67) Angharad Miller & Lynne Oats(2014), p.437.

68) United States model technical explanation accompanying the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 p.70.

69) United States model technical explanation accompanying the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 p.73.

〈표 Ⅲ-3〉 미국 모델조세조약(2006) 제22조 혜택의 제한

<p>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otherwise accorded to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unless such resident is a “qualified person” as defined in paragraph 2.</p>	<p>1.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체약국의 거주자가 문단 2에서 정의된 “적격인”이 아니라면 체약국의 거주자가 받았을 이 조약에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p>
<p>2.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a qualified person for a taxable year if the resident is:</p> <p>a) an individual;</p> <p>b)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p> <p>c) a company, if:</p> <p>i) the principal class of its shares (and any disproportionate class of shares) is regularly traded on one or more recognized stock exchanges, and either:</p> <p>A) its principal class of shares is primarily traded on one or more recognized stock exchanges loc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is a resident; or</p> <p>B) the company’s primary place of management and control is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it is a resident; or</p> <p>ii) at least 50 per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shares (and at least 50 percent of any disproportionate class of shares) in the company is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five or fewer companies entitled to benefits under clause i) of this subparagraph,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indirect ownership, each intermediate owner is a resident of either Contracting State;</p>	<p>2. 체약국의 거주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적격인이 된다.</p> <p>a) 개인</p> <p>b) 체약국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정부</p> <p>c) 다음의 회사</p> <p>i) 주된 종류의 주식(및 차별주식)이 하나 이상의 알려진 주식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면서</p> <p>A) 법인의 주된 종류의 주식이 회사의 거주지국인 일방체약국에 소재한 하나 이상의 알려진 주식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거나</p> <p>B) 법인의 중요한 관리 및 통제 장소가 법인의 거주지국에 소재 또는</p> <p>ii) 5개 이하의 위 i)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간접적인 경우에는 중간소유자가 체약국의 거주자여야 함, 법인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의 50% 이상 (및 차별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p>

〈표 Ⅲ-3〉의 계속

<p>d) a person described in paragraph 2 of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person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f that paragraph, more than 50 percent of the person's beneficiaries, members or participants are individuals resident in either Contracting State; or</p> <p>e)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f:</p> <p>i) on at least half the days of the taxable year,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that ar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under subparagraph a), subparagraph b), clause i) of subparagraph c), or subparagraph d) of this paragraph own, directly or indirectly, shares or other beneficial interests representing at least 50 percent of the aggregate voting power and value (and at least 50 percent of any disproportionate class of shares) of the person,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indirect ownership, each intermediate owner is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p> <p>ii) less than 50 percent of the person's gross income for the taxable year, as determined in the person's State of residence, is paid or accrued, directly or indirect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under subparagraph a), subparagraph b), clause i) of subparagraph c), or subparagraph d) of this paragraph in the form of payments that are deductible for purposes of the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 the person's State of residence (but not including arm's length payment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for services or tangible property).</p>	<p>d) 이 협약의 제4조 문단 2에서 기술된 인, 동조 문단 2의 a)호에서 기술된 인<sup>1)</sup>의 경우에는 그 인의 수익자, 구성원 및 참여자의 50% 이상이 체약국의 거주자 개인인 경우 또는</p> <p>e) 개인 이외의 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p>i) 과세기간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이 항의 a)호, b)호, c)호의 i)목 또는 d)호에 따라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인의 총 의결권과 가치의 50% 이상(및 의결권 차별주식의 50% 이상)의 주식이나 여타 수익권을 직·간접적으로, 간접적인 경우에는 중간소유자가 체약국의 거주자여야 함, 소유하고 있음 그리고</p> <p>ii) 인의 과세기간 총수익 중 50% 미만이 인의 직·간접적으로 이 항의 a)호, b)호, c)호의 i)목 또는 d)호에 따라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인의 거주지국에서 이 협약에 따른 세액의 결정에서 공제되는 지급액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비용으로 인식되는 경우(그러나 서비스 또는 유형의 자산에 대한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지급되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p>
--	--

## 〈표 Ⅲ-3〉의 계속

<p>3. a)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ill be entitled to benefits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an item of income derived from the other State, regardless of whether the resident is a qualified person, if the resident is engaged in the activ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ther than the business of making or managing investments for the resident's own account, unless these activities are banking, insurance or securities activities carried on by a bank, insurance company or registered securities dealer), and the income der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derived in connection with, or is incidental to, that trade or business.</p> <p>b) I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an item of income from a trade or business activity conducted by that resid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derives an item of income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rom a related person, the condi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considered to be satisfied with respect to such item only if the trade or business activity carried on by the resid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s substantial in relation to the trade or business activity carried on by the resident or such person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ether a trade or business activity is substantia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will be determined based on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p>	<p>3. a)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다른 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항목에 대해 거주자가 적격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일방체약국에서 능동적 상업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거주자의 자기계정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이 은행, 보험회사 또는 등록된 증권증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은행, 보험 또는 증권 활동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음)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러한 상업 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상업 또는 사업으로부터 소득항목이 발생하거나 타방체약국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득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업 또는 사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상업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상당하다면, a)호에서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목적으로 상업과 사업 활동이 상당한지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에 기반하여 판단된다.</p>
--	--

〈표 III-3〉의 계속

<p>3. c) For purposes of applying this paragraph, activities conducted by persons connected to a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conducted by such person. A person shall be connected to another if one possesses at least 50 per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other (or, in the case of a company, at least 50 per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or of the beneficial equity interest in the company) or another person possesses at least 50 per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or, in the case of a company, at least 50 per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or of the beneficial equity interest in the company) in each person. In any case,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nected to another if, based on all the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one has control of the other or bot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or persons.</p>	<p>3. c) 이 항의 적용 목적에서 한 인에 관련된 여러 인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그 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 인이 다른 인의 수익권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또는 회사의 경우 회사의 주식 또는 수익적 자본의 총 의결권과 가치의 50% 이상) 제3의 인이 각 인의 수익권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다면(또는 회사의 경우 회사의 주식 또는 수익적 자본의 총 의결권과 가치의 50% 이상), 그 인은 다른 인과 관련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에 기반하여 한 인이 다른 인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거나 둘 이상의 인이 동일 인 또는 인들의 지배권에 속해 있다면, 그 인은 다른 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된다.</p>
<p>4. I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neither a qualified pers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nor entitled to benefits with respect to an item of income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nevertheless, grant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or benefits with respect to a specific item of income, if it determines that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such person and the conduct of its operations did not have as one of its principal purposes the obtaining of benefits under this Convention.</p>	<p>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2항의 적격인도 아니면서 제3항의 소득항목과 관련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인의 설립, 취득 또는 보유와 사업의 수행이 이 협약의 혜택을 부여받기 위함이 그 주요 목적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이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특정 소득항목과 관련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p>

## 〈표 Ⅲ-3〉의 계속

<p>For purposes of this Article:</p> <p>a) the term “recognized stock exchange” means:</p> <p>i) the NASDAQ System owned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Inc. and any stock exchange registered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s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under the U.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p> <p>ii) stock exchanges of -----; and</p> <p>iii) any other stock exchang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p> <p>b) the term “principal class of shares” means the ordinary or common shares of the company, provided that such class of shares represents the majority of th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company. If no single class of ordinary or common shares represents the majority of the aggregat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company, the “principal class of shares” are those classes that in the aggregate represent a majority of the aggregat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company</p> <p>c) the term “disproportionate class of shares” means any class of shares of a company resident 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hat entitles the shareholder to disproportionately higher participation, through dividends, redemption payments or otherwise, in the earnings generated in the other State by particular assets or activities of the company; and</p>	<p>이 조의 목적으로</p> <p>a) “알려진 주식거래소”는 다음을 의미한다.</p> <p>i) NASA가 소유한 NASDAQ 시스템과 1934 증권거래법에 따라 US SEC에 등록된 주식거래소</p> <p>ii) xxx 거래소</p> <p>iii) 권한있는 당국간 합의된 여타 주식거래소</p> <p>b) “주된 종류의 주식”은 회사의 보통주로 이는 회사의 의결권과 가치의 과반을 나타내고 있다. 한 종류의 주식이 이를 나타내지 못할 때는 종류의 주식의 합계가 회사의 총 의결권과 가치의 과반을 나타내는 종류의 주식들을 “주된 종류의 주식”으로 본다.</p> <p>c) “차별주식”이란 배당, 상환금액 등의 조건을 통해 타방채약국에서 회사의 특정 자산 또는 행위에 의해 창출되는 이익에 대해 불균등하게 높은 참가의 권한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일방채약국의 법인 거주자의 종류 주식을 의미한다.</p>
---	--

〈표 III-3〉의 계속

<p>d) a company's "primary place of management and control" will be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it is a resident only if executive officers and senior management employees exercise day-to-day responsibility for more of the strategic, financial and operational policy decision making for the company (including its direct and indirect subsidiaries) in that State than in any other state and the staff of such persons conduct more of the day-to-day activities necessary for preparing and making those decisions in that State than in any other state.</p>	<p>d) 회사의 "중요한 관리 및 통제의 장소"란 집행관리자와 최고경영진이 다른 국가에서보다 일방체약국에서 회사(직·간접적인 종속회사를 포함)에 대해 일상적으로 전략, 재무 및 운영 정책을 결정하는 책무를 집행하고 이러한 인들의 직원들이 다른 국가에서보다 일방체약국에서 이러한 결정을 준비하고 결정하기 위한 필요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일방체약국에만 존재한다.</p>
---	---

주: 1) 제4조제2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a) 연금기금과 b)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또는 교육목적만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조직을 포함하고 있음

2) US모델조세협약 개정안(2015)

- 미국 재무성은 2015년 5월 20일 US모델조세협약을 개정하는 초안을 공개하여 현재 이에 대한 의견수렴 중에 있음<sup>70)</sup>
  - 미국 재무성은 국제조세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개정은 미국 세원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OECD BEPS 프로젝트 중 특히 Action 6 조약남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sup>71)</sup>
  - 이러한 개정내용에는 LOB규정 조항의 변경도 포함하고 있음
    - 요건 등의 충족시기 명시
    - 상장회사의 자회사에 세원잠식요건 적용
    - 세원잠식요건에 대상그룹 총수익 요건 적용 및 특별조세체계(special tax re-

70)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Releases Select Draft Provisions for Next U.S. Model Income Tax Treaty(Draft provisions address stateless income, corporate inversions and limitation on benefits), Press Center, 5/20/2015.

71) Ernst & Young, *US proposes major revisions to model tax treaty to counter base erosion*, International Tax Alert, 29 May 2015, p.1.

gime)의 고려

- 능동적 사업요건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인에 대해 사업요건을 적용
- 파생혜택요건 도입
- 재량적 구제시 거주자의 입증책임 부여

- 적격인 요건 등의 충족시기를 협약의 혜택이 적용될 때로 명확하게 규정함<sup>72)</sup>
  - 적격인, 파생혜택 충족시기를 협약의 혜택을 받을 때로 명확하게 규정함
  
- 상장회사의 자회사를 적격인으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세원잠식요건을 추가함<sup>73)</sup>
  - 기존에는 50% 이상의 의결권 및 가치를 상장회사 등이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소유 요건만 존재하였음
  - 자회사가(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적격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원잠식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존의 세원잠식요건이 아닌 아래의 개정된 세원잠식요건이 적용됨
  
- 세원잠식요건에 대상그룹(tested group)의 총수익 기준을 도입하고, 지급받는 대상자에 특별조세체계를 적용받는 인을 포함시킴<sup>74)</sup>
  - 기존에는 지급되는 총수익의 50% 미만 기준이 혜택대상 회사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상그룹(tested group)의 총수익의 50% 미만도 충족하여야 함
    - 대상그룹이란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의 거주자와 동일 체약국의 거주자인 중간소유자 및 그룹 구성인 간 손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연결조세제도나 이와 유사한 체계에서의 그 구성원을 의미함
      - 만약, 중간소유자가 없으면 대상그룹이 없음<sup>75)</sup>

72) Select Draft Provisions of the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New Article 22 (Limitation of Benefits) 1, 2, 2f), 4, 6h) May 20, 2015.

73) Select Draft Provisions of the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New Article 22 (Limitation of Benefits) 2d)ii), May 20, 2015.

74) Select Draft Provisions of the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New Article 22 (Limitation of Benefits) 2d)ii), 2f)ii), May 20, 2015.

75) Select Draft Provisions of the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New Article 22

- 기존에는 총수익의 지급을 받는 대상자를 협약상 적격인이 아닌 자만 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협약상 적격인이라도 특별조세체계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는 이에 포함됨
  - 특별조세체계란 소득 또는 수익 등에 낮은 유효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 규정, 행정실무 등을 의미함
  - 이자지급과 관련해서는 자본에 대한 가상공제를 포함함<sup>76)</sup>
  
- 능동적 사업요건에서 협약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주자는 관련인과 사업상 동일하거나 상호보완적인 수준에서만 관련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함<sup>77)</sup>
  -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그룹내부 자금조달법인 등은 더 이상 능동적 사업요건을 통해 관련 소득항목에 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함<sup>78)</sup>
    - 이러한 협약의 혜택이 배제되는 소득항목은 신설된 파생혜택에 부합하는 경우, 협약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회사가 적격인이 아니더라도 동등수혜자(equivalent beneficiaries) 기준의 소유/세원잠식요건을 충족하면 협약의 혜택을 부여함(통상적으로 '파생혜택' 요건)<sup>79)</sup>
  - 이는 체약국의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공제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더라도 동등수혜자에 해당하면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해 협약 이외의 체약국의 거주자를 고려하는 것임
  - 이 규정의 소유/세원잠식요건은 동등수혜자 및 적격중간소유자의 규정 이외에 지분율이 95%, 소유자의 수가 7인 이하인 내용만이 차이가 있음

---

(Limitation of Benefits) (g), May 20, 2015.

76) Select Draft Provisions of the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New Article 3 paragraph 1(l) Definition of "Special Tax Regime", l), May 20, 2015.

77) Select Draft Provisions of the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New Article 22 (Limitation of Benefits) 3c), May 20, 2015.

78) Ernst & Young(2015), p.5.

79) Select Draft Provisions of the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New Article 22 (Limitation of Benefits) 4, May 20, 2015.

- 즉, 다른 소유/세원잠식요건에서 소유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한정하고 일방체약국의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여기서는 동등수혜자로 변경되어 비거주자라도 소유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공제되는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소유자를 7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소유자가 너무 많을 경우 그 확인에 있어 행정상의 부담 때문임<sup>80)</sup>

- 동등수혜자는 실질적으로 협약의 혜택을 받을 요건이 충족되는 거주자를 의미함<sup>81)</sup>
  - 제3국과 일방체약국과의 포괄적 LOB규정이 포함된 조세조약에서 이를 충족하는 제3국가의 거주자 및 LOB규정이 조약에 없다면 이 협약상 LOB규정이 적용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제3국 거주자의 경우 동등수혜자에 해당함
  -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해 제3국의 거주자가 직접 소득을 지급받았더라도 일방체약국과의 협약에서 이 협약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동등수혜자에 해당함
  - 사업, 자본, 기타 소득에 대해 제3국의 거주자가 직접 소득을 지급받았더라도 일방체약국과의 협약에서 이 협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동등수혜자에 해당함
  - 동일체약국의 거주자로 적격인에 해당하는 경우
- 재량적 구제에서 거주자가 거주지국에 조세 관련성이 없음(non-tax nexus)을 입증하도록 요건을 추가함<sup>82)</sup>
  - 미국 재무성에서는 이는 기존의 실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다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시킨 것이지만 실질적인 조문 변경은 아니라고 밝힘<sup>83)</sup>

80) Michael J. Miller(2007), p.9.

81) Select Draft Provisions of the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New Article 22 (Limitation of Benefits) 6e), May 20, 2015.

82) Select Draft Provisions of the 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New Article 22 (Limitation of Benefits) 5, May 20, 2015.

83) Ernst & Young(2015), p.6.

## 2. 국제연합(United Nations)

-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UN모델조세협약(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UN모델)을 가지고 있음
- UN모델(2011)은 현행 OECD모델과 마찬가지로 조문상에서는 LOB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1조 적용대상 인(person covered)의 주석서에서 이를 기술하고 있음
  - Treaty shopping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는 기술된 예의 형태로 LOB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음<sup>84)</sup>
- UN모델의 LOB규정은 OECD모델, US모델과 유사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sup>85)</sup>
  - 개인, 정부기관, 상장법인(publicly traded test), 비영리단체, 소유/세원잠식(ownership/base erosion test), 능동적 사업(active business test), 조세회피의도를 고려한(일종의 bona fide) 재량적 구제를 포함하고 있음

〈표 Ⅲ-4〉 UN 모델조세조약(2011) 제1조의 주석 제20조

<p>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o derives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otherwise accorded to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only if such resident is a “qualified person” as defined in paragraph 2 and meets the other conditions of this Convention for the obtaining of such benefits.</p>	<p>1.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체약국의 거주자는 문단2에서 정의된 “적격인” 및 이 협약에 혜택을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체약국의 거주자가 받을 이 조약의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p>
---	--

84) 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1 Commentary 20

85) 상세한 내용의 차이는 ‘Ⅳ. 국제비교’를 참조. 각 요건에 대한 근거는 ‘1. 미국’ 및 ‘3. OECD’의 내용을 참조

## 〈표 Ⅲ-4〉의 계속

<p>2.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a qualified person for a fiscal year only if such resident is either:</p> <p>a) an individual;</p> <p>b) a qualified governmental entity;</p> <p>c) a company, if</p> <p>(i) the principal class of its shares is listed on a recognised stock exchange specified in subparagraph a) or b) of paragraph 6 and is regularly traded on one or more recognised stock exchanges, or</p> <p>(ii) at least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shares in the company is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five or fewer companies entitled to benefits under subdivision (i) of this subparagraph,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indirect ownership, each intermediate owner is a resident of either Contracting State;</p> <p>d) a charity or other tax-exempt entity,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pension trust or any other organization that is established exclusively to provide pension or other similar benefits,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person's beneficiaries, members or participants are individuals resident in either Contracting State; or</p> <p>e)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f:</p> <p>(i) on at least half the days of the fiscal year persons that are qualified persons by reason of subparagraph a), b) or d) or subdivision c) (i) of this paragraph own,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shares or other beneficial interests in the person, and</p>	<p>2. 계약국의 거주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적격인이 된다.</p> <p>a) 개인</p> <p>b) 적격정부기관</p> <p>c) 다음의 회사</p> <p>(i) 주된 종류의株式이 제6항의 a) 또는 b)목에서 규정된 알려진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p> <p>또는</p> <p>(ii) 5개 이하의 위 i)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간접적인 경우에는 중간소유자가 계약국의 거주자여야 함, 법인株式의 총의결권과 가치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간접적인 경우에는 중간소유자가 계약국의 거주자여야 함).</p> <p>d) 자선단체 또는 여타 면세기관, 연금신탁 또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설립된 여타 조직의 경우에는 그인의 수익자, 구성원 및 참여자의 50% 이상이 계약국의 거주자 개인인 경우</p> <p>또는</p> <p>e) 개인 이외의 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p>(i) 회계기간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이 항의 a)호, b)호, d)호 또는 c)의 (i)목 또는 d)호에 따른 적격인이 해당인의 총의결권과 가치의 50% 이상의株式이나 여타 수익권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음</p> <p>그리고</p>
---	--

〈표 Ⅲ-4〉의 계속

<p>(ii)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person's gross income for the taxable year is paid or accrued, directly or indirect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in the form of payments that are deductible for purposes of the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 the person's State of residence (but not including arm's length payment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for services or tangible property and payments in respect of financial obligations to a bank, provided that where such a bank is not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uch payment is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at bank located 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p>	<p>(ii) 인의 과세기간 총수익 중 50% 미만인 인의 직·간접적으로 양 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인의 거주지국에서 이 협약에 따른 세액의 결정에서 공제되는 지급액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비용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러나 서비스 또는 유형의 자산에 대한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지급되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금액과 은행이 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지급이 계약국 중 한 국가에 소재한 은행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면 은행에 대한 채무와 관련한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다.)</p>
<p>3. a)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ill be entitled to benefits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an item of income, derived from the other State, regardless of whether the resident is a qualified person, if the resident is actively carrying on busines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ther than the business of making or managing investments for the resident's own account, unless these activities are banking, insurance or securities activities carried on by a bank, insurance company or registered securities dealer), the income der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derived in connection with, or is incidental to, that business and that resident satisfies the other conditions of this Convention for the obtaining of such benefits.</p>	<p>3. a) 일방계약국의 거주자는 다른 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항목에 관해 거주자가 적격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일방계약국에서 능동적 사업을 수행하고(거주자의 자기계정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이 은행, 보험회사 또는 등록된 증권중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은행, 보험 또는 증권 활동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음) 타방계약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러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되며 이 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 〈표 Ⅲ-4〉의 계속

<p>3. b) If the resident or any of its associated enterprises carries on a business activit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gives rise to an item of income, subparagraph a) shall apply to such item only if the business activit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bstantial in relation to business carried on in the other State. Whether a business activity is substantial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will be determined based on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p> <p>c) In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is actively carrying on business in a Contracting State under subparagraph a), activities conducted by a partnership in which that person is a partner and activities conducted by persons connected to such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conducted by such person. A person shall be connected to another if one possesses at least 50 per 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other (or, in the case of a company, at least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or another person possesses,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50 per 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or, in the case of a company, at least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in each person. In any case,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nected to another if, based on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ne has control of the other or bot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or persons.</p>	<p>3. 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및 특수관계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사업활동으로부터 소득항목이 발생한다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되어 상당하다면, a)호가 적용된다. 이 항의 목적으로 사업활동이 상당한지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에 기반하여 판단된다.</p> <p>c) a)호에서 인이 체약국에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이 파트너인 파트너십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과 인과 관련된 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은 그 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이 체약국에서 사업인이 다른 인의 수익권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또는 회사의 경우 회사의 주식 또는 수익적 자본의 총 의결권과 가치의 50% 이상) 제3의 인이 각 인의 수익권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다면(또는 회사의 경우 회사의 주식 또는 수익적 자본의 총 의결권과 가치의 50% 이상), 그 인은 다른 인과 관련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에 기반하여 한 인이 다른 인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거나 둘 이상의 인이 동일 인 또는 인들의 지배권에 속해있다면, 그 인은 다른 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된다.</p>
--	--

〈표 III-4〉의 계속

<p>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if a company that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a company that controls such a company, has outstanding a class of shares</p> <p>a) which is subject to terms or other arrangements which entitle its holders to a portion of the income of the company der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is larger than the portion such holders would receive absent such terms or arrangements (“the disproportionate part of the income”); and</p> <p>b) 50 per cent or more of the voting power and value of which is owned by persons who are not qualified persons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the disproportionate part of the income.</p>	<p>4. 이 조의 이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p> <p>a) 이의 보유자에게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소득을 조건 또는 약정이 없었다면 받았을 부분보다 큰 부분을 부여하는 조건 또는 약정이 부여되고(“소득의 차별적 부분”)</p> <p>그리고</p> <p>b) 이 주식의 50% 이상의 의결권과 가치가 적격인이 아닌 인에 의해 소유된다면 이 협약의 혜택은 소득의 차별적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다.</p>
<p>5.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hat is neither a qualified pers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r entitled to benefits under paragraph 3 or 4 shall, nevertheless, be granted benefits of the Convention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determines that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such person and the conduct of its operations did not have as one of its principal purposes the obtaining of benefits under the Convention.</p>	<p>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2항의 적격인도 아니면서 제3항 또는 제4항과 관련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인의 설립, 취득 또는 보유와 사업의 수행이 이 협약의 혜택을 부여받기 위함이 그 주요 목적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이 협약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p>
<p>6.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recognised stock exchange” means:</p> <p>a) in State A …….;</p> <p>b) in State B …….; and</p> <p>c) any other stock exchange which the competent authorities agree to recognise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p>	<p>6. 이 조의 목적상, 알려진 주식거래소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p> <p>a) A국에서 …</p> <p>b) B국에서 … 그리고</p> <p>c) 권한있는 당국이 이 조의 목적상 알려졌다고 합의한 여타 주식 거래소</p>

### 3. OECD

#### 가. OECD의 BEPS 프로젝트<sup>86)</sup>

-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이란 국가 간의 세법상 차이와 부조화(gaps and mismatches in tax rules)를 악용하여, 경제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저세율 또는 비과세 지역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하는 조세전략을 말함
-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상호관련성이 증가되는 추세 속에 각국의 세법이 다국적 기업의 경영활동,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발맞추어 발전하지 못하였고, 각국의 세법상 차이는 다국적 기업의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전략에 남용됨
  - 특히 개발도상국은 다국적 기업에서 징수하는 법인세에 의존하는 바가 큰바, 국제적 조세회피 전략인 BEPS는 개발도상국에게 중대한 이슈로 작용함
-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약화시키는 BEPS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장치를 각국 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OECD와 G20은 2013년에 15개의 Action Plan을 채택함
  -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활동이 수행되고,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소득이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Action Plan의 주된 목적임
- 15개의 BEPS Action Plan 중 7개 항목에 대한 보고서는 2014년 9월에 발표되었으며, 나머지 8개 항목에 대한 보고서는 2015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임<sup>87)</sup>

86) OECD(<http://www.oecd.org/tax/beps-about.htm>)

87) 2014년 발표된 Action Plan과 2015년 발표될 예정인 Action Plan은 다음과 같음:

2014 Deliverable

- Action 1: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 Action 2: Neutralise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 Action 5: Counter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

- 2014년에 발표된 보고서는 중간보고서 형태로 BEPS에 대한 보다 일관성 있는 조치들을 담기 위해 2015년 결과물과 함께 통합되어 2015년 10월 개최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임

#### 나. BEPS Action 6: 2014 Deliverable<sup>88)</sup>

##### 1) Action 6 보고서의 개요<sup>89)</sup>

- OECD는 2014년에 15개의 BEPS Action Plan 중 7개 항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Action 6 는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Action 6 보고서”)로 발표됨
  
- Action 6 보고서는 Action Plan의 주된 목적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sup>90)</sup>

- 
- Action 6: Prevent Treaty Abuse
  - Action 8: Assure that Transfer Pricing Outcomes are in Line with Value Creation/ Intangibles
  - Action 13: Re-examin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Action 15: Develop a Multilateral Instrument
- 2015 Deliverable
- Action 3: Strengthen CFC Rules
  - Action 4: Limit Base Erosion via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 Action 7: Prevent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 Status
  - Action 9: Assure that Transfer Pricing Outcomes are in Line with Value Creation/Risks and Capital
  - Action 10: Assure that Transfer Pricing Outcomes are in Line with Value Creation/Other High-Risk Transactions
  - Action 11: Establish Methodologies to Collect and Analyse Data on BEPS and the Actions to Address It
  - Action 12: Require Taxpayers to Disclose their Aggressive Tax Planning Arrangements
  - Action 14: Mak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

88) OECD,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2014. (<http://dx.doi.org/10.1787/9789264219120-en>)

89) OECD(2014), pp.9-13.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델조세조약 규정을 개발하고, 국내 조세규정을 설계할 것을 적절히 권고한다. 조세조약이 이중비과세의 발생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수행될 것이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조세정책상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혼성체(hybrid)에 대한 작업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sup>91)</sup>

- Action 6 보고서에서는 조세조약 남용—특히 treaty shopping—을 BEPS의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보고 조세조약 남용 대응방안을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업무 영역(section)으로 분류함
  - A. 부적절한 상황에서의 조약 혜택 부여 방지를 위한 내국 세법 규정의 설계와 관련된 모델조세조약 및 권고안의 개발
  - B. 조세조약이 이중비과세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명확화
  - C.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 전 고려해야 할 조세정책 관련 사항의 확인
  
- 먼저 Section A와 관련하여서는 ‘① 조세조약 규정상의 조약 혜택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경우’와 ‘② 조세조약상의 혜택규정을 이용하여 내국 세법상 남용 방지규정을 회피하는 경우’의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각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 ① 첫째, 조세조약 규정상의 조약 혜택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경우로 treaty shopping 대응과 기타 조약 남용 경우를 구분하여 권고안을 제시함
    - treaty shopping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접근방안을 제시함:
      - (a) 조세조약의 명칭(title)과 전문(前文, preamble)에 해당 조세조약은 treaty shopping을 포함해 탈세와 조세회피를 통한 이중비과세 또는 조세경감 기회를 방지한다는 분명한 문구 포함할 것;
      - (b)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조세조약이 포함하는 LOB규정과 같이 구체적인 조약 남용 방지규정(specific anti-abuse rule)을 도입할 것;

90) OECD(2014), p.17, 문단 2

91) OECD(<http://www.oecd.org/tax/beps-2014-deliverables.htm>), 국문번역 보고서에서 인용

(c) LOB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conduit financing 계약)를 고려하여 보다 일반적인 납용방지 규정인 ‘주된 목적 시험규정(principal purpose test: PPT 규정)’을 도입할 것

– 기타 납용방지와 관련하여서는 treaty shopping 외의 특정 조세조약 규정을 이용한 조약 납용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안을 권고하며, 다음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a) 배당 이전 거래(dividend transfer transactions) 문제;

(b)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이전에 대하여 원천지국 과세 면제 문제;

(c) 이중 거주자에 대한 문제;

(d) 제3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에 납용에 대한 문제

② Section A에서 다루는 두 번째 경우는 조세조약상의 혜택규정을 이용하여 내국 세법상 납용 방지규정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조세조약이 의도치 않게 내국 세법상의 납용 방지규정의 적용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적절한 내국 세법규정 설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인데, 다른 BEPS Action Plan의 결과물<sup>92)</sup>에도 영향을 받을 것임

□ 또한 treaty shopping에 대한 상기의 세 가지 접근법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방침 기준으로 BEPS 참여국이 선택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i) 조세조약상 PPT규정의 단독 도입, (ii) LOB규정과 PPT규정의 혼합 도입, 또는 (iii) LOB규정 도입과 내국법상 도관 방지규정(또는 사법상 원칙) 도입을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함<sup>93)</sup>

□ Section B에서는 “조세조약은 이중비과세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의도되지 않았다 (tax treaties are not intended to be used to generate double non-taxation)”는 분명한 문구를 OECD모델 조세조약의 제목과 전문에 포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92) OECD(2014), p.13. 다른 Action Plan이란 구체적으로 Action 2 (Neutralise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ction 3 (Strengthen CFC rules), Action 4 (Limit base erosion via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그리고 Transfer Pricing을 다루는 Actions 8, 9, 10을 말함

93) OECD(2014), p.23. 문단 14

그러한 접근이 국제공법상(international public law) 조세조약 해석과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 Section C는 조세조약 체결 전 고려해야 하는 주요 조세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저세율 또는 비과세(non-tax) 지역과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국가들과의 기존 조세조약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한편 Action 6 보고서상의 LOB/PPT규정은 ‘초안(draft)’ 형태로 OECD모델 조세조약 및 주석서에 반영될 정확한 내용과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CIV”)과 비집합투자기구(“non-CIV”)에 대한 조약 혜택 부여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임

〈표 III-5〉 Action 6보고서의 개요

Section	주요 내용	대응 방안
A	부적절한 상황에서의 조약 혜택 부여 방지를 위한 내국 세법 규정의 설계와 관련된 모델조세 조약 및 권고안의 개발	1. 조세조약 규정상의 조약 혜택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Treaty shopping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조약 제목과 전문에 ‘이중비과세’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문구 포함</li> <li>(b) LOB규정과 같이 구체적인 조세조약 방지규정 도입</li> <li>(c) LOB규정을 보완하는 PPT규정 도입</li> </ul> </li> <li>② 기타 조약남용 대응(조세조약상 특정 규정과 관련된 조약남용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배당 이전 거래 문제</li> <li>(b)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관련 원천지국 과세면제 문제</li> <li>(c) 이중 거주자에 대한 문제</li> <li>(d) 제3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에 남용에 대한 문제</li> </ul> </li> </ul> 2. 조세조약상의 혜택규정을 이용하여 내국 세법상 남용 방지규정을 회피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조약이 의도치 않게 내국 세법상의 남용 방지규정의 적용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ul>

〈표 Ⅲ-5〉의 계속

Section	주요 내용	대응 방안
B	조세조약이 이중비과세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명문화	“조세조약은 이중비과세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의도되지 않았다(tax treaties are not intended to be used to generate double non-taxation)”는 분명한 문구를 OECD모델 조세조약의 제목과 전문에 포함
C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 전 고려해야 할 조세정책 관련 사항의 확인	저세율 또는 비과세(non-tax) 지역과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국가들과의 기존 조세조약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결정에 도움이 될 정책적 고려사항 제시

자료: OECD(2014), pp.9-15.

2) Action 6 보고서의 LOB규정<sup>94)</sup>

- LOB규정은 treaty shopping에 특정된 남용방지 규정으로 특정 단체의 법적 성격 (legal nature), 소유구조(ownership), 일반적 수행 활동 등을 기준으로 조약 혜택 향유자격을 판단하며, 주로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포함되어 있고 일본과 인도의 일부 조세조약에서도 발견됨
- LOB규정은 ‘혜택의 자격(Entitlement to benefits)’이라는 조항 내의 총 7개 항 중 제 1~6항에 해당함
  - 제1항은 적용 범위, 제2항은 적격인(qualified person), 제3항은 능동적 사업의 수행(active conduct of a business), 제4항은 파생혜택(derivative benefits), 제5항은 재량적 구제(discretionary relief), 제6항은 용어의 정의에 대해 기술함
  - 동 조항 제7항은 LOB규정을 보완하는 PPT 규정에 대해 기술함

94) OECD(2014), pp.24-66. 본 보고서는 LOB규정 도입의 실익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OECD(2014) 보고서의 내용 중 LOB 및 PPT규정 관련 부분에 한하여 주요 내용을 재구성함

### 제1항: LOB규정 적용의 범위<sup>95)</sup>

- LOB규정 제1항은 본조 제3, 4, 5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서 정의하는 적격인(qualified person)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제한함
  - 제1항은 LOB규정의 적용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LOB규정이 조세조약상의 모든 소득과 이중과세 제거 및 무차별 원칙에도 적용됨을 기술하고 있음<sup>96)</sup>
    - 단, OECD모델 조세조약의 규정 중 제4조 제3항, 제9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등 ‘거주자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혜택이 부여되는 조항까지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LOB규정은 어떤 의미로도 조약 혜택 부여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며, 조약 혜택의 부여를 위해서는 LOB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조항의 요건(예: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요건 등) 역시 만족시켜야 함

### 제2항: 적격인(qualified person)<sup>97)</sup>

- 제2항은 조약 혜택이 부여되는 ‘적격인’에 대하여 정의하며, 각각 다른 적격인 요건에 대해 기술한 6개의 호(subparagraph)로 구성됨. 본 항은 자동발효(self-executing) 조항으로, 적격인 판단에 대하여 관할 당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지 않음
- 제a)호는 개인(individual), 제b)호는 정부(governments)와 관련 기관을 적격인으로 정의함
- 제c)호는 상장법인 또는 단체(publicly-traded companies and entities)와 그 자법인을 적격인으로 정의함
  - 상장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수에 의해 소유되기(widely held) 때문에 treaty shopping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95) OECD(2014), p.32. LOB규정에 대한 주석(Commentary) 문단 4-6

96) OECD모델 조세조약의 제6조에서 제21조까지의 소득, 제23조의 이중과세 제거, 제24조의 무차별 조항 등 조세조약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임

97) OECD(2014), LOB규정 주석 문단 7-43

- 주된 주식과 차별주식(disproportionate class of shares)이 인가된 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조건 외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적격인으로 분류됨:
    - (i) 상장법인의 주식이 주로 동 법인의 거주지국 거래소에서 거래될 것, 또는
    - (ii) 해당 상장법인의 주된 관리장소(primary place of management and control)가 그 법인의 거주지국에 소재할 것
  - 상기의 추가 요건은 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되는 거래소와 상장법인의 경영활동이 조약 혜택을 부여할 정도로 충분한 관계가 있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 거래소는 체약 당사국의 인가된 거래소가 될 수 있음
  - 자법인이 적격인에 해당하는 5개 이하의 상장법인에 의해서 소유되는 경우 자회사도 적격인에 해당하나, 간접소유일 경우 중간지배회사 모두가 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함
    -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소유회사의 체약국 거주자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서 생략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음<sup>98)</sup>
- 제d)호는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s)와 연금기금(pension funds)을 적격인으로 정의함
- 제d)호 제i)목에서 나열되는 비영리단체는 전적으로 자선, 과학, 예술, 문화, 교육 등의 사회적 기능을 위해 설립·운영되며 거주지국에서 과세면제되는 단체로서, 해당 비영리단체의 수혜자 또는 구성원이 조약 체결국의 거주지인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조약 혜택이 부여됨
  - 연금기금이 조약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해당 기금의 수익적 지분(beneficial interest)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여야 함
    - 다만, 일부 국가들은 50% 소유 요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연금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혜택의 권한이 있는 연금신탁의 자금이 구성 및 운영되는 ‘모태펀드(funds of fund)’의 경우 모태펀드의 사실상 모든 소득이 혜택의 권한이 있는 연금신탁에 대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혜택의 권한이 부여됨

98) OECD(2014), LOB규정 주식 문단 19

- 제e)호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모든 법적 실체에 적용하는 조약 혜택의 자격을 얻기 위한 추가 방법을 다루며, 크게 소유와 세원잠식 요건(ownership/base erosion test)을 기준으로 조약 혜택 권한에 대해 판단함
- 소유 요건: 과세기간 중 절반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본 조의 제a)항(개인), b)항(정부기관), c)항 i)목(상장법인), d)항(비영리단체/연금기금)에 따른 적격인의 총 의결권 및 가치의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여야 함
    - 간접소유일 경우 중간소유자 모두가 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함.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소유회사의 체약국 거주자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서 생략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음<sup>99)</sup>
    - 소유 요건은 일반적으로 사기업(private companies)과 관련된 경우가 많을 것이나 신탁의 경우에도 적용됨
    - 신탁의 경우 ‘지분(shares)’은 수혜자의 ‘수익적 지분(beneficial interest)’을 의미하며, 지분을 계산은 수혜자의 수탁 지분(actuarial interest)을 따름
    - 만일, 수혜자의 수탁지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격인에 해당하지 않음
  - 세원잠식 요건: 해당 인(person)의 소득의 50% 이상이 본 조의 제a)항(개인), b)항(정부기관), c)항 i)목(상장법인), d)항(비영리단체/연금기금)에 따른 적격인이 아닌 자에게 세무상 비용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지급 또는 발생되지 말아야 함
    - 세무상 비용에는 일반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이나 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상거래 지급금(arm's length payments), 지급 대상이 없는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는 포함하지 않음
    - 신탁 분배금의 경우 신탁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범위 내에서 세원잠식 비용에 해당됨
    - 한편, 소득지급자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급이라 하더라도 원천지국에서 전부 과세되는 경우(subjected to full taxation), 세원잠식 비용으로 보지 않음
  - 제e)호에서 과세기간이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과세기간을 뜻하며, 제e)호의 소유와 세원잠식 요건은 이러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sup>100)</sup>

99) OECD(2014), LOB규정 주식 문단 28

- 제f)호는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CIV)의 적격인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조항으로, 조세조약에서의 CIV 취급방식과 체약당사국에서의 CIV 사용 및 취급방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작성(또는 삭제)되어야 함
  - CIV는 그 특성상 제2호(적격인) 또는 제3호(능동적 사업의 수행)의 규정하의 적격인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CIV에 대한 세부규정이 필요할 수 있음. LOB 규정의 적격인 요건에 비추어 CIV는 많은 경우 다음의 특성을 가짐:
    - CIV 수익지분은 다수에 의해 소유되지만 공개거래되지 않음
    - CIV 수익지분은 제3국의 거주자에 의해 소유됨
    - CIV의 소득배분은 소득공제(deductible payments)가 가능함
    - CIV는 제3호의 능동적 사업의 수행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사용됨
  -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이하 “OECD 주석서”)101)는 CIV에 대한 세부 규정이 LOB규정의 제2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규정이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음
  - LOB규정에 CIV에 대한 세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 조 제6항에 정의된 동등수혜자(equivalent beneficiaries)에 대한 정의가 반영되어야 함
  - 조약 체결국들은 체결당사국들에서 사용되는 CIV의 경제적 특성과 treaty shopping에 사용될 가능성을 분석하여 조세조약상 CIV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음
    - 체약국 쌍방의 CIV 과세취급이 CIV가 treaty shopping에 악용될 소지가 없다는 데 합의하는 경우, 양국에 설립된 CIV에 대해 조약 혜택 부여를 명문화 하고, LOB규정에 적격인으로 명시하는 방안
    - 체약국의 CIV에 대한 과세취급이 직접 투자하였다면 조약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는 제3국의 거주자에게 조약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경우, CIV의 수익지분 중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나 동등수혜자가 소유하는 비율에 한하여 적격인으로 간주하는 방안

100) OECD(2014), LOB규정 주석 문단 26

101) 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OECD 주석서 문단 6.8-6.34는 조세조약상 CIV 취급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조세조약에 포함할 수 있는 관련 조항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계약국에 설립된 CIV의 수익적 지분 대부분(majority)이 해당 계약국의 거주자에게 소유되는 경우, 그러한 CIV는 적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방안
- CIV 투자자 중 적격투자자(treaty eligible)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treaty shopping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CIV를 적격인으로 보는 방안. 적격 투자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조약 체결국 간에 협의할 수 있음

### 제3항: 능동적 사업의 수행(active conduct of a business)<sup>102)</sup>

- 제3항은 제2항에서 적격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방 계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계약국으로부터 획득한 소득이 능동적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경우 조약 혜택을 부여하는 대체적 요건을 다루는 조항임
  - 본 항은 법적 실체인 일방 계약국의 거주자가 그 거주지국에서 (특수관계자의 사업 수행을 포함한) 능동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그러한 사업활동과 실질적으로 연관되거나 부수되는 소득을 타방 계약국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제2항의 적격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treaty shopping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조약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
    - 단, 은행, 보험, 증권거래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는 투자나 투자관리는 능동적 사업으로 보지 않음
    - ‘사업(business)’에 대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을 통해 중대한 경영 및 운영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함

### 제4항: 파생혜택(derivative benefits)

- 제4항의 파생혜택 요건은 개별 소득항목에 적용되는 것이나, 잠재적으로 모든 조약 혜택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크게 동등수혜자(equivalent beneficiaries)의 소유 요건 (ownership test)과 세원잠식 요건(base erosion test)을 만족해야 함

102) OECD(2014), LOB규정에 대한 주석 문단 44-61

- 소유 요건: 직접 투자하였다면 최소한 해당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7인 이하의 동등수혜자가 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지분 95%와 차별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여야 함
  - 간접 소유의 경우 중간소유자 모두는 동등수혜자여야 함
- 세원잠식 요건: 특정 회사 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세무상 비용으로 동등수혜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발생해야 함
  - 세무상 비용에는 일반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이나 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상거래 지급금(arm's length payments), 지급 대상이 없는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는 포함하지 않음
  - 신탁 분배금의 경우 신탁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범위 내에서 세원잠식 비용에 해당됨
  - 한편, 소득지급자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급이라 하더라도 원천지국에서 전부 과세되는 경우(subjected to full taxation), 세원잠식 비용으로 보지 않음

**제5항: 재량적 구제(discretionary relief)<sup>103)</sup>**

- 일방 체결국의 거주자가 본 조 전항에 따라 조약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타방 체결국의 관할 당국은 그 일방 체결국의 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조약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이때 관할 당국은 해당 거주자 지위의 설립, 획득, 유지와 그 운영방식 등의 주된 목적이 조약 혜택을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조약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103) OECD(2014), LOB규정에 대한 주석 문단 62-68

3) Action 6 보고서의 PPT규정<sup>104)</sup>

- PPT규정은 LOB규정과 같은 조항인 ‘혜택의 자격(Entitlement to benefits)’ 제7항에서 기술되며, 상세한 LOB규정(동조 제1항~제6항)이 다루지 못하는 조약남용(예: 도관금융계약 등) 사례에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PPT규정은 OECD 주석서 제1조<sup>105)</sup>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거래나 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을 부여 받기 위함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약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약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조세조약 규정에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임

---

104) OECD(2014), pp.66-74.

105) 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관련 주석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문단 9.5 It is important to note, however, that it should not be lightly assumed that a taxpayer is entering into the type of abusive transactions referred to above. A guiding principle is that the benefits of a double taxation convention should not be available where a main purpose for entering into certain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was to secure a more favourable tax position and obtaining that more favourable treatmen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문단 22 Other forms of abuse of tax treaties (e.g. the use of a base company) and possible ways to deal with them, including “substance-over-form”, “economic substance” and general anti-abuse rules have also been analysed, particularly as concerns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rules conflict with tax treaties, which is the second question mentioned in paragraph 9.1 above.

문단 22.1 Such rules are part of the basic domestic rules set by domestic tax laws for determining which facts give rise to a tax liability; these rules are not addressed in tax treaties and are therefore not affected by them. Thus, as a general rule and having regard to paragraph 9.5, there will be no conflict. For example, 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referred to in paragraph 22 results in a recharacterisation of income or in a redetermination of the taxpayer who is considered to derive such income,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ll be applied taking into account these changes.

문단 22.2 Whilst these rules do not conflict with tax conventions, there is agreement that member countries should carefully observe the specific obligations enshrined in tax treaties to relieve double taxation as long as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the treaties are being abused.

- PPT규정은 상세한 LOB규정을 보완하되 LOB규정의 범위와 적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LOB규정의 제1호에서 제6호에 따라 혜택이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7호의 PPT규정에 의해 혜택이 제한되지 않는 것은 아님
- 특정 거래나 계약의 주된 목적은 그 거래나 계약의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그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임이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어야 PPT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 또한 조약 혜택 부여가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면 PPT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PPT규정 적용을 위해 조약 혜택이 특정 거래나 계약의 유일한 혹은 지배적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임
-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PPT규정의 도입이 어려울 수 있음. 이 경우 ‘도관계약(conduit arrangement)’을 통한 treaty shopping 방지를 위해 LOB규정을 보완하는 보다 범위가 좁은 PPT규정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완화된 PPT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도관계약’의 일부로서 수취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약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으며, ‘도관계약’에 대한 다음의 정의를 조세조약상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sup>106)</sup>

“Conduit arrangement”는 거래 혹은 일련의 거래들로서 다음에 해당한다.

- a)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취하나 그 소득의 모든 혹은 실질적으로 모든 금액을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도 아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 그리고 만일 그 소득을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직접 수취한다면 이들이 거주자로 있는 국가와 그 소득이 발생한 타방체약국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협약이 부여하는, 이 협약이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동일하거나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에게 (언제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
- b) 이 협약에 따라 증가된 혜택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 중 하나로 하는 거래

106) OECD(2014), p.74. 문단 15의 예시

〈표 III-6〉 BEPS Action 6 보고서의 LOB/PPT규정 요약

조항	주요내용
제1항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B규정은 조세조약상 모든 개별 소득과 이중과세 제거 및 무차별원칙에도 적용됨(단, OECD모델 조세조약 규정 중 거주자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혜택이 부여되는 일부 조항은 LOB규정 적용 제외)</li> </ul>
제2항 적격인 (qualified per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약 혜택이 부여되는 '적격인'에 대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호 개인</li> <li>- b)호 정부와 관련 기관</li> <li>- c)호 상장법인(과 그 자회사): 주로 거래되는 거래소가 거주지국에 소재하거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거주지국에 소재하여야 함</li> <li>- d)호 자선단체와 연금기금: 연금기금의 경우 수익지분 소유자의 50%가 체약국 거주자여야 함</li> <li>- e)호 소유/세원잠식 요건: '적격인'의 직간접 소유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소득의 50% 이상을 '적격인'이 아닌 자에게 세무상 비용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li> <li>- f)호 CIV: 체약국에서의 CIV사용 방식과 과세취급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포함 또는 생략함</li> </ul> </li> </ul>
제3항 능동적 사업의 수행 (active conduct of a 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항의 적격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거주지국에서 능동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취하는 소득이 그러한 능동적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경우 조약의 혜택이 부여됨</li> </ul>
제4항 파생혜택 (derivative benef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 요건과 세원잠식 요건을 만족하는 동등수혜자에게도 조약의 혜택이 부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 요건: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지분의 95% 이상 직간접 소유</li> <li>- 세원잠식 요건: 소득의 50% 이상을 동등수혜자가 아닌 자에게 세무상 비용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li> </ul> </li> </ul>
제5항 재량적 구제 (discretionary reli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B규정으로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체약국 관할 당국에 조약 혜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당국은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조약 혜택 부여를 할 수 있음</li> </ul>
제6항 정의(defin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li> </ul>
제7항 PPT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B규정(동조 제1항~제6항)이 다루지 못하는 조약남용(예: 도관 금융계약 등) 사례에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li> <li>• '특정 거래나 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을 부여받기 위함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약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 조약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약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조세조약 규정에 반영한 것임</li> </ul>

자료: OECD(2014), pp.24-74.

〈표 III-7〉 BEPS Action 6 보고서의 LOB/PPT규정 전문

원문	국문 번역본
<p>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entitled to a benefit that would otherwise be accorded by this Convention (other than a benefit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4, paragraph 2 of Article 9 or Article 25), unless such resident is a “qualified person”, as defined in paragraph 2, at the time that the benefit would be accorded.</p>	<p>1. 본 조항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 체약국의 거주자는 혜택이 부여되는 시점에 제 2항 에서 정의하는 “적격자(qualified person)”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에서 부여하는 혜택(제4조의 제3항, 제9조 혹은 제25조의 제2항에 따른 혜택 제외)을 받을 수 없다.</p>
<p>2.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a qualified person at a time when a benefit would otherwise be accorded by the Convention if, at that time, the resident is:</p> <p>a) an individual;</p> <p>b)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or a person that is wholly-owned by such State,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p> <p>c) a company or other entity, if, throughout the taxable period that includes that time</p> <p>i) the principal class of its shares (and any disproportionate class of shares) is regularly traded on one or more recognised stock exchanges, and either:</p> <p>A) its principal class of shares is primarily traded on one or more recognised stock exchanges loc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or entity is a resident; or</p> <p>B) the company’s or entity’s primary place of management and control is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it is a resident; or</p>	<p>2.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에서 혜택이 부여되는 시점에 아래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점에 적격자가 된다.</p> <p>a) 개인</p> <p>b)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체약국, 정치적 하위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완전히 소유하는 사람</p> <p>c) 해당 시점을 포함하는 과세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 혹은 기타 단체(entity)</p> <p>i) 회사 혹은 기타 단체의 주된 종류의 주식(principal class of shares)이 하나 이상의 인가된 증권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A) 회사 혹은 기타 단체의 주된 종류의 주식(principal class of shares)이 그 회사 혹은 기타 단체가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의 하나 이상의 인가된 증권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는 경우</p> <p>B) 회사 혹은 기타 단체의 주된 운영 및 통제가 그 회사 혹은 기타 단체가 거주자로 있는 체약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p>

## 〈표 Ⅲ-7〉의 계속

원문	국문 번역본
<p>ii) at least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shares (and at least 50 per cent of any disproportionate class of shares) in the company or entity is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five or fewer companies or entities entitled to benefits under subdivision i) of this subparagraph,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indirect ownership, each intermediate owner is a resident of either Contracting State];</p> <p>d)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that</p> <p>i) is a [list of the relevant non-profit organisations found in each Contracting State],</p> <p>ii) was constituted and is operated exclusively to administer or provide pension or other similar benefits, provided that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s in that person are owned by individuals resident in either Contracting State, or</p> <p>iii) was constituted and is operated to invest funds for the benefit of persons referred to in subdivision ii), provided that substantially all the income of that person is derived from investments made for the benefit of these persons;</p>	<p>ii) 회사 혹은 기타 단체의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의 최소 50%(및 차별주식(disproportionate class of shares)의 최소 50%)을 본 호의 세부사항 i)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섯 혹은 그 이하의 회사 혹은 단체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간접적 소유의 경우, 각각의 중간 소유주는 어느 한 계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함)</p> <p>d)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이 아닌 사람(person)</p> <p>i) 각 계약국에 설립된 관련 비영리 조직</p> <p>ii) 온전히 연금이나 기타 유사 혜택을 제공, 관리하기 위해 형성, 운영되는 사람. 단, 그 사람에게 대한 수익적 이익의 50% 이상은 어느 한 계약국에 거주하는 개인들에 의해 소유된다.</p> <p>iii) 세부사항 ii)에 언급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기 위하여 형성, 운영되는 사람. 단, 그 사람이 수취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득은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부터 발생한다.</p>

〈표 III-7〉의 계속

원문	국문 번역본
<p>e)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f</p> <p>i) on at least half the days of the taxable period that includes that time,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that ar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under subparagraph a), b) or d), or subdivision i) of subparagraph c), of this paragraph own, directly or indirectly, shares representing at least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ing power and value (and at least 50 per cent of any disproportionate class of shares) of the person,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indirect ownership, each intermediate owner is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p> <p>ii)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person's gross income, as determined in the person's Contracting State of residence, for the taxable period that includes that time is paid or accrued, directly or indirect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under subparagraph a), b) or d), or subdivision i) of subparagraph c), of this paragraph in the form of payments that are deductible for purposes of the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 the person's Contracting State of residence (but not including arm's length payment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for services or tangible property);</p>	<p>e)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이 아닌 사람(person)</p> <p>i) 해당 시점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의 최소 반절 동안, 사람의 총 의결권과 가치의 최소 50%(및 차별주식의 최소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동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본 항의 a), b), d)호 혹은 c)호의 세부 규정 i)에 따라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간접적 소유의 경우, 각각의 중간소유주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함)</p> <p>ii) 해당 시점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에 있어, 사람의 거주 체약국에서 결정된 사람의 총 소득의 50% 이하가 본 항의 a), b), d) 호, 혹은 c)호의 세부 규정 i)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세금에 대해 사람의 거주 체약국에서 공제 가능한 지불의 형태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급되거나 발생하는 경우(용역이나 유형자산에 대한 일상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정한 지급(payment)은 제외)</p>

## 〈표 Ⅲ-7〉의 계속

원문	국문 번역본
<p>f) [possible provision o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Footnote 1:] This subparagraph should be drafted (or omitted) based on how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re treated in the Convention and are used and treated in each Contracting State: see the Commentary on the subparagraph and paragraphs 6.4 to 6.38 of the Commentary on Article 1.]</p>	<p>f)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에 대한 규정]</p>
<p>3. a)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ill be entitled to benefits of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an item of income der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regardless of whether the resident is a qualified person, if the resident is engaged in the active conduct of a business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e business of making or managing investments for the resident's own account, unless these activities are banking, insurance or securities activities carried on by a bank or [list financial institutions similar to banks that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to treat as such], insurance enterprise or registered securities dealer respectively), and the income der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derived in connection with, or is incidental to, that business.</p>	<p>3. a) 거주자의 적격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체약국 내에서 활발한 사업 수행에 관여하고 있으며(각각 은행, [혹은 양 체약국이 은행으로 취급할 것에 동의하는 은행과 유사한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록증권회사(registered securities dealer)에 의한 은행, 보험, 증권 업무가 아닌 한 거주자의 개인 계좌를 위한 투자 및 운용 사업은 제외함)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부수적이라면 그 거주자는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표 III-7〉의 계속

원문	국문 번역본
<p>b) I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an item of income from a business activity conducted by that resid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derives an item of income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rom an associated enterprise, the condi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considered to be satisfied with respect to such item only if the business activity carried on by the resid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s substantial in relation to the business activity carried on by the resident or associated enterpris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ether a business activity is substantia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will be determined based on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p> <p>c) For purposes of applying this paragraph, activities conducted by persons connected to a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conducted by such person. A person shall be connected to another if one possesses at least 50 per 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other (or, in the case of a company, at least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e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or of the beneficial equity interest in the company) or another person possesses at least 50 per 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 (or, in the case of a company, at least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or of the beneficial equity interest in the company) in each person. In any case,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nected to another if, based on all the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one has control of the other or bot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or persons.</p>	<p>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거나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관련 기업 (associated enterprise)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a)호에 기술된 조건은 거주자가 상기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거주자 혹은 관련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사업활동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위의 소득에 대하여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항의 목적상 사업 활동의 중요성 여부는 모든 사실 및 정황에 근거하여 결정된다.</p> <p>c) 본 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람과 연결된 인이 수행하는 활동은 그 인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최소 50%의 수익적 이익을 소유하거나(법인의 경우, 법인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 또는 법인에 대한 수익적 지분의 최소 50%) 상대방이 각각에 대해 최소 50%의 수익적 이익을 소유할 때(법인의 경우, 법인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 또는 법인에 대한 수익적 지분의 최소 50%), 그 인은 상대방과 연결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에 근거할 때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거나 양쪽이 공동된 인(들)의 통제를 받는다면 그 인은 상대방과 연결된다고 간주된다.</p>

〈표 Ⅲ-7〉의 계속

원문	국문 번역본
<p>4. A company that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also be entitled to a benefit that would otherwise be accorded by this Convention if, at the time when that benefit would be accorded:</p> <p>a) at least 95 per cent of the aggregate voting power and value of its shares (and at least 50 per cent of any disproportionate class of shares) is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seven or fewer persons that are equivalent beneficiarie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indirect ownership, each intermediate owner is itself an equivalent beneficiary, and</p> <p>b)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company's gross income, as determined in the company's State of residence, for the taxable period that includes that time, is paid or accrued, directly or indirectly, to persons who are not equivalent beneficiaries, in the form of payments (but not including arm's length payment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for services or tangible property) that are deductibl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 the company's State of residence.</p>	<p>4.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혜택이 부여되는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협약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a)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의 최소 95%를 동등한 수익자(equivalent beneficiary)인 7인 그 이하의 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간접적 소유의 경우 각각의 중간소유주는 스스로가 동등한 수익자임)</p> <p>b) 해당 시점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에 있어 회사의 거주국가에서 결정된 회사 총소득의 50% 이하가 이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세금 목적상 회사의 거주 국가에서 공제 가능한 지불의 형태(용역이나 유형자산에 대한 일상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정한 지급은 제외)로 동등한 수익자가 아닌 이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급되거나 발생하는 경우</p>

〈표 Ⅲ-7〉의 계속

원문	국문 번역본
<p>5. I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not entitled, under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o all benefits provided under this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that would otherwise have granted benefits to which that resident is not entitled shall nevertheless treat that resident as being entitled to these benefits, or benefits with respect to a specific item of income or capital, if such competent authority, upon request from that resident and after consideration of the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determines that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the resident and the conduct of its operations did not have as one of its principal purposes the obtaining of benefits under this Conven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to which the request has been made will consul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before rejecting a request made under this paragraph by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p>	<p>5.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 조항의 상기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거주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혜택을 부여하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설립, 인수 혹은 유지와 사업 수행이 이 협약의 혜택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 중의 하나로 삼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면, 권한있는 당국은 그 거주자가 이러한 혜택 혹은 특정 소득 및 자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요청을 받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본 항에 따라 생성한 요청을 기각하기 이전에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할 것이다.</p>
<p>6. For purposes of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 the term “recognised stock exchange” means:  i) [list of stock exchanges agreed to at the time of signature]; and  ii) any other stock exchang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p>	<p>6. 본 조항의 상기 규정에서,  a) “인가된 증권거래소”는 다음을 의미한다.  i) [서명 시점에 합의된 증권거래소]  ii) 체약국들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한 그 외의 증권거래소</p>

## 〈표 Ⅲ-7〉의 계속

원문	국문 번역본
<p>b) the term “principal class of shares” means the ordinary or common shares of the company, provided that such class of shares represents the majority of th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company. If no single class of ordinary or common shares represents the majority of the aggregat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company, the “principal class of shares” are those classes that in the aggregate represent a majority of the aggregate voting power and value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a company participating in a dual listed company arrangement, the principal class of shares will be determined after excluding the special voting shares which were issued as a means of establishing that dual listed company arrangement;</p> <p>c) the term “disproportionate class of shares” means any class of shares of a company resident 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hat entitles the shareholder to disproportionately higher participation, through dividends, redemption payments or otherwise, in the earnings gener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y particular assets or activities of the company;</p>	<p>b) “주된 종류의 주식”이라 함은 회사의 보통주를 의미하며, 그러한 주식은 회사 의결권과 가치의 과반수(majority)를 대변하여야 한다. 만약 어떠한 단일의 보통주도 회사 의결권과 가치의 과반수를 대변하지 않는다면, “주된 종류의 주식”은 그 총합이 회사 의결권과 가치의 과반수를 대변하는 주식이 된다. 회사가 이중상장회사구조(dual listed company arrangement)에 참여하는 경우, 주된 종류의 주식은 이중상장회사구조를 수립하는 수단으로서 발행된 특별 의결주(special voting share)를 배제한 후에 결정한다.</p> <p>c) “차별주식”이라 함은 한 계약국에 거주하는 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상환금 및 그 외의 수단을 통해 주주에게 회사의 특정 자산 혹은 활동을 통해 타방계약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참여권을 부여하는 모든 주식을 의미한다.</p>

〈표 III-7〉의 계속

원문	국문 번역본
<p>d) a company’s “primary place of management and control” will be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it is a resident only if executive officers and senior management employees exercise day-to-day responsibility for more of the strategic, financial and operational policy decision making for the company (including its direct and indirect subsidiaries) in that Contracting State than in any other State and the staff of such persons conduct more of the day-to-day activities necessary for preparing and making those decisions in that Contracting State than in any other State;</p> <p>e) [possible defini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1 [Footnote 1: A definition of the term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should be added if a provision o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s included in paragraph 2 (see subparagraph 2 f).];</p> <p>f) the term “equivalent beneficiary” means a resident of any other State, but only if that resident</p>	<p>d) 회사의 “주된 관리 및 통제 장소”가 회사가 거주하는 체약국에 위치하기 위하여 임원 및 고위경영진은 회사의 전략적, 금융적, 운영적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의사결정을 다른 어떤 국가에서보다 그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일상적 책임을 다하고 회사의 직원들은 상기 결정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보다 많은 일상적 활동을 다른 어떤 국가에서보다 그 체약국에서 수행하여야 한다.</p> <p>e)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에 대한 정의]2</p> <p>f) “동등한 수익자”라 함은 기타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그 거주자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p>

## 〈표 Ⅲ-7〉의 계속

원문	국문 번역본
<p>i) A) would be entitled to all the benefits of a comprehensive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between that other State and the State from which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are claimed under provisions analogous to subparagraph a), b) or d), or subdivision i) of subparagraph c),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provided that if such convention does not contain a comprehensive limitation on benefits article, the person would b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by reason of subparagraph a), b) or d), or subdivision i) of subparagraph c),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f such person w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under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and</p> <p>B) with respect to income referred to in Articles 10, 11 and 12 of this Convention, would be entitled under such convention to a rate of tax with respect to the particular class of income for which benefits are being claimed under this Convention that is at least as low as the rate applicable under this Convention; or</p> <p>ii)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hat is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by reason of subparagraph a), b), subdivision i) of subparagraph c) or subparagraph d)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p>	<p>i) A) 기타 체약국과 본 조의 제 2항의 a), b), d)호 혹은 c)호의 세부규정 i)와 유사한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혜택을 주장하는 체약국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맺은 포괄적 협약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주자. 단, 그러한 협약이 혜택 조항에 대한 포괄적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의 제4조에 따라 어느 하나의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은 본 조의 제2항의 a), b), d)호, 혹은 c)호의 세부규정 i)을 이유로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B) 이 협약의 제 10조, 제 11조, 제 12조에 명시된 소득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따라 혜택이 주장되는 특정 소득분류에 대해 최소 이 협약에서 적용되는 세율만큼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p> <p>ii) 본 조항의 제 2항의 a), b), d)호 혹은 c)호의 세부규정 i)에 의해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p>

〈표 Ⅲ-7〉의 계속

원문	국문 번역본
<p>g) the term “dual listed company arrangement” means an arrangement pursuant to which two publicly listed companies, while maintaining their separate legal entity status, shareholdings and listings, align their strategic directions and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ir respective shareholders through:</p> <p>i) the appointment of common (or almost identical) boards of directors, except where relevant regulatory requirements prevent this;</p> <p>ii) management of the operations of the two companies on a unified basis;</p> <p>iii) equalised distributions to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an equalisation ratio applying between the two companies, including in the event of a winding up of one or both of the companies;</p> <p>iv) the shareholders of both companies voting in effect as a single decision-making body on substantial issues affecting their combined interests; and</p> <p>v) cross-guarantees as to, or similar financial support for, each other’s material obligations or operations except where the effect of the relevant regulatory requirements prevents such guarantees or financial support; and</p> <p>h) with respect to entities that are not companies, the term “shares” means interests that are comparable to shares.</p>	<p>g) “이중상장회사구조(dual listed company arrangement)”라 함은 두 개의 상장회사가 독립적인 법적 실체, 주식보유, 상장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략적 방향이나 각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조정하는 구조 :</p> <p>i) 관련 규제 사항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 일반의 임명하거나</p> <p>ii) 두 회사의 운영을 통합해서 관리하거나</p> <p>iii) 한 회사나 두 회사가 모두 청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두 회사간 적용되는 분배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하거나</p> <p>iv) 두 회사의 주주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하나의 의사결정체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p> <p>v) 관련 규제 사항에서 보증이나 경제적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자의 중요한 채무나 영업에 대해 상호보증이나 이와 유사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p> <p>h) 법인이 아닌 실체의 경우 주식이란 주식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p>

〈표 Ⅲ-7〉의 계속

원문	국문 번역본
<p>7.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 benefit under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tem of income or capital if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obtaining that benefit was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any arrangement or transaction that resul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at benefit,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granting that benefi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p>	<p>7.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의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야기한 합의 혹은 거래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의 기타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본 조약의 혜택은 소득 혹은 자본에 대해 부여되지 않는다.</p>

자료: OECD(<http://www.oecd.org/tax/beps-2014-deliverables.htm>)

#### 다. BEPS Action 6: 2015 Revised Discussion Draft<sup>107)</sup>

##### 1) 2014 Action 6 보고서 이후의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 2014년 9월 Action 6 보고서 출판 이후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음
  - 2014년 11월 21일: Action 6 관련된 후속조치로 20개의 이슈를 다룬 discussion draft<sup>108)</sup>을 발표함
  - 2015년 1월 22일: discussion draft 내용에 대한 외부 공공 의견을 수렴<sup>109)</sup>하고 이에 대해 공개 협의 미팅 개최
  - 2015년 3월: 두 차례 미팅을 통해 공공 의견에서 지적된 이슈들에 대한 추가 작업 진행, 해당 이슈들에 대한 새로운 제안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룸
  - 2015년 5월 22일: Revised discussion paper<sup>110)</sup> 발표

107) OECD, *BEPS Action 6: Prevent Treaty Abuse, Revised discussion draft*, OECD, 2015.

108) OECD(<http://www.oecd.org/ctp/treaties/discussion-draft-action-6-follow-up-prevent-treaty-abuse.pdf>)

109) OECD(<http://www.oecd.org/ctp/treaties/public-comments-action-6-follow-up-prevent-treaty-abuse.pdf>)

110) OECD(<http://www.oecd.org/tax/treaties/revised-discussion-draft-beps-action-6-prevent-treaty-abuse.pdf>)

- 2015년 5월 22일~6월 17일: Revised discussion draft에 대한 의견 수렴<sup>111)</sup>
- 2015년 6월 22~26일: Working Party미팅

## 2) 2015 Revised Discussion Draft와 간소화된 LOB규정

- 2015 Revised Discussion Draft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Part 1에서는 Action 6 보고서상의 LOB규정에 대한 대안으로 간소화된 LOB규정(simplified LOB rule) 소개와 LOB규정의 OECD모델 조세조약에의 반영에 대해, Part 2에서는 그간 논의된 20개의 주요 이슈들의 진행상황을 크게 세 가지 영역-LOB규정 관련 이슈, PPT 규정 관련 이슈, 기타 이슈-으로 나누어 논의함
- 2015 Revised Discussion Draft에서는 기존의 포괄적 LOB규정에 대한 대안으로 간소화된 LOB규정<sup>112)</sup>을 추가로 제시함
  - 간소화된 LOB규정은 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가장 분명한 treaty shopping 사례들을 다루는 한편 PPT규정으로 다른 조약남용을 다루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이라는 원칙<sup>113)</sup>에 부합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재함
- 간소화된 LOB규정을 어떤 식으로 OECD모델 조세조약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델조약에 LOB규정의 주요 특성들을 기술하고 포괄적 LOB규정, 간소화된 LOB규정의 각 조항들의 대안들에 대해서는 OECD주석서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됨
- 간소화된 LOB규정의 전문은 아래와 같음

---

111) OECD(<http://www.oecd.org/ctp/treaties/public-comments-revised-beps-action-6-follow-up-prevent-treaty-abuse.pdf>)

112) OECD(2015), pp.4-6.

113) OECD(2014), p.23, 문단14에서는 국가의 접근 방식이 조약남용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 조세조약상 조약남용 방지규정 도입에 유연성이 가능하나, 조세조약 체결국들은 ‘최소한’ 그들의 조세조약에 treaty shopping을 포함하여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체결국의 의도임을 명시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음

*ARTICLE X*  
*ENTITLEMENT TO BENEFITS*

-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ntitled to the benefits that would otherwise be accorded by this Convention only if such resident is a qualified person.*
-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a qualified person if the resident is either:*
  - a) an individual;*
  - b) that Contracting State,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thereof or a person that is wholly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 c) a company, if the principal class of its shares is regularly traded on one or more recognised stock exchanges;*
  - d) a person other than a company, if its beneficial interests are regularly traded on one or more recognised stock exchanges;*
  - e)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f residents of that Contracting State that are qualified persons own,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s of the person.*
- 3.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hat is not a qualified person shall nevertheless be entitled to a benefit that would otherwise be accorded by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an item of income if persons that are equivalent beneficiaries own, directly or indirectly, more than 75 per cent of the beneficial interests of the resident.*
- 4. a)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hat is neither a qualified person nor entitled under paragraph 3 to a benefit that would otherwise be accorded by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an item of income shall nevertheless be entitled to such benefit if the resident is carrying on a business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e business of making or managing investments for the resident's own account, unless the business is carried on by a bank, an insurance company, a registered securities dealer or any other institution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States) and that item of income is derived in connection with, or is incidental to, that business,*

- b) I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an item of income from a business carried on by that resid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derives an item of income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rom a related enterprise of the resident, the condi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shall be considered to be satisfied with respect to such item of income only if the business carried on by the resid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s substantial in relation to the business carried on by the resident or related enterpris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ether a business is substantial for the purpose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
- c)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business carried on by a partnership in which a person is a partner and the business carried on by related enterprises of a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carried on by such person.*

*5.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hat is neither a qualified person nor entitled under paragraph 3 or 4 to a benefit that would otherwise be accorded by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an item of income shall nevertheless be entitled to such benefit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from which the benefit is being claimed, upon request from that resident, determines,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or administrative practice, that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the resident and the conduct of its operations are considered as not*

*having as one of its principal purposes the obtaining of such benefi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to which such request has been made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consul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other State before rejecting the request.*

*6.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the term “principal class of shares” means the class or classes of shares of a company which represents in the aggregate a majority of the voting power of the company;*

*b) the term “recognised stock exchange” means:*

*i) any stock exchange established and regulated as such under the law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other stock exchange agreed upon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c) the term “equivalent beneficiary” means any person who would be entitled to an equivalent or more favourable benefit with respect to an item of income accorded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at Contracting State,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as the benefit to be accorded to that item of income under this Convention, provided that, if that person is a resident of n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has a convention for the effective and comprehensiv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ax matters in effect with the state of which that person is a resident.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is an equivalent beneficiary with respect to dividends, the person shall be deemed to hold the same capital, shares or voting powers, as the case may be,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as the company claiming the benefit with respect to the dividends holds those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 A person shall be a related enterprise of another if, on the basis of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ne has control of the other or bot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or persons.*

*7.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Article.*

□ 간소화된 LOB규정과 기존 Action 6 보고서상의 LOB규정의 주요 차이점은 <표 III-8>과 같음

<표 III-8> Action 6 보고서 LOB/PPT규정과 간소화된 LOB규정의 비교

구분	기존LOB <sup>1)</sup>	간소화된 LOB규정 주요 변경사항 <sup>2)</sup>
적용범위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항</li> <li>• 문구 수정 및 OECD모델 조세조약상 예외 규정<sup>3)</sup> 삭제</li> </ul>
적격인	제2항 a)호 개인 b)호 정부와 관련기관 c)호 상장법인과 자회사 d)호 자선단체와 연금기금 e)호 소유/세원잠식 요건 f)호 C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항</li> <li>• a)호: 동일</li> <li>• b)호: 중앙은행 추가</li> <li>• c)호: 주로 거래되는 거래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체약국 소재 요건 삭제/차별주식 요건 삭제/상장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규정 삭제</li> <li>• d)호: 자선단체와 연금기금 규정 삭제/ 법인 이외의 상장단체 규정 신설</li> <li>• e)호: 기존 요건 중 세원잠식 요건 삭제</li> <li>• f)호: 삭제</li> </ul>
능동적 사업의 수행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항으로 이관</li> <li>• 관계회사(connected person)에 대한 소유 요건(50% 이상 소유 또는 50% 이상 같은 자에게 소유) 삭제</li> <li>• 파트너십의 사업수행을 파트너인 인의 사업수행으로 보는 규정 신설</li> </ul>

〈표 III-8〉의 계속

구분	기존LOB <sup>1)</sup>	간소화된 LOB규정 주요 변경사항 <sup>2)</sup>
파생혜택 <sup>4)</sup>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항으로 이관</li> <li>• 동등수혜자의 직간접 소유비율 75%로 완화 (기존 95%)</li> <li>• 중간 소유자의 동등수혜자 요건 삭제</li> <li>• 세원잠식 요건 삭제</li> </ul>
재량적 구제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항</li> <li>• 계약당사국의 관련 법률과 행정실무에 따라 조약 혜택이 주된 목적의 하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구 추가</li> </ul>
정의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항</li> <li>• 간소화된 규정에 따라 생략된 규정의 용어 제외</li> </ul>
상호합의에 의한 적용방식 결정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항에 신설</li> <li>• LOB규정의 적용 방식에 대해 양 계약국 관할 당국의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음</li> </ul>

주: 기존LOB와 간소화된 LOB규정은 모두 계획안(draft)이며, 추후 진행될 협의모임과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임

1) 기존 LOB규정의 내용은 〈표 III-6〉 참조

2) 간소화된 LOB규정에서 삭제된 규정 중 대부분은 주석 형태로 남아 있음. 간소화된 LOB의 변경사항 및 관련 쟁점사항은 OECD(2015) 참조

3) OECD모델 조세조약 제4조의 제3항, 제9조 혹은 제25조의 제2항에 따른 혜택

4) 2015 Revised Discussion Draft에서는 파생혜택 조항을 추가논의가 필요한 20개의 이슈 중 하나로 포함함

## 4. 일본

###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일본은 OECD 회원국으로서 조세조약 체결 시 OECD모델 조세조약의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음<sup>114)</sup>

114) E.N. Roose, T. Mizutani & C. Tomita, Japan—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2015. 01., p.59.

- 조약남용을 통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본의 조세조약 정책은 2003년 전면 개정된 미국과의 조약을 계기로 크게 전환되었는데, 개정 조약에는 수익적 소유자, 도관거래 등에 대한 규정과 함께 처음으로 LOB규정(特典の制限)이 도입됨<sup>115)</sup>
- 이후 일본은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과의 조세조약 개정 시 유사한 LOB규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였으며<sup>116)</sup>, 최근 개정 또는 체결된 뉴질랜드, 스웨덴 등과의 조세조약에서는 LOB규정과 함께 PPT규정을 함께 도입하였음

####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 2015년 6월 1일 현재 90개의 관할권(jurisdiction)에 적용되는 총 64개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sup>117)</sup>
  - 구 소련연방과 체코슬로바키아와의 협정이 더 많은 많은 관할구역에 승계되어 조약 숫자보다 많은 사법지역에 적용되는 것임
- 한편, 조세조약 외에 바하마스, 버뮤다, 케이만군도, 건지(Guernsey), 저지(Jersey)와 개인의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음<sup>118)</sup>
- 일본은 조약남용 방지를 위해 최근 다수의 조세조약에 적극적으로 포괄적 LOB규정과 PPT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최근 체결 또는 개정된 주요국과의 조세조약상 LOB규정과 PPT규정의 도입현황은 아래와 같음

---

115) Yushi Hegawa, *IFA Cahiers 2010—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Japan, 2010., p.464.

116) Yushi Hegawa(2010), pp.464-466.

117) 일본 재무성([http://www.mof.go.jp/english/tax\\_policy/tax\\_conventions/international\\_182.htm](http://www.mof.go.jp/english/tax_policy/tax_conventions/international_182.htm))

118) E.N. Roose, T. Mizutani & C. Tomita, Japan(2015). 건지와 저지는 2011년 서명 후 발효 전임

〈표 Ⅲ-9〉 일본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체결상대국	도입연도 <sup>1)</sup>	포괄적LOB규정	PPT규정 <sup>2)</sup>	LOB 유사규정
호주	2008년 개정	○	X	X
프랑스	2007년 개정	○	X	X
스위스	2010년 개정	○	X	X
영국	2006년 체결	○	○ <sup>3)</sup>	X
미국	2003년 개정	○	X	X
뉴질랜드	2012년 개정	○	○	X
스웨덴	2013년 개정	○	○	○ <sup>4)</sup>
인도	1989년 체결	X	X	X
네덜란드	2010년 개정	○	X	X
룩셈부르크	2010년 개정	X	X	○ <sup>5)</sup>
벨기에	2010년 개정	X	X	X
아일랜드	1974년 체결	X	X	X
홍콩	2010년 체결	X	○	X
싱가포르	미체결	-	-	-

주: 1) 서명일 기준, 규정 도입이 안 된 경우 최근 개정년도

2) 일반적으로 'Limitation of Relief'라는 조문으로 PPT를 다루고 있음

3)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등의 소득 규정에 포함됨

4) 선박, 금융활동 또는 행정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본사(headquarter 또는 co-ordination centre)로서의 활동으로 소득을 주로 획득하고, 그러한 소득이 거주지국에서 중대하게 낮게 과세되는 경우 조약 혜택을 배제함

5) 룩셈부르크 소재의 과세특례 대상인 지주회사에 대한 혜택 제한 규정

## 5. 인도

###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 인도는 자본 수입국(capital importing country)으로서 일반적으로 UN모델 조세조약을 따르며, 특별히 선진국과의 조약 체결시에는 더욱 그러함<sup>119)</sup>

- 2003년 이전까지 인도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제외하면 조세조약에 LOB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음<sup>120)</sup>
  - 인도는 판례법 국가로 과세관청의 일반조세회방지규정(GAAR) 적용은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그간 ‘실질과세(substance over form)’ 원칙이 적용되어 왔음<sup>121)</sup>
  
- 2003년 10월 인도 대법원(Supreme Court)은 Union of India v. Azadi Bachao Andolan (263 ITR 706) 사건에서 조세조약상 LOB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treaty shopping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함<sup>122)</sup>
  - 이 판결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세무목적상 부인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형식(form)’이 ‘실질(substance)’에 우선하여 중요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함
  - 이런 측면에서 LOB규정이 조세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조약상 혜택은 내국법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음
  - 한편, 지금까지 인도는 조약이 내국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treaty overrides domestic law) 국가임<sup>123)</sup>
  
- 인도는 2003년의 대법원 판례 이후 적극적으로 LOB규정<sup>124)</sup>을 조세조약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sup>125)</sup>

119) P. Gupta, India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2015. 01. p.114.

120) P. Gupta(2015), p.122.

121) Alope J. Majumdar & P.V. Satya Prasad, IFA Cahiers 2010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India, 2010. p.369. 인도 대법원이 실질과세원칙을 기반으로 판결한 중요한 사건으로 McDowell & Co Ltd v. CTO (1985) 154 ITR 148이 있음

122) Alope J. Majumdar & P.V. Satya Prasad(2010), p.369.

123) Finance Act 2012에서 GAAR을 도입하여 2016~17 과세연도부터는 조세조약과 내국법이 동등한 위치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됨

124) 여기서 LOB규정이란 포괄적 LOB규정뿐 아니라 PPT규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125) Alope J. Majumdar & P.V. Satya Prasad(2010), pp.382-383, P. Gupta(2015), p.122.

##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 인도는 현재 약 95개<sup>126)</sup>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근 개발도상국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PPT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포괄적 LOB규정이 도입된 조약은 제한적으로 존재함
  - 2003년 이전 이미 조약이 체결되고 최근 개정된 자본수출국들과의 조세조약에서 LOB규정 또는 PPT규정이 도입된 경우는 매우 제한적임
  - 반면 2003년 이후 개발도상국과 체결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PPT규정이 도입되어 조약남용방지에 대한 장치를 마련함
    - 특히 인도 투자 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싱가포르와 모리셔스와의 조약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 의정서에 PPT규정을 도입하였고, 모리셔스와는 LOB규정을 포함하는 조약 개정 협상이 최근 완료되었음<sup>127)</sup>
    - 다만, 최근의 개발도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도 포괄적 LOB규정이 도입된 조약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한편 부탄, 콜롬비아, 에스토니아와의 조약 등 최근 체결한 조세조약 중 조약이 내국법의 적용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Finance Act 2012에서 일반회피방지규정(GAAR)을 도입하여 2016~17과세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함. 이에 따라 기존의 조약 우선 적용 원칙이 아닌 내국법과 조약이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어 이러한 조항이 도입된 것으로 보임<sup>128)</sup>

126) Deloitte International Tax Source(<https://dits.deloitte.com/#>)

127) India; Mauritius – Treaty between India and Mauritius – renegotiations to introduce LOB clause (22 July 2013), News IBFD

128) P. Gupta(2015), pp.132-133.

〈표 Ⅲ-10〉 인도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체결상대국	도입연도 <sup>1)</sup>	포괄적LOB규정	PPT규정 <sup>2)</sup>	LOB 유사규정
미국	1989년 체결	O	X	X
영국	2012년 개정	X	O	X
일본	1989년 체결	X	X	X
프랑스	1992년 체결	X	X	X
호주	2011년 개정	X	X	X
덴마크	2013년 개정	X	X	X
스웨덴	2013년 개정	X	X	X
스위스	2010년 개정	X	X	X
핀란드	2010년 개정	X	O	X
아랍에미리트	2012년 개정	X	O	X
알바니아	2013년 체결	O	O	X
아르메니아	2003년 체결	O	X	X
방글라데시	2013년 개정	X	X	X
부탄	2013년 체결	X	O	O <sup>3)</sup>
콜롬비아	2011년 체결	X	O	O <sup>3)</sup>
에스토니아	2011년 체결	X	O	O <sup>3)</sup>
네팔	2011년 체결	X	O	X
라트비아	2013년 체결	X	O	X
네덜란드	2012년 개정	X	X	X
룩셈부르크	2008년 개정	X	O	O <sup>4)</sup>
벨기에	1993년 체결	X	X	X
아일랜드	2001년 개정	X	X	X
홍콩	미체결	-	-	-
싱가포르	2005년 의정서	X	O	X

주: 1) 서명일 기준, 규정 도입이 안 된 경우 최근 개정년도  
 2) 일반적으로 'Limitation on benefit'이라는 조문에 PPT규정을 다루고 있음  
 3) 조약의 규정이 내국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지 못함  
 4) 조약의 규정이 내국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지 못함; 법인격 있는 단체 중 선의의 사업(bona fide business)을 수행하지 않는 단체는 조약 혜택 배제; 룩셈부르크 소재의 과세 특례 대상인 지주회사에 대한 혜택 배제

## 6. 영국

###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 영국의 OECD회원국으로 조세조약 체결시 OECD모델의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 개별 조세조약에서는 다른 적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sup>129)</sup>
  - 또한 OECD 모델 이전의 조세조약 체결로 인해 다수의 오래된 조세조약도 가지고 있어 OECD 모델과는 차이가 있는 조약이 다수 존재함
- 조세조약에서 다수 포함되어 있는 미송금 등에 대한 LOB규정은 본 연구에서는 LOB규정으로 보지 않음
  - 일방체약국의 송금기준 과세에 따라 조세조약의 혜택을 송금되는 부분에만 적용하는 내용으로<sup>130)</sup>, 이를 LOB규정으로 보는 연구도 있으나, 영국 과세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체약상대국 입장에서는 LOB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 2015년 현재 총 107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sup>131)</sup>, 포괄적 LOB규정은 미국과 일본과의 조약 등에서 확인됨
  - 이러한 LOB규정이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상대방 국가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며 영국은 LOB규정을 조약에 포함하고자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129) B.R. Obuoforibo, S. Heydari & J-E. D'Auvergne, United Kingdom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130) 예를 들어, 한-영 조세조약 제24조 [경감의 제한] 제1항에서는 협약에 따른 경감은 타방체약국에서 송금되거나 수취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되는 소득부분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131) 영국정부(<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tax-treaties-signed-and-in-force>)

- 영국-인도 조약 등에서 일부 LOB규정 제목의 조항이 보이거나 실제 내용은 일반적 조약남용방지 규정과 유사함
  - 2012년 서명된 영국-인도 간 협약개정정서에서 제28C조에 LOB규정을 포함함
    - 그러나 실제 내용은 주요 목적요건으로, 거주자가 협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인 경우 협약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적용을 위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은 상대 국가에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sup>132)</sup>
  - 이러한 규정은 UN모델에서는 일반적 조약남용방지 규정으로 분류하고 있음

## 7. 독일

###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 독일은 OECD회원국으로 조약체결시 일반적으로 OECD모델의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음
  
- 독일은 LOB규정을 조세조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sup>133)</sup>
  - 이러한 이유는 내국법상 매우 강력한 조세조약남용방지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조약남용방지규정이 조세조약에 우선할 수 있기 때문임
    - 독일의 일반세법 제42조는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법적 구조를 통해 적절한 구조를 통하였다면 받지 못했을 혜택을 받으면서 주요한 세무 이외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적 약정도 세법상 부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34)</sup>
    - 독일 법이나 독일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은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조세조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음<sup>135)</sup>

132) Protocol amending the double taxatio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public of India Article 28C, January 2014.

133) Alexander Linn, IFA *Cahiers 2010 –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IBFD Online Book, 2010, pp.333 & 352.

134) Ernst & Young, *GAAR rising: Mapping tax enforcement's evolution*, February 2013, p.48.

- 그럼에도 독일은 조세조약과 내국세법과의 충돌 방지를 조세조약에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세회피 등에 대해 독일 내국세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많은 조약에 포함시키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스위스와의 조세조약 개정의정서(2011)에서는 기존의 LOB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내국세법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을 허용하는 조문을 신설함<sup>136)</sup>

##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 총 129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일부 조약에서는 LOB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포괄적 LOB규정을 두고 있는 조약은 미국뿐임
- LOB규정이 존재하는 조약은 캐나다, 사이프러스, 리베리아, 몰타,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쿠웨이트 총 10개국<sup>137)</sup>이라고 함
- 그러나 포괄적 LOB규정을 두고 있는 조약은 미국과의 조약뿐임
- 캐나다, 몰타, 싱가포르, 트리니다드 토바고, 쿠웨이트와의 조세조약에는 매우 제한적인 유사규정이며 나머지 조약의 규정은 일반적인 혜택의 제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 캐나다 조세조약상 LOB규정은 거주지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수익이 귀속 또는 통제되고 이의 과세가 거주자에 수익이 귀속 또는 통제되었을 경우보다 낮은 경우 혜택을 제한하는 것임
  - 몰타 조세조약 등은 계약국 이외의 인의 소유비율 조건이나 특별조세체계 등에 대한 규정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임
  - 이외에는 이중국적, 조세회피 등에 대한 내국법의 적용 허용,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에게만 혜택 적용 등의 내용으로 LOB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135) Ernst & Young(2013), p.49 & A. Perdelwitz,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10., Country Analyses IBFD

136) Germany – Switzerland Income and Capital Tax Treaty, Article 23 1,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prevent a Contracting State from applying the provision of its national law on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or tax fraud.(unofficial translation by IBFD)

137) A. Perdelwitz,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 8. 호주

###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 호주는 OECD회원국으로 몇 가지 유보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OECD모델의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음<sup>138)</sup>
  - 조약뿐만 아니라 해석에서도 OECD모델 주석서를 근거하는 것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음
  
- 조세조약 체결시 LOB규정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내국세법상 GAAR이 조약의 혜택의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임<sup>139)</sup>
  - 호주는 강력한 GAAR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는 한 세기 전부터(1915년) 동안 적용되어 왔으며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음<sup>140)</sup>
    - 1936 소득세절차법 IVA에 따라 구조(scheme), 구조에 따른 혜택, 주된 목적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됨
  - 그러나 상대방 국가에서 LOB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 이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있음

###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 2015년 현재 총 45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일부 조약에서 LOB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일본 및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포괄적 LOB규정을 두고 있음

---

138) T. Toryanik, Australia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139) Richard J. Vann, *IFA Cahiers 2010 –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 Australia, IBFD online book, 2010, p.79.

140) Ernst & Young(2013), pp.32-33.

- 말레이시아, 영국, 중국, 러시아 등과도 LOB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나<sup>141)</sup>, 실제 조문을 보면 미송금액 및 면세대상 소득에 미적용 등으로 일반적인 LOB규정과는 다른 내용임

## 9. 룩셈부르크

###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 룩셈부르크는 조세조약 체결시 OECD모델 조세조약의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음<sup>142)</sup>
  - SICAR와 같은 특별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지주회사에 대한 조약 혜택에 대해서는 다수의 조세조약에서 혜택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일부 조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약에서는 1929년 지주회사에 대한 혜택 배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2010년말 1929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조세 조약상 배제조항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
- 룩셈부르크는 국내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이 조세조약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방지규정의 적용에 대해 체결국 간의 상호합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sup>143)</sup>
  - 이에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내국법상 일반남용방지규정을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적용하기 쉽지 않음

141) T. Toryanik, Australia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142) C. Bardini & M. Lambion, Luxembourg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 2015. 01., p.70.

143) Sandra Biewer & Birgit Höfer, *IFA Cahiers 2010 –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Luxembourg, 2010., p.487. OECD모델 조세조약 제 1조에 대한 주석 문단 27.6 참조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 룩셈부르크는 약 80여개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sup>144)</sup>. 최근 체결되거나 개정된 조세조약 중 일부 조약에서는 PPT규정 또는 treaty shopping 협력의무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포괄적 LOB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은 미국과의 조약이 유일함

〈표 Ⅲ-11〉 룩셈부르크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체결상대국	도입연도 <sup>1)</sup>	포괄적LOB규정	PPT규정 <sup>2)</sup>	LOB 유사규정
미국	1996년 체결	○	X	X
영국	2009년 개정	X	X	X
독일	2012년 개정	X	○	○ <sup>3)</sup>
인도	2008년 개정	X	○	○ <sup>4)</sup>
러시아	2011년 개정	X	○	X
대만	2011년 개정	X	○	X
이스라엘	2004년 의정서	X	X	○ <sup>3)</sup>
아랍에미리트	2005년 체결	X	X	○ <sup>5)</sup>
쿠웨이트	2007년(미발효)	X	○	X
네덜란드	2009년 개정	X	X	○ <sup>6)</sup>
벨기에	2009년 개정	X	X	X
아일랜드	1972년 체결	X	X	X
홍콩	2010년 개정	X	X	○ <sup>3)</sup>
싱가포르	1993년 체결	X	X	X

주: 1) 서명일 기준, 규정 도입이 안 된 경우 최근 개정년도  
 2) Limitation of Benefit 또는 Miscellaneous Provisions에서 다름  
 3) 내국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 적용 가능  
 4) 내국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 적용 가능; 인격 있는 단체 중 선의의 사업(bona fide business)을 수행하지 않는 단체는 조약 혜택 배제  
 5) treaty shopping 방지 협력 의무  
 6) 일방체약국에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임원의 타방체약국으로부터의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이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혜택 배제

144) Deloitte International Tax Source(<https://dits.deloitte.com/#>)

## 10. 네덜란드

###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 네덜란드는 UN모형을 근거로 체결한 일부 조세조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OECD모형 조세조약을 근거로 조세조약을 체결하며, 이중과세 방지, 조세회피 대응,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주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sup>145)</sup>
- 네덜란드는 1987년 OECD모형에 기반한 독자적인 모델조약(Netherlands standaardverdrag 1987, NSV)을 발표하였으나, 2011년 네덜란드 재무성(State Secretary for Finance)은 NSV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모델 역시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sup>146)</sup>
- 네덜란드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내국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수익적소유자 요건과 주된 목적 요건(PPT규정과 유사한) 등 일반 방지규정과 특별 방지규정을 도입하는 조약이 증가하는 추세임<sup>147)</sup>

###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 네덜란드는 약 90여개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등 광범위한 조약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sup>148)</sup>
- 네덜란드 조세조약에서 포괄적 LOB규정은 미국, 일본과의 조세조약 외에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PPT규정 - 특히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에 대한 - 도입은 증가하는 추세임<sup>149)</sup>

145) P.J. te Boekhorst, Netherlands—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2015. 07., p.94.

146) P.J. te Boekhorst(2015), p.94.

147) Faustina G. F. Peters & Aart Roelofsen, *IFA Cahiers 2010—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Netherlands, 2010., pp.552-553.

148) Deloitte International Tax Source(<https://dits.deloitte.com/#>)

〈표 Ⅲ-12〉 네덜란드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체결상대국	도입연도 <sup>1)</sup>	포괄적LOB규정	PPT규정 <sup>2)</sup>	LOB 유사규정
미국	1992년 체결	O	X	X
일본	2012년 개정	O	X	X
영국	2013년 개정	X	O <sup>3)</sup>	X
독일	2004년 개정	X	X	X
프랑스	2004년 개정	X	X	X
호주	1986년 개정	X	X	X
아제르바이젠	2008년 체결	X	O <sup>3)</sup>	X
바레인	2008년 체결	X	X	O <sup>4)</sup>
중국	2003년 체결	X	O <sup>5)</sup>	O <sup>6)</sup>
체코	2012년 개정	X	X	O <sup>7)</sup>
멕시코	2008년 개정	X	O <sup>8)</sup>	X
오만	2009년 의정서	X	O <sup>9)</sup>	X
카타르	2008년 의정서	X	O <sup>9)</sup>	X
룩셈부르크	2009년 개정	X	X	O <sup>7)</sup>
벨기에	2009년 개정	X	X	O <sup>10)</sup>
아일랜드	1969년 체결	X	X	X
홍콩	2010년 체결	X	X	O <sup>11)</sup>
싱가포르	2009년 개정	X	X	X

- 주: 1) 서명일 기준, 규정 도입이 안 된 경우 최근 개정년도  
 2) 재량적 구제조항은 PPT규정으로 보지 않음  
 3) 배당, 이자,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해 적용  
 4) 배당소득에 대한 LOB규정  
 5)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PPT규정  
 6) 내국 조세회피방지 규정 적용  
 7) 일방체약국에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임원의 타방체약국으로부터의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이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혜택 배제(인도네시아, 그리스, 한국과의 조세조약에도 가능 규정 있음)  
 8) 사용료에 대한 PPT규정  
 9)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선의의 사업목적(bona fide commercial reasons)이 아닌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음  
 10) 집합투자기구의 소유자 75% 이상이 투자기구의 소재지국 거주자인 경우 조약 혜택 적용 가능  
 11) 내국 조세회피방지 규정 적용 가능; 배당소득에 대한 적격인의 과세면제 규정

149) Faustina G. F. Peters & Aart Roelofsen(2010)., p.570. & P.J. te Boekhorst(2015), p.101.  
 P.J. te Boekhorst(2015)에서는 미국과의 조세조약에만 LOB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12년 일본과의 개정 조세조약에 포괄적 LOB규정이 도입됨

## 11. 벨기에

###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 벨기에는 일반적으로 OECD모델 조세조약을 근거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sup>150)</sup>
- 벨기에 입장에서는 조약남용으로 인한 세원잠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제외하고는 포괄적 LOB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sup>151)</sup>
  - 다만, 다수의 조약에서는 포괄적인 PPT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 조약에서는 특정 소득에 대한 LOB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 벨기에는 90개<sup>152)</sup> 이상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등 광범위한 조약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
- 포괄적 LOB규정은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만 존재하나 다수의 조약에서 PPT규정을 포함함

150) G. Cruysmans, Belgium—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2015. 05., p.79.

151) Marc Bourgeois & Edoardo Traversa, *IFA Cahiers 2010—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Belgium, 2010. pp.143-145.

152) Deloitte International Tax Source(<https://dits.deloitte.com/#>)

〈표 Ⅲ-13〉 벨기에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체결상대국	도입연도 <sup>1)</sup>	포괄적LOB규정	PPT규정 <sup>2)</sup>	LOB 유사규정
미국	2006년 체결	O	X	X
일본	2010년 개정	X	X	X
영국	2009년 개정	X	O <sup>3)</sup>	X
독일	2002년 개정	X	X	X
프랑스	2009년 개정	X	X	X
호주	2009년 개정	X	X	X
스위스	1978년 체결	X	X	O <sup>4)</sup>
바레인	2009년 개정	X	O <sup>3)</sup>	X
중국	2009년 개정	X	O <sup>3)</sup>	O <sup>5)</sup>
아제르바이젠	2004년 체결	X	O <sup>6)</sup>	X
대만	2004년 체결	X	O <sup>7)</sup>	X
산마리노	2009년 개정	X	O <sup>7)</sup>	X
에스토니아	1999년 체결	X	O <sup>7)</sup>	X
리투아니아	1998년 체결	X	O <sup>7)</sup>	X
라트비아	1999년 체결	X	O <sup>7)</sup>	X
룩셈부르크	2009년 개정	X	X	X
네덜란드	2009년 개정	X	X	O <sup>8)</sup>
아일랜드	1970년 체결	X	X	X
홍콩	2003년 체결	X	X	O <sup>5)</sup>
싱가포르	2006년 체결	X	X	O <sup>5)</sup>

주: 1) 서명일 기준, 규정 도입이 안 된 경우 최근 개정년도  
 2) 조세조약 규정상 특정 소득에 한해 적용되는 PPT규정도 포함함  
 3)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PPT규정  
 4)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별도의 조약남용 규정  
 5) 내국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 적용 가능  
 6) 이자,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한 PPT규정  
 7) 포괄적 PPT규정  
 8) 집합투자기구의 소유자 75% 이상이 투자기구의 소재지국 거주자인 경우 조약 혜택 적용 가능

## 12. 홍콩

###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 홍콩은 기본적으로 OECD모델의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음<sup>153)</sup>
  - 중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은 홍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독립적인 조약 체결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LOB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용 원칙도 확인되지 않음

###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 홍콩은 2015년 현재 총 29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sup>154)</sup>
- 조세조약 중 일반적인 조세회피목적에 대해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만 존재함
  - 일본과 대한민국<sup>155)</sup>과의 조세조약에서 혜택을 목적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약의 혜택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또한 홍콩은 속지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어<sup>156)</sup>, 국내로 송금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 과세되는 경우에만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153) Y. (Ying) Zhang, Hong Kong—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154) 홍콩 과세관청([http://www.ird.gov.hk/eng/tax/dta\\_country.htm](http://www.ird.gov.hk/eng/tax/dta_country.htm))

155) 2015년 현재 아직 발효되지 않음

156) 홍콩 과세관청(<http://www.ird.gov.hk/eng/pol/dta.htm>)

## 13. 싱가포르

###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OECD모델의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음<sup>157)</sup>
- LOB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용 원칙도 확인되지 않음

###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 싱가포르는 2015년 현재 총 76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sup>158)</sup>
- 싱가포르는 많은 국가와의 조약에서 LOB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나<sup>159)</sup>, 세부내용을 보면 비송금 등의 혜택 부여 제한으로 포괄적인 LOB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이러한 국가로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등 총 33국 등이 해당됨

---

157) N. Umar,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158) 싱가포르 과세관청(<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International-Tax/>)

159) Bill Lexmond & Steve Towers, *IFA Cahiers 2010 –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 Singapore, IBFD online book, 2010, p.707.

## IV. 국제비교

### 1. 기본 모델의 비교

- 기본 모델이 존재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 중 US모델, UN모델 및 OECD모델을 비교함
  - US모델은 현재 유효한 2006년 모델을 기초로 하며, 필요하거나 변경 내용이 중요한 경우 2015년 변경제안 내용을 일부 포함함
  - UN모델은 현재 유효한 2011년 모델을 대상으로 비교함
  - OECD모델은 2014년 Action Plan 6 보고서상에 제시된 LOB조항(OECD 2014모델)과 2015년 Revised Discussion Draft에서 제시된 간소화된 LOB조항(OECD 2015모델)을 비교함
  
- 각 모델의 LOB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 자체는 유사함
  - 개인·정부, 상장회사, 비영리단체 및 연금기금, 소유/세원잠식, 능동적 사업 요건 및 재량적 구제 등 기본구조는 동일함
  - 파생혜택요건은 US모델은 개정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다국적그룹의 본사요건은 발견되지 않음

〈표 IV-1〉 모델별 LOB규정 개관

	US	UN	OECD 2014	OECD 2015
적격인				
개인·정부	○	○	○	○
상장회사	○	○	○	○
비영리단체 및 연금기금	○	○	○	X
소유/세원잠식	○	○	○	△ <sup>2)</sup>
능동적사업	○	○	○	○
파생혜택	△ <sup>1)</sup>	X	○	○
본사	X	X	X	X
재량적구제	○	○	○	○

주: 1) 2015년 변경제안에 포함되어 있음

2) 세원잠식 요건 삭제

### 가. 적용범위

- 표현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나 모든 모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주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취지는 동일함
- US모델은 적격인이 아니라면 혜택을 배제한다고 표현한 반면에, UN모델과 OECD 모델은 적격인이면서 협약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하여 기술방법은 상반됨

### 나. 적격인(qualified person)

#### 1) 개인 및 정부

- 문구상으로는 표현의 차이가 있으나, 개인과 정부 및 관련기관을 적격인으로 보는 입장은 동일함
- US모델은 개인과 체약국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정부를 적격인으로 봄
  - UN모델은 적격정부기관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음

- OECD 2014모델은 개인과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정부를 적격인으로 정의하였으며, 2015모델은 이외에 중앙은행을 추가함

## 2) 상장법인요건(publicly traded test)

-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상장법인 경우 적격인에 해당하는 요건은 동일하지만, 상장거래소의 소재지, 차별주식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함
  - 모든 모델에서 주된株式이 회사의 거주지국에 상장되는 경우 적격인에 해당함
  - 주된 종류의株式이 거래되는 알려진株式거래소의 요건에서 차이를 보임
    - US모델은 주된 종류의株式이 회사의 거주지국에 소재하거나, 중요한 관리 및 통제 장소가 회사의 거주지국에 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UN모델은 주된 종류의株式이 알려진株式거래소(합의된 제3국 소재 거래소도 가능)에 상장되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음
    - OECD 2014모델은 주된株式이 주로 거주지국의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해당 회사의 거주지국에 소재해야 적격인에 해당함
    - OECD 2015모델에서는 UN모델과 유사하게 주된株式이 인가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되는 것으로 요건이 단순화됨
  - 회사가 발행한 차별株式이 존재하는 경우 모델간 차이를 보임
    - US모델은 차별株式이 알려진株式거래소에서 상장을 요구하고 있어, 차별株式이 상장되지 않으면 적격인에서 배제함
    - UN모델은 차별株式에 대한 상장은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더 많이 분배되고, 차별株式의 50% 이상이 적격인이 아닌 인에 의해 소유되면 차별적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만 혜택에서 제외함<sup>160)</sup>
    - OECD 2014모델은 차별株式에 대해서도 상장 요건을 포함시킴
    - OECD 2015모델은 차별株式에 대한 별도 요건을 기술하지 않음
- 상장회사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래소 소재지, 차별주식에 대한 부분의 차이 이외에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적격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동일함

160) 비교를 위해 상장회사요건 규정에서 기술하였으나 상장회사인 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님

- US모델, UN모델, OECD 2014모델 모두 상장회사의 자회사는 5개 이하의 위 상장 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총 의결권과 가치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적격인에 해당함
  - 간접 소유의 경우 중간소유자가 체약국의 거주자 요건도 동일함
- 다만, US모델 변경안(2015)은 자회사에 대해 기존 요건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세원 잠식요건을 부여함
  - 더구나, 기존의 회사의 총수익 기준 뿐만 아니라 요건대상 그룹의 총수익 기준 요건을 추가하여 요건이 강화됨
- 반면 OECD 2015모델에서는 상장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적격인 요건 규정을 삭제함

〈표 IV-2〉 상장회사요건

	US	UN	OECD 2014	OECD 2015
상장회사	• 주된 종류주식이 상장	• 주된 종류주식이 상장	• 주된 종류주식이 상장	• 주된 종류주식이 상장
거래소의 소재지	• 체약국 • 체약국이 아닌 경우 중요한 관리 및 통제 장소가 회사의 거주지국이어야 함	• 체약국 및 제3국의 합의된 거래소	• 체약국 • 체약국이 아닌 경우 중요한 관리 및 통제 장소가 회사의 거주지국이어야 함	• 별도 규정 없음
차별주식	• 차별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이도 상장되어야 함	• 차별주식의 상장을 요구하지 않으나 차별적인 소득 부분은 혜택에서 제외	• 차별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이도 상장되어야 함	• 별도 규정 없음
상장회사의 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요건에 부합하는 5개 이하의 회사가 50% 이상 의결권·가치 보유시 적용</li> <li>• 중간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중간소유자가 체약국의 거주자여야 함</li> </ul>	-	-	• 별도 규정 없음
자회사의 차별주식	• 차별주식의 50% 소유 요건 적용	• 별도 소유요건 없음	• 차별주식의 50% 소유 요건 적용	• 별도 소유요건 없음

### 3) 연금기금 · 비영리단체

- 모든 모델에서 거주자인 종교 등의 비영리단체는 무조건, 연금기금은 일정 소유요건을 충족하면 적격인을 충족함
  - US모델과 OECD 2014모델에서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또는 교육목적만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조직과 체약국의 개인 거주자가 50%이상 소유하는 연금기금은 적격인에 해당함
  - UN모델에서는 자선단체 또는 여타 면세기관과 연금과 관련한 신탁 등이 체약국의 개인거주자가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적격인으로 봄
    - 여타 면세기관으로 정의하여 문언상으로는 US모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 취지를 고려하는 경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OECD 2015모델에서는 비영리단체와 연금기금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

### 4) 소유/세원잠식요건(ownership/base erosion test)

- 개인 이외의 인이 소유와 세무상 공제되는 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인으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기본적으로 개인이외의 인에 대해 상기 기술한 적격인(자회사 제외)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과세소득 중 50% 이상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인에게 지급되지 않아야 함
    - 지급금액에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용역과 유형의 자산 지급은 지급에서 제외
  - US모델과 OECD 2014모델에서는 간접소유의 경우 중간소유자가 체약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고, 50% 이상이 지급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을 상기에서 기술한 적격인(자회사 제외)인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인으로 보다 한정함
    - US모델 변경안(2015)은 세원잠식요건에 기존의 인의 총수익 기준뿐만 아니라 요건대상 그룹의 총수익 기준 요건을 추가하고 지급대상에 대해서도 적격인이 아닌 인 이외에 체약국의 특별조세체계 혜택을 부여받는 인을 추가하여 요건이 강화됨

- UN모델에서는 간접소유에 중간소유자의 요건이 없으며, 50% 이상 지급 제한 대상도 체약국의 거주자이기만 하면 되며, 은행채무 등과 관련된 지급은 소득이 체약국 중 하나에 속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제외함
- OECD 2015모델은 US모델과 OECD 2014모델에서 요구하는 적격인의 50% 이상 소유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나, 간접소유자의 거주자요건과 세원잠식요건은 삭제됨

〈표 IV-3〉 소유/세원잠식 요건

	US	UN	OECD 2014	OECD 2015
기본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인의 50% 이상 소유 및 총수익 대비 공제가능 비용 50%미만 제3국 거주자에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인의 50% 이상 소유 요건만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에 강화된 세원잠식요건을 적용 (2015 변경제안)</li> </ul>	-	-	-
간접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소유자는 체약국의 거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소유자 요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소유자는 체약국의 거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소유자 요건 없음</li> </ul>
소득 지급제한자 (열거된 이외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인을 충족하는 체약국의 거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약국의 거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인을 충족하는 체약국의 거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원잠식 요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조세체계의 혜택을 받는 체약국의 인을 제한자에 포함 (2015 변경제안)</li> </ul>			
지급액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서비스와 유형의 자산 지급액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서비스와 유형의 자산 지급액과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은행에 대한 지급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서비스와 유형의 자산 지급액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원잠식 요건 없음</li> </ul>

## 다.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항목 등

- 적격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항목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은 동일함
- 모든 모델에서 적격인이 아닌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능동적 사업과 관련 또는 부수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받는 소득에 혜택을 부여함(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대상으로 함)
  - 다만, 자기계정에 의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관련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 적용되지 않음
- 모든 모델에서 적격인이 아닌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이 타방체약국의 사업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하다면(substantial) 협약의 혜택을 부여함
- OECD 2015모델에서는 특수관계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기타 다른 모든 모델에서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방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 또는 쌍방이 동일한 제3자에 의해 50% 이상 소유되면 관련되어 있으며,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일방의 지배 또는 상호 동일 지배에 있다고 판단되면 상호 관련이 있음
  - UN모델과 OECD 2015모델에서는 파트너십이 수행하는 활동은 파트너의 활동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음
    -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미국 세법에서 파트너십을 도관으로 보는 체계를 고려할 때 US모델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 다만, US모델 변경안(2015)에서는 사업이 동일하거나 보충적인 수준까지 관련되어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 이러한 조문 추가는 지주회사 또는 금융조달기업은 능동적 사업요건에 따른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며, 파생혜택으로 적용을 고려해야 함

### 라. 파생혜택

- US모델 변경안(2015)에서 파생혜택규정을 제시되고 있음
  - US모델 변경안(2015)에서는 동등수혜자 등에 대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협약의 혜택을 부여하여 제3국의 인에 대해서도 협약의 혜택 적용을 가능하게 함
    - 소유기준은 95% 이상을 7인 이하의 동등수혜자 등이 보유하고, 대상인 및 요건대상그룹의 총소득 50% 미만이 동등수혜자가 아니거나 특별조세체계의 혜택을 적용받는 동등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적용됨
  
- OECD 2014모델에서는 동등수혜자의 소유비율이 95% 이상이고, 동등수혜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총소득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조약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OECD 2015모델에서는 소유비율 요건이 75%로 완화 되었고, 세원잠식 요건은 삭제됨

### 마. 재량적구제

- 모든 모델에서 권한있는 당국은 거주자가 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목적이 협약의 혜택을 부여받고자 함이 아니라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US모델 변경안(2015)에서는 납세자의 입증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실무와 다른 것은 아니며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임

## 2. 주요 조세조약 비교

- 조세조약에 포괄적 LOB규정을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나라는 기존의 미국과 최근의 일본과 인도가 존재하며, 각 국가의 LOB규정은 적용범위와 세부적인 규정에서 차이가 존재함
  - 미국 조세조약의 LOB규정은 조약의 체결연도에 따라 사용하는 US모델 규정이 상이하여 세부규정에 차이가 존재하나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것과 파생혜택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른 나라의 LOB규정과 차별됨
  - 일본 조약의 LOB규정은 적용범위를 특정 소득에 한정하고 있으며, 상장법인 자회사에 대한 요건이 단순하고 개인 이외의 인에 대한 세원잠식 요건이 없다는 점이 미국 조약의 LOB규정과 다름
  - 인도 조약의 LOB규정은 일본 조약의 LOB규정과 같이 적용 범위를 특정 소득에 한정하고, 상장법인 자회사에 대한 요건이 단순하나 파생혜택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임
  - 일정 요건을 갖춘 본사(headquarters)에 대한 혜택 부여에 대한 규정은 거의 대부분의 조약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의 네덜란드, 스위스와의 조약, 미국의 벨기에, 네덜란드와의 조약에서 동 규정이 발견됨

〈표 IV-4〉 포괄적 LOB규정 체결 현황

	미국-영국	미국-캐나다	미국-네덜란드	미국-독일
조약서명연도 <sup>1)</sup>	2002	2007	2004	2006
LOB 기본모델 <sup>2)</sup>	US모델(1996), UN모델	US모델(2006)	US모델(1996)	US모델(2006)
적용대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개인·정부	○	○	○	○
상장회사조항	○	○	○	○
거래소	스위스, 일본 등 제3국 포함	제3국 없음(별도의 통지서에 포함할 수 있음)	스위스, 일본 등 제3국 포함	제3국 없음(합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음)
관리장소요건	없음	없음	실질적 체류요건	○
차별주식 <sup>3)</sup>	차별소득 배제	상장요건	상장요건	상장요건
자회사	○	○	○	○
연금기금·비영리단체	○	○	○	○
개인 이외의 인 (소유/세원잠식)	○	파생혜택과 동일한 조건요구	○	○
은행지급배제	○	X	○	X
파생혜택	○	○	○	○
지분율/잠식률	95%/50%	90%, 50%(차별) /50%	90%, 50%(차별) /50%	90%, 50%(차별) /50%
능동적 사업	○	연관과 상당함이 동시에 충족요구	○	○
분사 <sup>4)</sup>	X	X	○	X
재량적 구제	○	○ (납세자의 요청)	○ (거부전 사전상의)	○ (거부전 사전상의)
기타	-	-	해운·항공운송에 대해 별도조항 있음	60%기준의 삼각규정(triangular provision) 포함 <sup>5)</sup> 일정조건 독일 펀드에 혜택부여 (90% 이상 독일 적격인 등의 소유)

〈표 IV-4〉의 계속

	미국-벨기에	미국-일본	미국-호주	일본-프랑스
조약서명연도 <sup>1)</sup>	2006	2003	2001	2007
LOB 기본모델 <sup>2)</sup>	US모델(2006)	US모델(1996)	US모델(1996), UN모델	-
적용대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사업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개인·정부	○	○	○	○
상장회사조항	○	○	○	○
거래소	NAFTA, EU, EEA	제3국 없음(합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음)	제3국 없음(합의에 의해 포함할 수 있음)	NAFTA, EU, NY거래소, 기타 제3국 합의
관리장소요건	○	X	X	X
차별주식 <sup>3)</sup>	상장요건	상장요건	차별소득 배제	X
자회사	○	○	○	X
연금기금·비영리단체	○	○	○	X
개인 이외의 인 (소유/세원잠식)	○	○	○	세원잠식 요건 없음
은행지급배제	○	○	○	X
파생혜택	○	X	X	○
지분율/잠식률	90%, 50%(차별) /50%	X	X	75%, 세원잠식 요건 없음
능동적 사업	○	○	○	○
본사 <sup>4)</sup>	○	X	○	X
재량적 규제	○ (거부전 사전상의)	○	○	○
기타	60%기준의 삼각규정(triangular provision) 포함 <sup>5)</sup>	상장회사의 자회사, 소유/세원잠식요건 에 기간요건 규정	상장요건에 회사 이외에 다른 인도 적용 (소유요건 부가),	-

〈표 IV-4〉의 계속

	일본-스위스	일본-뉴질랜드	일본-스웨덴	일본-호주
조약서명연도 <sup>1)</sup>	2010	2012	2013	2008
LOB 기본모델 <sup>2)</sup>	-	-	-	-
적용대상	사업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이자, 양도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사업소득, 배당, 이자, 양도소득
개인·정부	○	○	○	○
상장회사조항	○	○	○	○
거래소	NASDAQ, 런던, 아일랜드, 암스테르담,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요하네스버그, 뉴욕, 서울, 싱가포르 등 다수 거래소, 기타 제3국 합의	제3국 합의	NASDAQ, 런던, 아일랜드, 암스테르담,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요하네스버그, 뉴욕, 서울, 싱가포르 등 다수 거래소, 기타 제3국 합의	제3국 없음 (별도의 통지서에 포함할 수 있음)
관리장소요건	X	X	X	X
차별주식 <sup>3)</sup>	X	X	X	X
자회사	X	X	X	X
연금기금·비영리단체	○	○	○	○
개인 이외의 인 (소유/세원잠식)	세원잠식 요건 없음	세원잠식 요건 없음	세원잠식 요건 없음	세원잠식 요건 없음
은행지급배제	X	X	X	X
파생혜택	○	X	○	X
지분율/잠식률	75%, 세원잠식 요건 없음	X	75%, 세원잠식 요건 없음	X
능동적 사업	○	○	○	○
본사 <sup>4)</sup>	○	X	X	X
재량적 구제	○	○	○	○
기타	-	개인 이외의 인 규정에서 소유기간 요건 규정	개인 이외의 인 규정에서 소유기간 요건 규정	개인 이외의 인 규정에서 소유기간 요건 규정

〈표 IV-4〉의 계속

	일본-영국	일본-네덜란드	인도-미국	인도-알바니아
조약서명연도 <sup>1)</sup>	2013	2012	1989	2013
LOB 기본모델 <sup>2)</sup>	-	-	US모델(1981)	-
적용대상	배당, 이자, 사용료, 자본, 기타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자본, 기타소득	제한없음	제한없음
개인·정부	○	○	X	○
상장회사조항	○	○	○	○
거래소	스위스, 미국 등 제3국 포함	NASDAQ, 런던, 아일랜드, 암스테르담,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요하네스버그, 뉴욕, 서울, 싱가포르 등 다수 거래소, 기타 제3국 합의	제3국 거래소 합의	제3국 거래소 합의
관리장소요건	X	○	X	X
차별주식 <sup>3)</sup>	X	X	X	X
자회사	○	X	X	X
연금기금·비영리단체	○	○	X	○
개인 이외의 인 (소유/세원잠식)	○	○	○	○
은행지급배제	-	-	-	○
파생혜택	○	○	X	X
지분율/잠식률	75%/잠식요건 없음	75%/잠식요건 없음	X	X
능동적 사업	○	○	○	○
본사 <sup>4)</sup>	X	○	X	X
재량적 구제	○	○	○	○
기타	개인 이외의 인 규정에서 소유기간 요건 규정	개인 이외의 인 규정에서 소유기간 요건 규정 존재하고 계약 당사국 관련법의 규제를 받는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포함	-	-

〈표 IV-4〉의 계속

	인도-아르메니아	룩셈부르크-미국
조약서명연도 <sup>1)</sup>	2003	1996
LOB 기본모델 <sup>2)</sup>	-	US모델(1996)
적용대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개인·정부	○	○
상장회사조항	○	○
거래소	제3국 거래소 합의	제3국 거래소 합의
관리장소요건	X	X
차별주식 <sup>3)</sup>	X	X
자회사	X	○
연금기금·비영리단체	○	○
개인 이외의 인 (소유/세원잠식)	○	○
은행지급배제	○	○
파생혜택	X	○
지분율/잠식률	X	90%, 50%(차별)/50%
능동적 사업	○	○
본사 <sup>4)</sup>	X	X
재량적 구제	○	○
기타	-	파생혜택의 수혜자를 NAFTA와 EU회원국으로 한정

주: 1) 개정의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의정서 서명연도  
 2)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가장 유사한 모델을 기입  
 3) 차별적 소득에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UN모델에 기초한 것으로 상장회사인 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비교의 목적으로 상장회사요건 하위 규정에서 기술함  
 4)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본사(headquarter)에 대해 협약의 혜택을 부여  
 5) 삼각규정이란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발생시킨 소득을 제3국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경우, 소득이 거주지국에서 귀속되어 제3국의 고정사업장으로 귀속시키지 않았다면 과세될 금액의 일정비율보다 거주지국과 제3국에서 과세되는 금액이 낮다면 협약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임

### 3. 각국의 최근 추세

- 기존의 미국 외에 조세조약에 포괄적 LOB규정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로는 일본과 인도가 있음
  - 일본은 2003년 미국과의 전면적인 조약 개정 이후 최근 주요 선진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을 통하여 포괄적 LOB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인도의 경우 200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체결한 일부 개발도상국과의 조세조약상에 포괄적 LOB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선진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포괄적 LOB규정이 포함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음
  
- 미국, 일본, 인도 외의 국가 중 포괄적 LOB규정을 도입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는 국가는 발견되지 않으나, PPT규정 또는 제한적인 LOB 유사규정을 도입하는 시도는 여러 국가에서 발견됨
  - 일본의 경우 포괄적 LOB규정 외에 최근 개정 또는 체결된 여러 조세조약에서 PPT 규정을 도입하였음
  - 인도의 경우 최근 개정 또는 체결한 개발도상국과의 조약 중 상당수에서 PPT규정이 도입됨
    - 다만, 인도 시장으로의 자본수출국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PPT규정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주로 특정 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규정에 PPT규정을 도입한 조약이 다수 발견됨
  - 독일의 경우 포괄적 LOB나 PPT규정을 정책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으나, 상당수의 조약에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내국법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의 조세조약 상당수에서 PPT규정, 특정 지주회사에 대한 혜택 배제 규정, 본사(head quarters)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혜택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규정 등 다양한 조약남용방지 규정이 발견됨
  - 호주, 홍콩, 싱가포르는 대체적으로 조세조약에 LOB, PPT 등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홍콩 규정에서는 PPT를 포함하고 있음

〈표 IV-5〉 각국의 최근 주요 조세조약에서 혜택의 제한 포함 여부

	조약서명연도 <sup>1)</sup>	포괄적 LOB	PPT	LOB 유사규정
미국				
칠레	2010(발효되지 않음)	O	X	-
폴란드	2013(발효되지 않음)	O	X	-
베트남	2015(발효되지 않음)	O	X	-
스페인	2013(발효되지 않음)	O	X	-
일본				
호주	2008	O	X	X
프랑스	2007	O	X	X
스위스	2010	O	X	X
영국	2006	O	O <sup>3)</sup>	X
미국	2003	O	X	X
뉴질랜드	2012	O	O	X
스웨덴	2013	O	O	O <sup>4)</sup>
인도	1989	X	X	X
네덜란드	2010	O	X	X
룩셈부르크	2010	X	X	O <sup>5)</sup>
벨기에	2010	X	X	X
아일랜드	1974	X	X	X
홍콩	2010	X	O	X
싱가포르	미체결	-	-	-
인도				
미국	1989	O	X	X
영국	2012	X	O	X
일본	1989	X	X	X
프랑스	1992	X	X	X
호주	2011	X	X	X
덴마크	2013	X	X	X
스웨덴	2013	X	X	X
스위스	2010	X	X	X
핀란드	2010	X	O	X
아랍에미리트	2012	X	O	X
알바니아	2013	O	O	X
아르메니아	2003	O	X	X

〈표 IV-5〉의 계속

	조약서명연도 <sup>1)</sup>	포괄적 LOB	PPT	LOB 유사규정
방글라데시	2013	X	X	X
부탄	2013	X	O	O <sup>6)</sup>
콜롬비아	2011	X	O	O <sup>6)</sup>
에스토니아	2011	X	O	O <sup>6)</sup>
네팔	2011	X	O	X
라트비아	2013	X	O	X
네덜란드	2012	X	X	X
룩셈부르크	2008	X	O	O <sup>5),6)</sup>
벨기에	1993	X	X	X
아일랜드	2001	X	X	X
싱가포르	2005(의정서)	X	O	X
영국				
알바니아	2013(2013)	X	O <sup>8)</sup>	X
아르메니아	2011(2012)	X	O <sup>8)</sup>	X
바레인	2010(2012)	X	O <sup>8)</sup>	X
바베이도스	2012(2012)	X	O <sup>8)</sup>	X
캐나다	2014(2014)	X	O <sup>8)</sup>	X
브루나이	2012(2013)	X	X	X
중국	2013(2013)	X	O <sup>8)</sup>	X
아이슬란드	2013(2014)	X	O <sup>8)</sup>	X
일본	2013(2014)	O	O <sup>8)</sup>	X
스페인	2013(2014)	X	O <sup>6)</sup>	X
알제리	2015(발효되지 않음)	X	O <sup>8)</sup>	X
불가리아	2015(발효되지 않음)	X	O <sup>8)</sup>	X
독일				
알바니아	2010(2011)	X	X	X
사이프러스	2011(2011)	X	X	O <sup>6)</sup>
조지아	2014(2014)	X	X	O <sup>6)</sup>
아일랜드	2011(2012)	X	X	X
리히텐슈타인	2011(2012)	X	X	O <sup>11)6)</sup>
말레이시아	2010(2010)	X	X	O <sup>6)</sup>
스페인	2011(2012)	X	X	O <sup>6)</sup>
모리셔스	2011(2012)	X	X	O <sup>6)</sup>

〈표 IV-5〉의 계속

	조약서명연도 <sup>1)</sup>	포괄적 LOB	PPT	LOB 유사규정
대만	2011(2012)	X	X	O <sup>6)</sup>
터키	2011(2012)	X	X	O <sup>6)</sup>
UAE	2010(2011)	X	X	O <sup>6)</sup>
코스타리카	2014(발효되지 않음)	X	X	X
이스라엘	2014(발효되지 않음)	X	X	O <sup>6)</sup>
호주				
말레이시아	2010(2011)	X	X	X
모리셔스	2010(2013)	X	X	X
스위스	2013(2014)	X	X	X
터키	2010(2013)	X	X	X
룩셈부르크				
미국	1996	O	X	X
영국	2009	X	X	X
독일	2012	X	O	O <sup>6)</sup>
인도	2008	X	O	O <sup>6)</sup>
러시아	2011	X	O	X
대만	2011	X	O	X
이스라엘	2004(의정서)	X	X	O <sup>6)</sup>
아랍에미리트	2005	X	X	O <sup>7)</sup>
쿠웨이트	2007(발효되지 않음)	X	O	X
네덜란드	2009	X	X	O <sup>9)</sup>
벨기에	2009	X	X	X
아일랜드	1972	X	X	X
홍콩	2010	X	X	O <sup>6)</sup>
싱가포르	1993	X	X	X
네덜란드				
미국	1992	O	X	X
일본	2012	O	X	X
영국	2013	X	O <sup>3)</sup>	X
독일	2004	X	X	X
프랑스	2004	X	X	X
호주	1986	X	X	X
아제르바이젠	2008	X	O <sup>3)</sup>	X

〈표 IV-5〉의 계속

	조약서명연도 <sup>1)</sup>	포괄적 LOB	PPT	LOB 유사규정
바레인	2008	X	X	O <sup>8)</sup>
중국	2003	X	O <sup>3)</sup>	O <sup>6)</sup>
체코	2012	X	X	O <sup>9)</sup>
멕시코	2008	X	O <sup>3)</sup>	X
오만	2009(의정서)	X	O <sup>10)</sup>	X
카타르	2008(의정서)	X	O <sup>10)</sup>	X
룩셈부르크	2009	X	X	O <sup>9)</sup>
벨기에	2009	X	X	O <sup>11)</sup>
아일랜드	1969	X	X	X
홍콩	2010	X	X	O <sup>6),8)</sup>
싱가포르	2009	X	X	X
벨기에				
미국	2006	O	X	X
일본	2010	X	X	X
영국	2009	X	O <sup>3)</sup>	X
독일	2002	X	X	X
프랑스	2009	X	X	X
호주	2009	X	X	X
스위스	1978	X	X	O <sup>4)</sup>
바레인	2009	X	O <sup>3)</sup>	X
중국	2009	X	O <sup>3)</sup>	O <sup>6)</sup>
아제르바이젠	2004	X	O <sup>3)</sup>	X
대만	2004	X	O	X
산마리노	2009	X	O	X
에스토니아	1999	X	O	X
리투아니아	1998	X	O	X
라트비아	1999	X	O	X
룩셈부르크	2009	X	X	X
네덜란드	2009	X	X	O <sup>11)</sup>
아일랜드	1970	X	X	X
홍콩	2003	X	X	O <sup>6)</sup>
싱가포르	2006	X	X	O <sup>6)</sup>

〈표 IV-5〉의 계속

	조약서명연도 <sup>1)</sup>	포괄적 LOB	PPT	LOB 유사규정
홍콩				
캐나다	2012(2013)	X	X	X
건지	2013(2013)	X	X	X
프랑스	2010(2011)	X	X	X
일본	2010(2011)	X	O <sup>3)</sup>	X
말레이시아	2012(2012)	X	X	X
영국	2010(2010)	X	X	O <sup>12)</sup>
대한민국	2014(2014)	X	O <sup>3)</sup>	X
이탈리아	2013(2013)	X	X	X
싱가포르				
알바니아	2010(2011)	X	X	X
바베이도스	2013(2014)	X	X	X
벨라루스	2013(2013)	X	X	X
캐나다	2011(2012)	X	X	X
일본	2010(2010)	X	X	X
포르투갈	2012(2013)	X	X	X
슬로베니아	2010(2010)	X	X	X
스위스	2011(2011)	X	X	X
프랑스	2015(발효되지 않음)	X	X	X
우루과이	2015(발효되지 않음)	X	X	X

- 주: 1) 개정 의정서가 체결되었다면 가장 최근 개정 의정서 서명연도  
 2) 미국-스페인 조세조약에는 기존에도 LOB규정이 존재했으나 과거 US모델을 현행 US모델로 변경하는 의정서임  
 3) 일부 소득에 한정된 PPT규정  
 4) 선박, 금융활동 또는 행정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사(headquarter 또는 co-ordination centre)로서의 활동으로 소득을 주로 획득하고, 그러한 소득이 거주지국에서 중대하게 낮게 과세되는 경우 조약 혜택을 배제함  
 5) 특정 룩셈부르크 지주회사에 대한 혜택 배제에 대한 규정  
 6)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국세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음  
 7) Treaty shopping 방지협력의무  
 8)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부여 자격 규정(포괄적LOB규정의 적격인 요건과 유사)  
 9) 일방체약국에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임원의 타방체약국으로부터의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이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혜택 배제  
 10)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선의의 사업목적(bona fide commercial reasons)이 아닌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음  
 11) 집합투자기구의 조약 혜택 부여 요건이 별도 존재함  
 12) 별도의 LOB규정은 없으나 각 소득에서 대상자(수익적 소유자)를 상장법인 등의 LOB규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 V. 시사점

### 1. 조세조약상 혜택제한조항 도입의 실익

#### 가. BEPS Action 6의 LOB규정의 불확실성 및 과제

- 2014년 발표된 BEPS Action 6 보고서에서 제시된 LOB규정은 조약 혜택의 적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적용 요건이 복잡하여 BEPS프로젝트에서 추진 중인 다자간 협약에 필수적인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음
- 이에 2015년 Revised Discussion Draft에서는 기존 포괄적 LOB규정에 대하여 간소화된 LOB규정을 추가적인 옵션으로 제안하여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이라는 원칙에 맞는 보다 단순한 접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함
  - 집합투자기구(CIV)와 비집합투자기구(non-CIV)의 취급방법, EU법과의 충돌문제, 파생혜택 요건, 간접소유자의 거주지국 또는 동등수혜자 요건 등 LOB규정 모델에 대한 합의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산적한 현안들이 존재함
- 또한 G20과 OECD가 BEPS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추진 중인 다자간협정을 통한 양자 조세조약의 개정 계획<sup>161)</sup> 역시 다자간협정의 체결 시기와 범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다자간협정의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 역시 불투명한 상황임

---

161) BEPS프로젝트의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Developing a Multilateral Instrument to Modify Bilateral Tax Treaties)'에서 현존하는 3,000개 이상의 양자조약을 다자간협정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룸

## 나. LOB규정에 대한 대안—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 조세조약상 LOB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내국세법상 GAAR을 강화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GAAR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
    - 실질과세 등이 GAAR이 아닌 사법상의 원칙이라고 판단하는 견해도 있음<sup>162)</sup>
  - 이러한 점과 관계없이 현재의 실질과세를 GAAR과 동등한 수준으로 입법하여 국제 거래에 적용하는 것을 비용/편익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 적용에 대한 명확성, 포괄적인 지침 및 자문, 공정하고 성실한 절차, 증거 위주의 분석, 독립적인 검토기구, 남용조항, 세이프하버(safe harbor rule), 조약에 대한 우선적용, 사전합의 등<sup>163)</sup>의 GAAR의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개선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 내국세법상 GAAR의 적용이 조약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있음
  - OECD, UN 모델 등에서도 내국법상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음<sup>164)</sup>
  - 실제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내국세법상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조약에 비해 우선적으로 또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용되고 있음
    - 조사에 의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의 GAAR은 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용되고 있음<sup>165)</sup>
    - 이러한 상황에서 비엔나협약 제26조에 따른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너무 원칙론적인 견해로 보임
  - 우리나라 관례상으로도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조세조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해 적용되는 취지로 실질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sup>166)</sup>
    - 따라서 내국세법의 조세회피방지조항에 따른 혜택의 부인은 법원의 판단이나 상호합의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sup>167)</sup>를 펼치더라도 상충되지 않음

162) PriceWaterhouseCoopers(2010), p.12.

163) PriceWaterhouseCoopers(2010), pp.2-3.

164) 이에 대해서는 II.3.다. 참조

165) Ernst & Young(2013), pp.31- GAAR assessments by country

166)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 다만, 보다 명확한 GAAR의 위치를 위해 조약에 이를 규정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음
  - 독일은 조세조약에 LOB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내국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조세조약에 내국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조약을 다수 체결하고 있음
    - 독일은 내국세법상 일방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조세조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도 있으나, 조세조약에서 내국세법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다. 조세조약상 LOB규정 도입의 실익 분석

- 조세조약상 LOB규정 도입 방안을 아래와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LOB규정의 대안 중 하나인 내국법상 GAAR의 강화 방안과 비교 분석함<sup>168)</sup>
  - 조세조약 남용 방지 기능
  -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 선의의 피해자
  - 과세행정 및 납세자의 순응 부담
  - 조약 개정에 따른 비용

##### 1) 조세조약 남용 방지 기능

- LOB규정의 도입은 조세조약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보다 높은 조세회피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명시적으로 조세조약에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체약국의 조세회피에 대한 신호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167) Kiyoshi Nakayama, *Tax Policy: Designing and Drafting a Domestic Law to Implement a Tax Treat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p.9.

168) 이 외에도 LOB규정 도입으로 인한 외국인자본의 국내 투자 위축 효과 대비 세수효과, 한국자본의 외국 시장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과 관련된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 요소이나, 본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관련 연구로는 안종석과 홍범교(2006)의 연구가 있음

- 또한 다른 조세회피방지 방법과 더불어 사용하면 보다 강력한 조세회피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국제적 투자를 하는 납세자에게 LOB규정의 까다로운 혜택 부여 요건은 treaty shopping 등 조약남용 시도에 대한 일차적인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다만, 조세회피에 대한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sup>169)</sup>
    - 이미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을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에 있어 조약남용제도 강화에 따른 조세회피 비용 증가가 실제적인 조약남용 감소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세회피 비용 증가에 따라 그 비용 증가분을 만회하기 위하여 더욱 공격적인 조약남용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PPT규정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 특정 투자구조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지국 과세당국과 사법부에서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 고도의 공격적 세무 전략에도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임
  
- 반면 내국법상 GAAR을 통한 조약남용방지의 경우에도 기존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인 조약남용방지 대응책으로 유효하나, GAAR에 모호성이 존재하고 사법부 해석의 여지가 많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 시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보임
  
- 결과적으로 LOB규정과 PPT규정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 조약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를 가진 납세자에게 ‘사전적’으로 심리적 그리고 실질적 장애요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69) 안종석·홍범교(2006), pp.58-59.

## 2)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 LOB규정이 조세조약에 부재한 경우 납세자는 조세조약의 일반론적 해석이나 계약당사국의 관련 법령과 사법부의 기존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조약 혜택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LOB규정이 있는 경우에 비해 납세자의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조항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고, 해당 조항의 구체성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반면, 내국법상의 조항들과 사법부의 기존 판단은 접근성이 떨어지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및 자문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LOB 규정은 해당 기준이 구체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적용될 수 있음
  
- 또한 각국의 사법적 견해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요건들을 해석하는 경우, 양자조약 또는 다자조약의 핵심 요건인 적용의 일관성과 대칭성(symmetry)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LOB규정이 이런 측면에서 조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더 적합할 수 있음
  
- 다만, LOB규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PPT규정, 사법상의 원칙, GAAR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의 향상이 의문시될 수 있음
  - 만약 LOB규정을 조약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 즉, 어떤 협약국의 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적격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로 과세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 이러한 적용은 LOB규정을 조약에 포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사법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점에서 알 수 있음
  - 더구나 PPT를 조약에 포함할 경우, LOB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 요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또한 LOB규정은 구체적이기는 하나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음

- 현재의 LOB규정과 설명서 등에 많은 설명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적용방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체약국 간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할 소지가 있음
  -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혼성체인 경우, 상장회사 자회사에서 중간소유자의 지분을 계산의 문제 및 제3국 거주자이나 같은 지배력에 놓인 경우 적격한 적용 여부, 세원잠식요건에서 간접지급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음<sup>170)</sup>
  - 독일의 사건을 보더라도 가장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규정인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독일 과세관청은 미국의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독일에서 면세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sup>171)</sup>

### 3) 선의의 피해자

- LOB규정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제한적인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 조약남용 의도가 없음에도 조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체약국의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장치에 대해서는 LOB규정상 ‘재량적 구제’ 조항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역시 해당 과세당국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선의의 납세자 입장에서선 자원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는 어떠한 조세회피방지규정에서도 나타나는 결과이며 LOB규정이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반드시 더 많이 양산한다고 보기 어려움

170) 今村隆, 「租税条約における LOB 条項の意義と問題点—我が国の視点からみた同条項の考察—」, 『日本法學』 第七十九卷 第二号, 2013.09., pp.9-22.

171) Germany – Case 2 K 6627/96, 24 October 2002., 그러나 법원은 과세처분을 취소함

#### 4) 과세행정 부담 및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 LOB규정이 가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조약 적용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감소시켜, 불확실성에 따른 과세당국의 행정비용 및 납세자의 순응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LOB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이에 해당 정보 등을 기재한 서식 등을 제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각 체약국의 거주자별 조약 혜택을 위한 서식 작성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LOB규정에 따라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주자는 자연히 배제되며, 다른 조세회피방지규정 등의 적용시 이용가능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선의의 납세자는 조약적용 신청 초기에 더 많은 사업 및 과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추후 세무조사 등에 따른 위험을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낮출 수 있음
  
- 반면에 LOB규정 도입에 따라 조세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LOB규정 충족의 적정성 검토는 과세관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약해석 및 정보의 적정성 검토에 행정비용이 소모됨
  - 더 큰 문제는 LOB규정을 충족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는 내국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있으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 여전히 조세행정비용은 발생함
  - 반대로 내국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납세자로 하여금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면 LOB규정을 도입하기 이전과 조세행정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임
    - 반면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LOB규정의 충족 여부와 내국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생길 수 있음
  
- 다만,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적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국내법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보다 구속력 있는 사전질의제도 (advance ruling)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도 납세자 입장에서 중립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절차를 국내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조약 개정에 따른 비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 BEPS프로젝트의 Action 15에 따라 다자간협정의 형식으로 LOB규정이 조세조약에 도입된다면,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협상과 체결에 관련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조세조약 개정 또는 추후 조약 체결시 LOB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실질적인 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고, 도입이 가능하더라도 그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 납세자가 조약의 변경에 따라 행위를 바꾸는 등의 영향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체약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LOB규정의 세부항목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US모델이 있음에도 모든 조약에서 항목 및 세부규정의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음
  - 미국은 2010년 이후 서명된 조세조약을 전혀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약의 비준이 어떠한 사유로든 지연되면, 입법을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므로 이런 노력은 조약개정의 비용이 됨<sup>172)</sup>
  - 더구나 LOB규정을 포함한 조세조약에서 양체약국 간 다른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적용을 합치하기 위한 절차(상호합의 절차) 및 조약의 재개정에 비용이 추가로 요구됨<sup>173)</sup>

172) 미국이 2010년 이후 조약을 한 건도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 상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사유로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LOB규정 도입의 적절성

- 현재 포괄적 LOB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인데 이 국가들의 도입 이유 및 방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LOB 도입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 미국과 일본의 LOB규정 도입

- 과거 미국만이 LOB규정을 조약에 두고자 하는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외형적인 이유는 불충분한 사업모델과 거주지국과의 경제적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인 등에 대한 혜택(즉, 조세회피)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다른 국가들이 LOB규정을 조약에 포함하는 데 소극적인 것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음
  - 이러한 이유는 미국의 협약 미체결국에 대한 조약 체결의 압박, 조세조약에서의 협상력, GAAR과의 관계로 추정됨
- 미국만이 주로 LOB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로 하여금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sup>174)</sup>
  - 미국은 간주외국세액공제 등의 수용 거부 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체약국의 범위가 좁은 나라였는데 다른 제3국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하나로 사용되고 있음
    - 제3국이 체약국을 통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취하는 데 협약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미국과 조세협약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효과를 가짐
  -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처럼 넓은 조약망을 가진 나라는 이를 따를 이유가 없으며, 미국식의 LOB조항은 그대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견해임<sup>175)</sup>

173) Yoshihiro Masui, *Overhaul of the Japan-US Tax Treaty in 2003*,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f Japan, 2006, p.67.

174) 이창희(2015), pp.179-181. 같은 취지로 Mimi E. Gild, "Tax Treaty Shopping: Changes in the U.S. Approach to Limitation on Benefits Provisions in Developing Country Treatie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0:553 1989-1990., 1990., p.581.

- 그러나 미국의 경우 LOB규정 도입 이후 신규 조약 체결이 많지 않았으며, 조약이 없는 상대국에 조약 체결의 유인으로 LOB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현행 LOB규정이 생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신규 조세협약서 명국은 벨기에, 몰타,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4개국뿐임
    - 서명되었으나 발효되지 않은 조약을 고려하더라도 칠레, 베트남을 포함하여 6개국임
  - LOB규정 이외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사법상의 원칙 등 어떠한 형식이라도 제3국의 거주자 거래(체약국의 도관 설립 등)에 대응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은 마찬가지임
  
- 다만, 조세조약에 LOB규정을 둬으로써 명시적으로 제3국의 거주자에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효과는 가능함
  - 사법상의 원칙,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 등 내국세법 등을 통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성이 조세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이 각종 국가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LOB규정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점임
  - 도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해 LOB규정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조약에 대한 협상력이 요구됨
  - 미국은 세계 투자의 중심지로 국제 거래에서 미국 관련 사업 활동 없이 국제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미국이 조약, 정보교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는 최근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전 세계가 미국과의 약정을 체결한 점에서도 드러남
  - 미국은 도관으로 이용되는 체약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도관으로 이용되는 LOB조항이 취약하거나 없는 체약국을 선정하여 조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임
    - 2007년 재무성의 의회 보고서를 보면 헝가리와 아이슬란드가 제3국이 도관으로

---

175) 이는 이창희(2015), pp.180-181에서의 견해이다.

이용하는 국가로 사용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LOB규정을 포함하는 조약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함<sup>176)</sup>

- 그러나 다른 협상력이 강한 국가들이 LOB규정을 포함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 영향력이 강한 독일, 영국 등이 LOB규정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설명되지 않음<sup>177)</sup>
- 다른 이유로 내국세법상 GAAR이 없거나 취약하기 때문에 LOB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호주나 독일의 경우 내국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LOB규정에 적극적이지 않음
  - 미국의 GAAR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있음
- 미국은 GAAR이 없으며 다만 사법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로 보는 것이 다수설임
  -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의 경제적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 등을 GAAR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sup>178)</sup>
  - 그러나 미국은 GAAR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함<sup>179)</sup>
    - LOB규정을 조세조약에 포함시키는 일본도 GAAR이 없다고 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LOB규정의 도입은 원천지국 과세를 일정부분 포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176)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port to The Congress on Earnings Stripping, Transfer Pricing and U.S. Income Tax Treaties.*, November 2007, pp.82-88.

177) EU회원국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의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 위반 가능성 때문에 LOB규정에 소극적일 수 있다. 다만, 위반 여부는 유사한 경우에 서로 엇갈린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결정(이른바 “Open skies”와 “ACT”사건)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무차별원칙의 판단근거가 되는 동등성테스트(comparability test)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8) John G. Rienstra, *United States—Corporate Taxation* sec. 10., Country Analyses IBFD

179) Reuven S. Avi-Yonah & Oz Halabi(2012), p.242., PriceWaterhouseCoopers, *Tax Controversy and Dispute Resolution Alert: Preventing—Managing—Resolving Tax Audits and Disputes Worldwide*, June 4, 2012, p.5. & Ernst & Young(2013), p.84. etc

-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일반적인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고수해오던 일본은 자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2003년 미국과의 조약개정을 계기로 원천지국의 과세를 크게 감소시키면서 LOB규정을 조약에 포함함
    - 예를 들어 LOB규정을 포함시킨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조약에서 이자 소득, 사용료소득 등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포기하거나, 세율을 낮추면서 면제항목을 조약에 포함시키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을 낮추고 경감세율 요건을 완화시킴
    - 반면에 LOB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벨기에, 홍콩 등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자, 사용료 등에 원천지국 과세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일본의 LOB규정이 소득별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이러한 원천지국 과세를 완화시키면서 이런 소득에 LOB규정을 적용한 것임
    - 즉, 경감세율을 낮추어 일본의 자본수입을 증가시키되, 이러한 소득에 대해 조세 회피를 더욱 강력하게 방지하려는 의도임<sup>180)</sup>
- 한편 일본은 단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양도소득 조항에 조약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별도의 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음
- 일본은 미-일 조세조약 중 자본소득에 금융지원이 제공된 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음<sup>181)</sup>

180) 浅川雅嗣, 日米新租税条約の正式署名, ファイナンス 2004, 1, p.11.

181) Article 13 3.

(a) Where

(i) a Contracting State (including, for this purpose in the case of Japan, th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Japan) provides, pursuant to the domestic law concerning failure resolution involving imminent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at Contracting State, substantial financial assistance to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is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cquires shares in the financial institution from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may tax gains derived by the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uch shares, provided that the alienation is made within five years from the first date on which such financial assistance was provided.

-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신세이은행 新生銀行)에 미국계 투자그룹인 리플 우드가 단기간(4년)에 매각하고 납세하지 않은 사례를 경험으로 이를 막기 위한 규정임<sup>182)</sup>

## 나. 우리나라의 경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OB규정의 도입은 ‘사전적’ 조약남용방지 기능, 납세자와 과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관련 비용과 부담의 감소 측면에서, 내국법상 GAAR제도만을 이용하는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현재 선행연구에서는 LOB규정을 상황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sup>183)</sup>
    - 특히, 포괄적 LOB 이외에 단기자본규제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의 기간 조건 등도 고려할 수 있음
- 조세조약에 LOB규정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정적일 이유는 없으나, 우리나라 조세조약 네트워크의 범위 및 구조, 우리 정부의 상대적인 협상력, GAAR(또는 사법상의 원칙)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LOB규정 도입을 결정할 때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체결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으며, LOB규정에 대한 대안으로 GAAR(또는 사법상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반면에 조세조약의 개정 및 집행에 따른 행정비용, LOB규정의 예측 가능성 향상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은 비용으로 작용함
- 더구나 G20과 OECD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협정의 형식으로 양자간 조약이 개정되

182) 최천규(2012), p.85.

183) 윤현석, 『국제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8., p.137, 최천규(2012), p.83.

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조세조약을 개정·체결하면서 LOB규정을 도입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수 있음

○ 양자간협상일 경우 LOB규정에 부정적인 상대체약국과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카드의 하나로 일본과 같은 원천지국 과세권을 경감 또는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인의 채권투자 과세가 외환규제를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수이외의 문제에서도 이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G20/OECD의 다자간협정 계획 추진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세법상 GAAR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조약남용방지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과세당국의 행정 효율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문헌

- 안종석 · 홍범교,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12.
- 이경근, 「조세조약 적용기준에 따라 분석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의 문제점」, 『세제와 회계연구』, 2014.
- 이태로, 「Treaty Shopping」, 『조세법연구』 제1집, 1995. 8.
- 홍성훈 · 안종석,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원천국 과세회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 홍성훈 · 이은별 · 홍민옥,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국제비교 연구: 조세조약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15.
- 윤현석, 『국제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8.
- 최천규, 『외국자본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 분석 제70호, 2012. 5.
- Avi-Yonah, Reuven S. & Oz Halabi, “US Treaty Anti-Avoidance Rules: An Overview and Assessment,”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April/May 2012.
- Baker, Philip, *Improper Use of Tax Treaties,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United Nations Papers on Selected Topics in Administration of Tax Trea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May 2013.
- Bammens, Niels & Luc De Broe, *Treaty Shopping and Avoidance of Abuse, Tax Treaties: Building Bridges between Law and Economics*, 2010.
- Bardini, C. & M. Lambion, Luxembourg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2015. 01.
- Biewer, Sandra & Birgit Höfer, *IFA Cahiers 2010 –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Luxembourg, 2010.
- Bourgeois, Marc & Edoardo Traversa, *IFA Cahiers 2010 –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Belgium, 2010.
- Cruysmans, G., Belgium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2015. 05.
- E.N. Roose, T. Mizutani & C. Tomita, Japan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2015. 01.
- Ernst & Young, *GAAR rising: Mapping tax enforcement’s evolution*, February 2013.
- \_\_\_\_\_, “US proposes major revisions to model tax treaty to counter base erosion,” *International Tax Alert*, 29 May 2015
- Gild, Mimi E., “Tax Treaty Shopping: Changes in the U.S. Approach to Limitation on Benefits Provisions in Developing Country Treatie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0:553 1989~1990., 1990.
- Holmes, K.J., *Chapter 19: International Tax Avoidance in International Tax Policy and Double Tax Treaties – An Introduction to Principles and Application (Second Revised Edition) (IBFD 2014)*, Online Books IBFD.
- Kiyoshi Nakayama, *Tax Policy: Designing and Drafting a Domestic Law to Implement a Tax Treat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 Lexmond, Bill & Steve Towers. *IFA Cahiers 2010 –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 Singapore*, IBFD online book, 2010.
- Linn, Alexander, *IFA Cahiers 2010 –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IBFD Online Book, 2010.
- Majumdar, Alope J. & P.V. Satya Prasad, *IFA Cahiers 2010 –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India, 2010.
- Miller, Angharad and Oats, Lynn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axation,” *Bloomsbury Professional*, fourth edition, 2014.
- Miller, Michael J., “Assessing U.S. Income Tax Treaties: Current Trends in the Limitation on Benefits Article”, *International Tax Journal*, May-June 2007.

- Obuoforibo, B.R., S. Heydari & J-E. D’Auvergne,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 OECD, *BEPS Action 6: Prevent Treaty Abuse, Revised discussion draft*, OECD, 2015.
- \_\_\_\_\_,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2014.
- \_\_\_\_\_,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15 July 2014.
- Perdelwitz, A.,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10., Country Analyses IBFD.
- Peters, Faustina G. F. & Aart Roelofsen, *IFA Cahiers 2010 –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Netherlands, 2010.
- P. Gupta, India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2015. 01.
- P.J. te Boekhorst, Netherlands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2015. 07.
-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Taxation*, 2015.
- \_\_\_\_\_, *Tax Controversy and Dispute Resolution Alert: Preventing – Managing – Resolving Tax Audits and Disputes Worldwide*, June 4, 2012.
- Rienstra, John G.,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 T. Toryanik, Australia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 Umar, N.,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 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2011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port to The Congress on Earnings Stripping, Transfer Pricing and U.S. Income Tax Treaties.*, November 2007
- \_\_\_\_\_, *Treasury Releases Select Draft Provisions for Next U.S. Model Income Tax Treaty (Draft provisions address stateless income, corporate inversions and limitation on benefits)*, Press Center, 5/20/2015.
- Vann, Richard J., *IFA Cahiers 2010 – 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 Australia*, IBFD online book, 2010

Yoshihiro Masui, *Overhaul of the Japan-US Tax Treaty in 2003*,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f Japan, 2006.

Yushi Hegawa, *IFA Cahiers 2010—Volume 95A, Tax treaties and tax avoidance: application of anti-avoidance provisions*, Japan, 2010.

Zhang, Y.(Ying), Hong Kong—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今村隆, 「租税条約における LOB 条項の意義と問題点—我が国の視点からみた同条項の考察—」, 『日本法學』, 第七十九卷第二号, 2013. 09.

浅川雅嗣, 日米新租税条約の正式署名, ファイナンス 2004.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로앤비(<http://www.lawnb.com/>)

Deloitte International Tax Source(<https://dits.deloitte.com/#>)

HM Treasury(<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IBFD([www.ibfd.org](http://www.ibfd.org))

Internal Revenue Service(<http://www.irs.gov/>)

Inland Revenue Department(<http://www.ird.gov.hk>)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https://www.iras.gov.sg/irasHome/default.aspx>)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http://www.treasury.gov/Pages/default.aspx>)

財務省(<http://www.mof.go.jp/>)



세법연구 15-02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

2015년 8월 23일 인쇄

2015년 8월 30일 발행

저 자 홍성훈·정 훈·홍민욱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779-1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